

연구보고 2014-31

어린이집 설립 주체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 연구

서문희 양미선 이동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최근 수년간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보육비용 산정의 욕구가 높아졌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보육비용 산정 연구가 추진되었다. 무상보육 시대에서 질 높은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육비 산정은 중요한 작업이다. 적정수준의 보육비 제시는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에게는 부모의 부담 수준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준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는 보육료와 보조금 지원 수준 결정 등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도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를 지원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5년 기한으로 추진되는 보육비용 산출 과제의 두 번째 연구이다. 2013년에는 미래지향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각 구성 요소별로 전문가와 공동으로 세부 기초자료 수집, 분석, 조사 등 구체적 방법으로 항목별 단가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아동 1인당 종일제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되, 한 편으로 재무회계 보고 자료와 설문조사로 시설유형별 실제 항목별 세출 규모나 기준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설유형별로 차별화된 보육비용을 산출고자 하였다. 아울러 보육비용과 보육료의 차이를 규명하고 정부 지원단가와의 관련성도 제시하였다. 보육비용에 어린이집이 시설유형별로 설립 조건이나 운영이 다른 현실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본 보고서가 보육정책 관계자들에게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정부와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차 례

요약	1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내용	8
3. 연구방법	8
II. 선행연구 검토	13
1. 선행연구 개요	13
2. 보육비용 항목별 비교	21
3. 시사점	33
III.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 및 운영 특성	34
1. 국공립 어린이집	34
2. 법인어린이집	44
3. 민간·가정 어린이집	51
4. 소결	70
IV. 어린이집 세입·세출 현황	72
1. 어린이집 세입세출 자료 특성과 분석 기준	72
2.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세입 현황	74
3.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세출 현황	79
4. 소결	118
V. 보육비용 산정	119
1. 보육비용 산정 기본 원칙	119
2. 항목별 보육비용	121
3.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133
4. 시간단축보육 비용과 수용성	139

VI. 향후 정책과제	145
1. 정책제언	145
2. 맷는말	151
참고문헌	153
Abstract	155
부록	157
부록 1. 부표	159
부록 2. 조사표	163

표 차례

〈표 I-3- 1〉 유형별 차이 분석 대상 어린이집: 기본급 세출 자료 기준	9
〈표 I-3- 2〉 규모별 차이 분석 대상 어린이집	10
〈표 I-3- 3〉 민간개인 및 가정 어린이집 조사 내용	11
〈표 I-3- 4〉 조사 완료 어린이집 특성	12
〈표 II-2- 1〉 인건비 적용 인력 배치 및 급여 기준	22
〈표 II-2- 2〉 급간식비 산출 기준	24
〈표 II-2- 3〉 교재교구비 산출 기준	26
〈표 II-2- 4〉 관리운영비 산출 기준	28
〈표 II-2- 5〉 업무추진비 산출 기준	30
〈표 II-2- 6〉 시설설치비 산출 기준	32
〈표 III-1- 1〉 증개축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36
〈표 III-1- 2〉 개보수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37
〈표 III-1- 3〉 자부담에 의한 시설개보수 여부 및 부담액	37
〈표 III-1- 4〉 장비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38
〈표 III-1- 5〉 퇴직금 이외 적립금	39
〈표 III-1- 6〉 기타운영비 지출 여부 및 사용처별 지출 규모	40
〈표 III-1- 7〉 기타운영비 지출 여부 및 사용처별 지출 규모	40
〈표 III-1- 8〉 교사 초과근무 여부 및 시간외 수당 지급 특성	41
〈표 III-1- 9〉 청소 전담인력 배치 유무 및 고용 형태	42
〈표 III-1-10〉 사무업무 전담인력 배치 유무 및 고용 형태	42
〈표 III-1-11〉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여부 및 차량수, 운행거리, 연료비	43
〈표 III-2- 1〉 어린이집 신축 시 설립자 자산	44
〈표 III-2- 2〉 어린이집 설치 시 용자 여부	45
〈표 III-2- 3〉 증개축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45
〈표 III-2- 4〉 개보수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46
〈표 III-2- 5〉 장비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47
〈표 III-2- 6〉 기타운영비 지출 여부 및 사용처별 지출 규모	47
〈표 III-2- 7〉 기타운영비 지출 여부 및 사용처별 지출 규모	48

〈표 III-2- 8〉 별도 교사 수당 지급 여부	49
〈표 III-2- 9〉 교사 출퇴근 및 숙소 지원 여부	49
〈표 III-2-10〉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여부 및 차량수, 운행거리, 연료비	50
〈표 III-3- 1〉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 방식	51
〈표 III-3- 2〉 신축 및 매입 시 설치비	53
〈표 III-3- 3〉 매매 시 매매가	53
〈표 III-3- 4〉 설치 시 용자 여부 및 용자금 규모	54
〈표 III-3- 5〉 용자금 이자율	55
〈표 III-3- 6〉 매입 시 권리금 부담 여부 및 규모	56
〈표 III-3- 7〉 임대 형태 및 임대 시 비용 부담	57
〈표 III-3- 8〉 임대 시 비용 부담 여부 및 규모	58
〈표 III-3- 9〉 전월세 임대 시 보증금 규모	59
〈표 III-3-10〉 전월세 임대 시 월세 규모	59
〈표 III-3-11〉 평당 공시 지가	60
〈표 III-3-12〉 총 세출 대비 기타운영비 비율	61
〈표 III-3-13〉 기타운영비 사용처별 비율	62
〈표 III-3-14〉 어린이집 개보수 여부 및 비용	63
〈표 III-3-15〉 개보수비 조달 방법 및 회계 상의 세출 반영 여부	63
〈표 III-3-16〉 단기 차입 여부 및 차입 금액	64
〈표 III-3-17〉 단기차입 시 회계처리 방법 및 차입 이유	65
〈표 III-3-18〉 장기차입 여부 및 차입 금액	66
〈표 III-3-19〉 장기차입 대상	67
〈표 III-3-20〉 원장과 대표자 동일 여부 및 대표자 기여형태	68
〈표 III-3-21〉 어린이집 대표자 보육관련 취득 자격유형	68
〈표 III-3-22〉 대표자 인건비 수준에 대한 운영자 의견	69
〈표 III-3-23〉 운영자 가족 및 친인척의 운영 참여 형태	70
〈표 IV-1- 1〉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73
〈표 IV-2- 1〉 어린이집 유형별 전체 수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74
〈표 IV-2- 2〉 어린이집 유형별 전체 수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	75
〈표 IV-2- 3〉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전체 수입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76
〈표 IV-2- 4〉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전체 수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	77

〈표 IV-2- 5〉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각 항목 수입 평균	78
〈표 IV-3- 1〉 어린이집 유형별 지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80
〈표 IV-3- 2〉 어린이집 유형별 지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	80
〈표 IV-3- 3〉 어린이집 유형별 반당 월 평균 지출: (항)기본급	81
〈표 IV-3- 4〉 어린이집 유형과 규모별 반당 월 평균 지출: (항)기본급	81
〈표 IV-3- 5〉 어린이집 유형별 반당 월 평균 지출: (항)제수당	82
〈표 IV-3- 6〉 어린이집 유형과 규모별 반당 월 평균 지출: (항)제수당	83
〈표 IV-3- 7〉 어린이집 유형별 반당 월 평균 지출: (항)기타후생경비	84
〈표 IV-3- 8〉 어린이집 유형과 규모별 반당 월 평균 지출: (항)기타후생경비 ..	85
〈표 IV-3- 9〉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항)업무추진비	86
〈표 IV-3-10〉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항)업무추진비	87
〈표 IV-3-11〉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기관운영비	88
〈표 IV-3-12〉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직책급 ..	88
〈표 IV-3-13〉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직책급	89
〈표 IV-3-14〉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직책급	90
〈표 IV-3-15〉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회의비	91
〈표 IV-3-16〉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회의비	92
〈표 IV-3-17〉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항)관리운영비	93
〈표 IV-3-18〉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항)관리운영비 ..	93
〈표 IV-3-19〉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여비	94
〈표 IV-3-20〉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여비	95
〈표 IV-3-21〉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수용비	96
〈표 IV-3-22〉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수용비	97
〈표 IV-3-23〉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연료비	98
〈표 IV-3-24〉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연료비	98
〈표 IV-3-25〉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차량비	99
〈표 IV-3-26〉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차량비 ..	100
〈표 IV-3-27〉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기타운영비	101
〈표 IV-3-28〉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기타운영비	101
〈표 IV-3-29〉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항)사업운영비	102
〈표 IV-3-30〉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항)사업운영비	103

〈표 IV-3-31〉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교재교구비	104
〈표 IV-3-32〉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교재교구비	104
〈표 IV-3-33〉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급간식비	105
〈표 IV-3-34〉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급간식비 ·	106
〈표 IV-3-35〉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행사비	107
〈표 IV-3-36〉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행사비	107
〈표 IV-3-37〉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특별활동비	108
〈표 IV-3-38〉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특별활동비	109
〈표 IV-3-39〉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기타 필요경비(목)	110
〈표 IV-3-40〉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월 평균 지출: (목)기타 필요경비	111
〈표 IV-3-41〉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항)시설비	112
〈표 IV-3-42〉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항)시설비	112
〈표 IV-3-43〉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시설비	113
〈표 IV-3-44〉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지출: (목)시설비	114
〈표 IV-3-45〉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시설장비 유지비	115
〈표 IV-3-46〉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시설장비 유지비	116
〈표 IV-3-47〉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자산취득비	117
〈표 IV-3-48〉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자산취득비 ·	117
〈표 V-1- 1〉 보육비용 구성 항목	119
〈표 V-1- 2〉 어린이집 규모 모형	121
〈표 V-2- 1〉 어린이집 수 대비 기타 인력 수 비율	122
〈표 V-2- 2〉 어린이집 규모별 인력 배치 기준	122
〈표 V-2- 3〉 인건비 적용 인력 배치 및 급여 기준	124
〈표 V-2- 4〉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인건비	125
〈표 V-2- 5〉 어린이집 업무추진비	126
〈표 V-2- 6〉 어린이집 관리운영비	127
〈표 V-2- 7〉 어린이집 기타운영비	127
〈표 V-2- 8〉 연령별 영유아 1인당 교재교구비	127
〈표 V-2- 9〉 영유아 1인당 1일 급간식비	129
〈표 V-2-10〉 영유아 1인당 월 급간식비	129
〈표 V-2-11〉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시설비	132

〈표 V-2-12〉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 시설비	132
〈표 V-3- 1〉 보육비용 구성 항목	133
〈표 V-3- 2〉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연령별 아동 1인당 총 보육비용	134
〈표 V-3- 3〉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 연령별 아동 1인당 총 보육비용	134
〈표 V-3- 4〉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비용 및 항목 구성	135
〈표 V-3- 5〉 77인 민간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비용 및 항목 구성	135
〈표 V-3- 6〉 보육비용과 부모 보육료 차이 발생 요인	136
〈표 V-3- 7〉 국공립어린이집 부모 보육료	137
〈표 V-3- 8〉 법인어린이집 부모 보육료	137
〈표 V-3- 9〉 연령별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 부모 보육료	137
〈표 V-3-10〉 77인 기준 보육비용, 보육료 및 지원단가 비교	139
〈표 V-4- 1〉 단축보육시 감축 가능 보육비용: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준	140
〈표 V-4- 2〉 1.5시간 수당 지급시 수당 증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준	141
〈표 V-4- 3〉 이용시간 8+4 체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141
〈표 V-4- 4〉 이용시간 8+4 체제 도입시 8시간 이용 의사 있다는 비율	142
〈표 V-4- 5〉 이용시간 8+4 체제 이용시 이용시간대 선호	143
〈표 V-4- 6〉 인센티브 5만원 지급 시 8시간 미이용 이유	144

그림 차례

[그림 V-3-1] 50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보육비용 항목별 비중	134
[그림 V-3-1] 77인 기준 국공립, 법인, 민간어린이집 보육비용, 보육료 산출가와 지원단가	138

부록 표

〈부록 표 III-1- 1〉 조사 대상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시설인가 및 건축연도	159
〈부록 표 III-2- 1〉 조사 대상 법인어린이집 건축연도	159
〈부록 표 III-3- 1〉 조사 대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년도	160
〈부록 표 V-3- 1〉 국공립어린이집 0세 1인당 비용	160
〈부록 표 V-3- 2〉 국공립어린이집 1세 1인당 비용	160
〈부록 표 V-3- 3〉 국공립어린이집 2세 1인당 비용	161
〈부록 표 V-3- 4〉 국공립어린이집 3세 1인당 비용	161
〈부록 표 V-3- 5〉 국공립어린이집 4,5세 1인당 비용	161
〈부록 표 V-3- 6〉 가정, 민간어린이집 0세 1인당 비용	161
〈부록 표 V-3- 7〉 가정, 민간어린이집 1세 1인당 비용	162
〈부록 표 V-3- 8〉 가정, 민간어린이집 2세 1인당 비용	162
〈부록 표 V-3- 9〉 민간어린이집 3세 1인당 비용	162
〈부록 표 V-3-10〉 가정, 민간어린이집 4,5세 1인당 비용	16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보육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정은 양질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요한 선행 작업이다.

그동안 정부는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보육현장의 변화와 보육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90년대 이후 정부예산 편성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이후 2005년, 2008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서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를 지원하였다.

보육 관련 재정의 증가는 그동안은 부모 부담 완화 측면이 강하였으나 무상 보육 확대 이후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직결된 표준보육료 산정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보육현장에서는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에 대한 요구 증대 및 정부의 보육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보다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표준보육비용 산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설립 주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정부가 설립비용을 투자한 국공립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법인어린이집, 개인이 자기자본이나 타인자본으로 투자한 어린이집의 운영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인건비를 받고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인건비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동일하다는 것도 합리성이 떨어진다. 어린이집이 법적으로 또한 그 특성상 비기업형 비영리조직이지만 개인이 투자하여 운영한다는 측면도 염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연구는 부분적으로 시설유형별 차이를 검토하고 반영하였으나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표준보육비용에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표준보육비 산정은 매해 달라지는 물가수준을 고려하고, 누리과정·표준보육과정 등 보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로, 육아정책연구소는 2012년부터 표준보육비를 산출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연구는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관점에서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교재교구비, 시설관리비, 인건비, 급간식비로 나눠서 검토하

고, 항목을 구성하는 요소를 세분하여 항목별 비용을 추정하는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4년 연구는 2013년도 육아정책연구소 기초 연구결과(서문희 외, 2013a)에 의거하되 설치 주체와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육비용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별 요소를 고려하여 보육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설유형 특성을 반영한 보육비용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아동 1인당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는데 목적을 둔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¹⁾

첫째,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선행 연구를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보육비용의 의미, 구성 항목 및 표준보육비용 산출 과정과 방법을 검토하고, 산출방법 차이에 의한 보육비용 산출을 비교 검토하였다.

둘째, 어린이집 보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차이인 설치비와 시설유지비의 차이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2013년 연간 어린이집 보육비용 지출 자료를 수집하여 재무회계규칙 상 세출 항목을 어린이집 유형,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넷째, 기본적으로 보육비용 구성 항목별로 시설규모 및 아동연령별 보육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연령별, 어린이집 규모별로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다섯째, 보육비용 산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가. 관련 문헌 및 자료 수집 분석

정부의 보육비 지원 관련 정책, 보육비용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분석하

1) 본 연구는 2013년부터 5년 기한 동안 ‘표준보육료 산정연구’라는 동일한 주제로 추진하는 연구의 2차 연도 연구임.

였다. 선행연구 검토는 본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를 추진한 주체별로 분류하여 특성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이어서 각 항목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이는 선행연구가 본 연구의 중요한 활용자료가 되기 때문이었다.

나. 어린이집 연간 재무회계 자료 분석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협조로 어린이집이 어린이집통합시스템에 입력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12개월 치 어린이집 기본정보와 재무회계 보고 자료²⁾를 모두 수집하여 연 평균 월 비용을 환산한 후에, 이를 시설유형별, 기준 규모별로 세입·세출 차이를 분석하였다. 2013년에 4월과 9월 두 달치 자료를 분석한 바 있는데(서문희 외, 2013a), 월별 차이가 심한 것으로 파악되어 연간 자료를 수집하여 연 평균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 어린이집은 12개월 치 기본 정보와 재무회계 자료가 모두 있고 기본급(목), 급간식비(목), 관리운영비(항) 지출이 모두 있는 어린이집으로 한정하였다. 12개월 치 평균이므로 연간 자료가 모두 있어야 하고 또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운영상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의 지출은 제대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자료 분석 시에 입력 오류로 추정되는 자료도 제외하였다. 따라서 분석 계정과목별로 유효한 정보의 수는 각기 달랐다. <표 I-3-1>은 인건비 기본급 세출을 기준으로 한 어린이집 수이다.

<표 I-3-1> 유형별 차이 분석 대상 어린이집: 기본급 세출 자료 기준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단위: 개소(%)	
							부모 협동	직장
수	41,315	2,231	1,412	849	14,053	22,194	462	114
비율	(100.0)	(5.4)	(3.4)	(2.1)	(34.0)	(53.7)	(1.1)	(0.3)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어린이집세입세출회계자료.

자료는 전체 자료를 어린이집 유형별로 분석하였고 이어서 어린이집 기본 모형으로 설정된 규모를 기준으로 각 유형별로 일정 수의 어린이집을 선별하여 세출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어린이집 예결산 기준일은 1.1~12.31일이지만 새로운 반 편성이나 보육료, 지원단가 등 모든 기준이 3월부터 적용되는 현실을 따른 것임.

어린이집 시설유형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으로 구분하고, 이외 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법인·단체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여부 및 설립주체 면에서 동질성이 낮아서 제외하였고, 직장 및 부모협동 어린이집 역시 보편성이 낮아서 본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였다.

어린이집 기준 규모는 어린이집 반 구성 특성을 반영한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³⁾, 교사의 배치 변동이 없는 수준에서 정원 초과와 미달을 감안하여 각 해당 집단별로 ±4명 범주에 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I-3-2 참조).

〈표 I-3-2〉 규모별 차이 분석 대상 어린이집

구분	전체	단위: 개소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현원		16~20	46~54	73~81	93~101	120~128	138~146	165이상
국공립	692	45	199	261	105	34	19	29
법인	456	23	133	133	77	25	26	39
민간	3,124	787	935	614	317	156	84	231
가정	9,224	9,224	-	-	-	-	-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어린이집 세입세출회계자료.

다. 어린이집 대상 설문조사 실시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설조사의 목적은 시설설치비와 유지비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조사 결과를 시설유형별 설치비와 시설유지비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상으로는 기능보강비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과 관련된 운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대상으로는 기능보강비 지원 이외에 놓어 ön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지출 발생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 대상 조사는 어린이집 설치와 기능보강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과 관련된 운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어린이집 규모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이상으로의 구분은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각 어린이집에서 영아반과 유아반을 둔다고 가정하고 반을 구성할 경우에 나타나는 총 정원을 적정 규모별로 구분한 것으로, 보육사업안내에서 기본 모형으로 제시해 왔으며, 또한 선행연구가 대부분 이 기준을 적용하였음.

국공립과 범인 어린이집은 각각 600개소를 목표로 시도별로 비례 배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분과의 협조로 전문 조사업체를 통한 이메일조사로 실시되었다. 전국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어린이집 총 9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 어린이집 선정 방법은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에 차이를 두었다. 가정어린이집은 300개소 조사 완료를 목표로 각 시도별로 일정 수를 배분하였고, 조사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어린이집 분과의 협조로 메일조사로 실시되었다. 민간어린이집은 600개소 조사 완료를 목표로 전국 민간어린이집 명단에서 정원 충족률 80% 이상을 선별하여 무작위로 목표 완료수의 2.5배 이상인 1,500여개를 선정, 이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로 실시하였다.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 분과가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우편조사이므로 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도 시도되었다.

<표 I-3-3>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조사 내용으로, 어린이집 기본사항, 건물설치비 관련 사항, 운영비 차입 여부 및 규모, 개보수비 관련 사항, 기타운영비 관련 사항, 대표자 관련 사항, 어린이집 운영에 친인척 참여 관련 사항, 행정처분 관련 사항으로 구성하였다(표 I-3-3 참조).⁵⁾

〈표 I-3-3〉 민간개인 및 가정 어린이집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1. 기본사항	- 어린이집 기본정보, 원장 기본정보
2. 건물설치비 관련	- 투자비용, 자기자본 규모, 임대료 및 응자금 이자
3. 차입 관련	- 차입 경험, 상환
4. 개보수비 관련	- 개보수 경험, 비용 조달
5. 기타운영비 관련	- 기타운영비 규모 및 사용처, 적립금 상황
6. 대표자 관련	- 원장과 동일인 여부, 보수
7. 친인척 참여 관련	- 참여 여부 및 유형
8. 행정처분 관련	- 행정처분 경험 및 사유

조사결과 국공립어린이집과 범인어린이집이 각각 404개소, 민간어린이집 273 개소, 가정 279개소로 총 1,360개소 조사가 완료되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목표

4) 가정어린이집은 300개소, 민간어린이집은 600개소로 자료 수집 대상 수에 차이를 둔 것은 본 조사 목적이 시설유형별 대표성 확보보다는 각 어린이집 규모별로 적정 규모의 자료 수집이었기 때문임. 그러나 조사 결과, 민간어린이집의 조사 협조 미미로 규모별 사례 수는 다소 부족하였음.

5) 민간·가정, 국공립 및 범인 어린이집비 조사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음

대비 비율은 가정어린이집은 목표량의 90% 이상을 충족하였으나 국공립과 법인이 67%이고 민간어린이집의 목표 달성을률은 45% 수준이었다.

〈표 Ⅰ-3-4〉 조사 완료 어린이집 특성

단위: 개소						
구분	민간	가정	구분	법인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정원		정원	
20인 이하	-	279	76인 이하	139	49인 이하	125
46~54인	44	-	77-99인	134	60-76인	114
73~83인	26	-	100-125인	53	77-99인	112
93~103인	69	-	126인 이상	78	100인 이상	53
124-159인	78	-				
160인 이상	56	-				
지역규모			지역규모		지역규모	
대도시	127	57	대도시	125	대도시	228
중소도시	110	178	중소도시	189	중소도시	143
읍·면지역	36	44	읍·면지역	90	읍·면지역	33
전체	273	279	전체	404	전체	404

라. 보육비용 시뮬레이션

연령별, 어린이집 규모별로 아동 1인당 각 항목별 비용 및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비는 2013년 연구 결과와 재무회계 분석 자료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외 임대료, 응자금 등 시설유형별 소요 지출은 어린이집 유형별 조사 자료와 재무회계 분석 자료를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마. 자문회의 및 간담회

관계자 집단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전반적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제2장에서는 시설유형별 보육비용 차이 분석에 중점을 두고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는 먼저 추진 주체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비교하였다.

1. 선행연구 개요

가. 연구 추진 주체별

보육비용 산정 연구 추진의 주체는 정부, 연구소 및 어린이집 관련 단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실제 연구를 누가 수행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연구비를 어디서 지원하였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연구수행 주체별로 살펴보았다.

1) 중앙 및 지방 정부 추진 연구

2000년 이후 중앙정부 지원 연구를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⁶⁾

가) 2004년 연구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지원한 연구는 200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추진한 연구로 한국조세연구원(박기백·김현숙·김우철·김형준·손녕민, 2005)에서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참여 정부가 새로운 육아지원 정책의 틀을 짜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실시된 200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표준보육비용 산출이 포함되어 추진된 것이다. 이 연구는 표준보육비용을 공식적인 어린이집을 통해 만 0~5세의 영유아 1인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투입비용을 추산하는 것으로 영유아를 일정 기준으로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육비도 함께 산출하였고, 일부

6) 정부 지원으로 가장 먼저 실시된 보육비용 산출 연구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삼성복지재단의 연구(2000)임.

기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였다.

보육비용 산출에 포함된 항목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이며, 아동 연령 및 시설규모별로 2개의 안을 산출하였고,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과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연구 방법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설치비 등 대부분 항목은 규범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관리운영비와 같은 일부 항목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현상을 반영하여 비용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집 유형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관리비에서 영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따른 가중치 부여로 영아 보육료가 높게 산출되었다.

나) 2008년

2008년에 표준보육비용 산출 연구(김현숙·서병선, 2008)는 2005년 한국조세연 구원 연구를 보완한 것으로, 물가상승분 반영 및 표준보육료 구성 항목의 산정 방법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비용을 재산정하였다.⁷⁾

산출에 포함된 항목은 2004년 연구와 동일하게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이다. 비용 산정은 2004년 연구보다는 어린이집 현상을 더 많이 반영하여 다양한 수치로 제시되었다. 현장 근거 자료로 113개 어린이집 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산출된 비용은 2004년 연구에 비하여 영아 비용은 감소하고 유아 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비에서 영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가중치는 제거하였으나, 인건비 산정 시에 보육인력의 운영자 사회보장 분담금과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시설유형별 차이는 현실적 지출에 대해서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이 표준보육비용보다 70% 수준으로 낮게 지출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실제로 제시된 표준보육비용 제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최소한으로만 수정하였다. 먼저 시설유형별 교사 급여 호봉의 차이를 반영하였다. 표준보육비용 산정 시에는 시설장의 경우 13호봉을 평균적인 호봉, 표준모형에서는 보육시설 교사의 호봉을 5호봉으로 설정하였다. 시설유형 차이는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

7) 이 연구에서는 표준보육비용의 ‘표준’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현실적 비용을 가리키는 말, 보육법령 및 시행령 등 법적,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비용, 사회가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일정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세 가지로 정의하여 활용하였음.

의 시설장의 경우에는 14호봉을 책정하고,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11호봉, 가정보육시설은 8호봉을 책정하였다. 여기서 기준 호봉은 육아정책연구센터 2007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결정하였다. 또한 설치비의 차이를 반영하여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설치비를 제외하였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는 기준 비용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부지구입비는 표준보육비용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은 자가 시설을 원칙으로 하므로 표준보육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따라서 국공립은 호봉을 조정하고 시설설치비를 제외하고 민간과 가정은 인력의 호봉만 조정하여 비용을 제시하였다. 이외 항목은 그대로 두었다. 이러한 조정치는 표준으로 산정한 비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 2013년 연구

보건복지부 지원 연구는 2013년에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시행되었다. 이 연구는 어린이집이 사회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라는 테두리 안에서 제반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또한 어린이집의 실제 현상과 요구를 반영하여 일정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으로 보았다.

추진 방법은 규범적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관리운영비는 2009년 4월 어린이집 43,000개소 재무회계(CIS) 자료분석 결과를 적용하였다.

인건비 산정 시에는 제한적이나마 보육교사의 시간외 수당을 추가하여 지향하는 정책방향을 반영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보조교사 배치 사항을 제외한 안을 기본안으로 하고 부가적으로 이를 포함한 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누리 보조교사 배치가 권장 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기준이 아닌 것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보육비용과 보육료를 혼동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자는 의도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보육료를 산정하였다. 그 동안의 연구에 비하여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아동 보육비용을 산정하였다. 일반아동 산정과 동일한 기준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필요한 부가적 비용을 가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산출결과, 2008년도 김현숙의 연구와 비교하면 77인을 기준으로 보면 본 분석 1인은 2008년 김현숙의 연구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액수와 비교하여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 정책연구소 추진 연구

중앙 및 지방 정부 정책연구소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육비용 산출 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일찍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변용찬·임유경, 2002)에서는 표준보육료를 일정한 기준 하에 아동을 실제로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산출하였고, 이후에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추진되었다. 2010년 이후에 추진된 각 연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2010년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

2010년에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임양미, 2010)에서 경기도 민간개인 및 가정 어린이집 유아 보육료를 산정한 바 있다. 산출 연구 기본틀은 선행연구와 유사하고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보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출 계정과목의 (목)을 적용하였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재산 조성비를 사용하되, 각 항목별 내역은 모두 포함하였다. 인건비에는 재무회계 계정과목 (목) 6종이 모두 포함되었고, 관리운영비도 제세공과금에 배상·화재·자동차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현실을 반영하였다.

둘째,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하되, 경기도 보육시설 운영 실태 조사결과로 제시된 시설 운영비용 현황을 반영하였다. 인건비의 경우는 현실적인 경기도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운영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1안은 현실적으로 원장 8호봉, 보육교사 5호봉을 적용하고 2안은 국공립 수준을 적용하였다. 배치율이 낮은 원감은 배치를 제외하였다.

셋째, 차량운행 비율이 높은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운전기사 인건비 및 차량 운영비를 포함한 반면 차량운행비율이 낮은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제외하였다.

2안으로는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유아 보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제시하되, 동시에 시설규모별로 가정어린이집, 50인 기준, 77인 기준 시설로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타 운영비 수준을 고려하여 보육료를 산출하였다.

나) 2012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이미화 외, 2012)는 현상을 보다 많이 반영한 연구로 단일안을 제시하였다.

구성항목은 임양미(2010)의 연구와 유사하게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 사업운영비(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재산조성비(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재무회계 계정과목을 항목 분류 체계로 준용하여 비용을 산출하였다.

인건비 산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가정어린이집에도 원장을 배치하고 4호봉을 적용하였고 간호사도 영양사와 마찬가지로 5개 시설 공동으로 배치하였다. 비품과 소모품은 재무회계 작성방식을 따라서 교재교구비보다는 재산조성비로 분류 하였으며, 재산조성비나 시설비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차량비는 비용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다) 2013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2013년 연구(서문희 외, 2013a)는 항목을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설치비로 설정하고 각 항목을 구성하는 요소를 세분하여 분석하고 특히 교재교구비와 관리유지비는 항목별 비용을 추정하는 기초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교재교구비는 교재교구 범위는 실내와 실외환경 구성에 필요한 교재교구로 구분하고, 실내환경은 앞서 살펴본 평가인증지표와 영아보육프로그램,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제시한 흥미영역을 기초로 영역을 구성하며, 각 흥미영역별로 교재교구를 배치하였다. 교재교구 종류나 양은 1년 동안 표준보육과정 또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교재교구로 구성하였다.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아기 침대, 교구장, 이불장, 에어컨 등의 비품성 교재교구와 색종이, 풀, 도화지 등 소모성 교재교구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어린이집의 유지관리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물내부, 건물외부, 전기 소화설비, 급수 위생설비, 난방 급탕 설비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다. 산출방법은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어린이집 사례의 도면을 분석하여 실내 재료 마감표와 동일하게 각 실별로 천장, 바닥, 벽 부위별 및 외부마감 면적을 분리하여 산정하고, 산정된 각 실의 부위별 면적과 외부마감 면적 값에 실적 공사비를 적용하여 초기 공사비를 계산한 후에, 각 마감자재별 수선율과 수선주기, 교체주기 등을 주택법 시행규칙의 장기수선계획을 반영하여 연간 내외부 마감별 연간 및 아동 1인당 시설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다. 산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전기소화, 급수위생, 난방급탕 등의 설비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추가하였다.

보육비용은 현재보다는 개선된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였다.

3) 관련 단체 지원 연구

보육비용은 정부의 지원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자나 관련 단체의 관심이 크다. 따라서 단체가 연구비를 지원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한 사례들이 있다. 이 중에서 2010년 연구는 비교적 시설 유형 중립적 입장에서 산출되었고 2012년 및 2013년 연구는 각각 가정과 민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2010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지원 연구

2010년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지원한 연구(김혜금, 2010)⁸⁾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계정과목에 준하여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시설설비비 등의 항목을 연구자가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일부 항목은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적용한 간호사 배치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종사자 배치기준에 미달하고, 출사부 배치는 정부의 배치기준을 초과한다.

활용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는 전국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보육시설 119개소를 대상으로 수집한 시설 기초 정보와 투입비용에 대한 정보이다.

표준보육비용 안은 항목에 따라 복수로 산정하였다. 운전기사 인건비 포함 여부 및 수준 반영으로 4종의 안을 제시하였다. 인건비는 1안은 기본급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과 사회보험 부담비용을 합하여 산출하고, 2안은 1안에 덧붙여 수당 및 기타후생경비를 포함해서 산출하였다. 기준 급여는 원장 13호봉, 교사 6호봉, 기타 3호봉을 적용하였다. 업무추진비와 관리운영비는 실태조사에 참여한 보육시설장들의 의견을 토대로 기준액을 제시하였다.

관리운영비는 1안은 김현숙과 서병선(2008)의 연구와 유사하게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를 합하여 산출하고, 2안은 1안에 덧붙여 여비, 차량비, 기타운영비를 포함해서 산출하였다. 관리운영비 평균을 구하여 표준 관리운영비 산출을 위한 기준으로 삼았다.

8)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면서 표준보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제로 투입하는 제반 비용에 기초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정의함.

사업운영비는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수익자부담금 지출로 구성하였다. 교재교구비는 각 연령별로 교실 흥미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품목과 소요 물량, 비용을 학급단위, 원아단위로 계산하고 이를 합하여 산출하였다. 교재교구의 수량 및 단가, 내구연한을 고려하였다. 행사비는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영유아 1인당 행사비의 평균을 월간 단위로 구하여 산출하였다.

시설비를 보육활동 및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 공간 중심으로 구분하여 소요 품목과 물량, 단가를 조사하고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보육 활동에 필요한 비품구입비는 교구·설비 이외에 소모품 성격을 지닌 비용으로 비소모성 물품이라 할지라도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간주하였다.

나) 서울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지원 연구

2012년에는 서울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한국여성노동연구소에 의뢰하여 산출한 가정어린이집 보육비용은 2008년 김현숙·서병선(2008)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부가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제시된 안은 총 7개로, 4가지 유형을 두고 부분적 변형을 통하여 7개 안을 제시하였다. 금액은 각각 기본 전제의 차이로 0세아 기준으로 최소 830,500원에서 최대 1,420,200원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매우 넓다. 최소 안은 2011년에 어린이집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 비용이고 최대는 교사 1인당 아동수를 개선하여 반영한 비용이다.

특성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어린이집 인건비에는 시설장 16호봉, 보육교사 9호봉으로 책정하였고,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직은 반영 하되 보육교사 1인은 보육교사 급여 대신에 시설장 급여를 적용하였다. 시설장과 보육교사 호봉 기준은 그간 선행연구에서 적용된 기준의 최고 수준이다. 인건비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3안을 제시하였다. 3안 3종으로 시설가액은 3억, 4억, 5억 원으로 산정하고 임대료 형태로 반영하였다. 적용 기준 요율은 2012년 당시 1년 만기 은행 정기 예금 세전 금리인 4.2%이었다. 이외에 안전비용으로 안전보험료를 보육비용에 포함하였다. 셋째, 제4안은 부모들의 영아의 개별보육 욕구와 개별 보육 시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즉, 영아의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연령별로 각각 2명, 4명, 5명으로 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인건비가 높아지고 그 결과 보육비용은 크게 상승하였다.

다) 2013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지원 연구

2013년 전국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지원 연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 현실에 맞는 표준보육비용을 될 수 있도록 비목을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이에 의거하여 비용을 산정하였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 비용의 근거가 되는 유효한 자료는 346 개 민간어린이집 표본 조사 자료이었다. 이 연구의 특성을 몇 가지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건비 산정시 보육인력으로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이외에 원감, 상근 대표자, 보조교사, 일용잡급을 두었고 시간외 수당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급여 수준도 원장은 실급여 수준, 원감 12호봉과 기타 4호봉의 기준으로 하였고, 상근 대표자는 행정 16호봉을 부여하였다. 인건비에는 4대 보험 부담금이 모두 적용되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현실에 맞는 표준보육비용을 될 수 있도록 상근 대표자 인건비 지급을 반영한 안과 반영하지 않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점이 특이하다.

둘째, 시설설치비의 반영이다.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응자금 이자 3종을 모두 포함하고 그 기준은 상한을 두지 않고 실제 지출하는 액수를 적용하였다. 건물임대료는 실제 임대료를 적용하였고, 감가상각비는 장비, 집기비품은 5년 정액법, 건물 및 구축물은 30년 정액법으로 포함하였고, 응자금 이자는 실제 월 지출 이자를 반영하였다. 이 경우에 자가 운영과 임대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두 비목은 낮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셋째, 재산조성비에서 아동 1인당 단위면적에 기초하여 산정하였으며 건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시설 개보수비와 자산취득비용을 산출하였고, 또한 법정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유지비를 산정하였다.

넷째, 업무추진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는 모두 시설규모별로 조사된 보육시설 운영 비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다섯째, 차량유지비는 독립된 비용으로 기사 인건비, 유류비, 차량보험료, 차량수리비 및 자동차세 등을 반영하여 별도로 산정하였다.

또한 자기자본 투자보수는 설립자본금(건물, 토지 등)의 50%, 월 0.5%를 제시하였으나 보육비용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표준보육비용은 상근 대표자 인건비와 차량비 반영, 미반영으로 4종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하다보니 그 비용의 규모가 매우 높다. 4가지 안 모두 0세아는 50인 어린이집 기준으로 180만원 수준이 된다.

2. 보육비용 항목별 비교

제2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를 보육비용 구성 항목별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각 연구에 포함된 항목이 동일하지 않으나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가. 인건비

인건비의 핵심은 인력의 배치와 각 인력별 처우 수준이다. 선행연구의 인력 배치와 급여 기준을 정리하면 <표 II-2-1>과 같다.

어린이집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성을 알 수 있다. 첫째, 인력배치에서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나타난 인력배치 기준 이외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한 연구와 법으로 정한 기준 이하를 반영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가정어린이집을 다룬 송명희(2012) 연구와 이미화 외(2012) 연구에서는 가정어린이집에 시설장을 배치하였고, 서문희 외(2013a)는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현행 법규나 기준을 초과하여 부가적인 인력을 배치한 점이다. 특히 2013년 경제종합연구소 연구는 대표자를 상근근로자로 포함한 방안까지 배치 가능한 인력을 모두 배치하여 인건비에 반영하였다. 법적 기준 이하로의 적용은 간호사 배치에 관한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연구자 임의로 영양사와 마찬가지로 5개 어린이집 당 1인을 배치하였다(표 II-2-1 참조).

처우 수준도 원장, 보육교사 및 기타 인력의 처우 수준을 호봉으로 책정하는데 여기서도 연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육비용 산정에서 인건비 기준은 대부분 현장의 조사 자료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급여표를 적용하여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었다. 교사 1인당 아동수가 아동연령별로 다르고 또한 어린이집마다 인력의 배치가 다르고, 재무회계 자료가 전체 인력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나 어린이집 지출 조사 자료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이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임양미 외(2010)의 실제 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실 급여 수준을 반영하였고, 이외 연구들은 조사에서 나타난 보육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책정하고 급여표에서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적용한 호봉은 원장은 11~16호봉이다. 이미화 외(2012)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호봉을 별도로 산정한 특성이 있다.

〈표 ॥-2-1〉 인건비 적용 임력 배치 및 금여 기준

구분	김현숙·서병선 (2008)	김혜금(2010)	임양미 외(2010)	송명희 외(2012)	이미희 외(2012)	한국중합정체 연구원(2013)	서문희 외(2013a)
지원	보건복지부 한국어민족 총연합회 영유아	한국어민족 총연합회 영유아	경기 여성가족연구원 유아	서울시 가정 어린이집연합회 영유아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영유아	육아정책연구소
대상	- 13호봉 (가장 미배치)	- 13호봉	- 1안 실급여 2안 8호봉	- 16호봉	- 11호봉 기정 4호봉	- 11호봉 기정 4호봉	- 7가정 미배치 1안 12호봉, 2안 15호봉
기간						- 12호봉	
보육교사	- 6호봉	- 6호봉	- 1안 실급여 2안 5호봉	- 9호봉 (수 3, 5명 부수)	- 5호봉 기정 3호봉	- 7, 4호봉, 1호봉	- 1안 5호봉 2안 6호봉
취사원	- 3호봉	- 3호봉	- 1호봉	- 1호봉	- 1호봉	- 3호봉	- 1호봉
영양사	- 5개 시설 공동 - 6호봉	- 5개 시설 공동 - 6호봉	- 5개 시설 공동 - 2안 1호봉	- 5개 시설 공동 - 1호봉	- 5개 시설 공동 - 1호봉	- 5개 시설 공동 - 4호봉	- 5개 시설 공동 - 3호봉
간호사	- 5개 시설 공동 - 6호봉	- 5개 시설 공동 - 6호봉	- 5개 시설 공동 - 2안 1호봉	- 5개 시설 공동 - 1호봉	- 5개 시설 공동 - 1호봉	- 4호봉	- 1안 미배치 2안 3호봉
보조(비정규교사) 일용집급						- 4호봉	- 1호봉(구리교사)
제수당	- 2안에 포함 - 29년에 포함	- 척용	- 척용	- 척용	- 척용	- 척용	- 2인 보조인력
기타 후생경비						- 시간외 수당	- 시간외 수당
의상화 상근대포자						- 3호봉	
사회보합부담금	- 77인 시설(1안) 0세아 572,000원 3세아 159,000원	- 적용 77인 시설 0세아 689,899원 3세아 181,339원	- 적용 실급여 기준 민간 178,180원	- 적용 7개안 제시 - 2-1안 0세 676,300원	- 적용 77인 시설 0세아 697,919원 3세아 206,661원	- 적용 80인 미만 0세아 1,315,486원 3세아 263,097원	- 적용 77인 시설(1안) 0세아 739,723원 3세아 213,283원
단기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겸직이 가능하지만 16호봉의 원장을 배치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연구자들의 기본선 설정의 차이는 크다(이미화 외, 2012; 송명희, 2012).

보육교사도 급여도 실 급여에서 9호봉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크다. 기본 급여 이외에 시간외 수당이나 누리반 보조교사 배치 등도 2013년 일부 연구에서 반영되었다.

나. 급간식비

급간식비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아동 연령별 1일 권장열량을 산출하고 열량에 따른 식단표를 작성한 후 아동 1인당 1일 단가를 산출하였다. 단가 산출은 평일 점심 1회와 간식 2회, 토요일 점심 1회와 간식 1회를 기준으로 월 25일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지원한 연구(한국종합경제연구원, 2013)는 점심 1회와 간식 2회를 기준으로 아동 1인당 1일 2,200원에 월 21일을 일괄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하고 있다.

김현숙 외(2008)와 김혜금(2010)의 연구는 시설규모 및 연령별로 급간식비를 산출한 점은 유사하나, 김현숙 외(2008)는 시설규모별 급간식비를 각 세별로 산출한데 반해 김혜금(2010)은 영영아(만0세)와 영아(만1~2세), 유아(만3~5세)로 연령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전자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식단가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으나 후자는 일반 식단과 유기농 식단가를 산출하고 있다. 이미화 외(2012)도 김혜금(2010)의 연구와 유사하게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식단가를 산출하였으나, 차이점이라면 단일 단가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만 3~5세 유아를 중심으로 보육료를 산정한 임양미 외(2010)도 단일 급간식 단가를 산출하고 있다. 한편, 서문희 외(2013a)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보다 영아 연령을 세분화하였다. 만0세를 이유식 초기, 중기, 후기로 더욱 더 세분화하여 단가를 산출하였다. 이 연구자는 추가적으로 도매와 소매 등 구매형태에 따른 단가 차이를 제시하였으나, 보육비용 산정 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산출기준과 식재료 단가 등의 차이로 비슷한 시기에 수행된 연구더라도 아동 1인당 단가가 차이가 난다. 만 3~5세 유아를 기준으로 2010년에 수행된 김혜금(2010)과 임양미 외(2010)의 연구를 보면, 아동 1인당 급식 단가가 각각 2,240원, 2,217원으로 비슷하지만, 유기농 식재료 단가를 적용한 김혜금 외(2010)의 2안이 4,000원으로 1,800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표 II-2-2〉 급간식비 산출 기준

구분	김현숙·서병선 (2008)	김혜금(2010)	임양미 외(2010)	송명희 외(2012)	이미희 외(2012)	한국종합경제 연구원(2013)	서문희 외(2013a)
지원	보건복지부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경기 여성기죽연구원	서울시 가정 어린이집연합회	육아정책연구소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육아정책연구소
대상	영유아	영유아	유아	영아	영유아	영유아	영유아
산출기준	-월 산출일 미상 -평일:점심 1회, 간식 2회 토요일:점심, 간식 각 1회	-월 25일 -평일:점심 1회, 간식 2회 토요일:점심, 간식 각 1회	-월 25일 -평일:점심 1회, 간식 2회 토요일:점심, 간식 각 1회	-실체 비용 적용	-월 25일 기준 -평일:점심 1회, 간식 2회 토요일:점심, 간식 각 1회	-월 21일 기준 -평일:점심 1회, 간식 2회 토요일:점심, 간식 각 1회	-월 25일 기준 -평일:점심 1회, 간식 2회 토요일:점심, 간식 각 1회
단가	-77인 3세 기준 1인: 월 46,500원 2인: 월 55,000원	-77인 3~5세 기준 1인: 1일 2,240원 2인: 1일 4,000원	-1일 2,217원 -1일 2,200원	-월 59,400원 -유아: 1일 2,490원	-1일 2,200원 -1일 2,200원	-1인 3~5세 일반: 2,192원 풀러스: 2,228원	-1인 3~5세 일반: 2,192원 풀러스: 2,228원

또한 이미화 외(2010)와 서문희 외(2013a)의 연구도 전자는 유아 1인당 2,490 원, 후자는 아동 1인당 일반 식단가 2,192원, 플러스 식단가 2,228원으로 전자가 제시한 식단가가 일반 식단인데도 불구하고 다소 높게 산정되었다.

다. 교재교구비

교재교구비 구성 내용으로는 실내외 교재교구가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연구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혜금(2010)과 임양미 외(2010), 이미화 외(2012)는 교재교구 산정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부합하면서 표준보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교재교구만을 교재교구비로 한정하고, 보육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품이나 소모품은 재산조성비 단가 산정에 활용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김현숙 외(2008)와 서문희 외(2013a)는 보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라는 관점에서 규범을 적용하여 실내외 교재교구 외에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즉, 비품과 소모품까지 포함하여 교재교구비를 산정하였다.

교재교구 구입 단가는 보통 교구업체 판매 단가를 활용한다. 김현숙 외(2008)와 김혜금(2010)은 교구업체 1곳을 선정, 이 업체의 단가로 교재교구비를 산출하였다. 반면에 임양미 외(2010)와 이미화 외(2012) 그리고 서문희 외(2013a)는 교구업체 2곳 이상의 판매 단가를 조사한 후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교재교구 단가를 교재교구비 산정에 활용하였다. 이미화 외(2012)는 교재교구 구입가 중 최저 가격, 서문희 외(2013a)는 중간 가격을 적용하였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한편, 김현숙 외(2008)와 김혜금(2010)은 영유아 연령 외에 시설규모에 따른 교재교구비 단가를 산출하고 있으나, 나머지 연구들은 교재교구가 반 단위로 설치되어 있다는 기준 하에 연령만을 고려하여 단가를 산정하였다. 대부분 단일 단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김현숙 외(2008)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삼성어린이집 교재교구 수준과 사립유치원 수준의 복수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종합경제연구원(2013)은 교재교구별 가격을 합하는 단가 산출과정을 거치지 않고 민간어린이집 세출에 일정한 기준 비율을 적용하여 교재교구비 단가를 산출하였다.

〈표 II-2-3〉 교재교구비 산출 기준

구분	김현숙·서병선(2008)	김혜금(2010)	임양미 외(2010)	송명희 외(2012)	이미희 외(2012)	한국종합정책 연구원(2013)	서문희 외(2013a)
지원	보전복지부 한국어 린이집 총연합회	여성가족연구원 유아	경기 어린이집연합회 영아	서울시 가정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교재교구 제작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육아정책연구소
대상	영유아						
구성	교실설비와 관련된 교재교구(비품, 소모 설비비, 교육관련 품 제외) 재료비, 소모품	교재교구(비품, 소모 영역포함, 비품 소모품 제외)	교재교구(실의놀이 영역포함, 비품 제작)	교재교구(비품, 소모 품 제외)	교구업체 교재 교구업체 중 지가격 적용	교구업체 교재 교구업체 중 간 가격 적용	교재교구 및 소모품, 비품
교재교구 구입단가 기준	-1개 교구업체 단가-1개 교구업체 적용	단가-1개 교구업체 가격 적용	교재교구업체 가격 조사하여 산출, 일부 품목 인터 넷 구입 시 최저가 적용	-2개 교구업체 교재 교구업체 가격 적용			-3개 교구업체 교재 교구업체 가격 중 간 가격 적용
산출기준	-연령 및 청원규모-교도 및 연령별 단 별 단가 산정 -1인 국공립보육시설 및 삼성어린이집 교재교구 수준 23인사립유치원	-연령별 단가 산정 -단일(안) 제작	0세아 설계 비용 1,2세아 편장비용 -단일(안) 제작	-연령별(0,1,2,3,4~5세) 세) 교재교구비 산 출 -단일(안) 제작	기준 별 교재교구비 출 -단일(안) 제작	기준 연령(0,1,2,3,4~5세) 별 교재교구비 출 -단일(안) 제작	
단가	-만3세 월 52,000원	-77인 기준 만3세 월 13,245원	-만3세 월 11,937원 -1, 2세 48,800원	-0세 9700원 -1, 2세 48,800원	-만3세 월 11,937원 -1, 2세 48,800원	-80명 미만: 시설당 월 3,240,000원	-만3세 월 45,437원

산출된 아동 1인당 단가를 보면, 3세 기준으로 김현숙·서병선(2008)과 서문희 외(2013a)는 4~5만원 대로 높으나 김혜금(2010)과 임양미 외(2010), 이미화 외(2012)는 1만원 대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의 연구에서 교재교구비 단가 산출에 비품과 소모품을 포함하였고, 후자는 이를 시설비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차이는 교재교구에 대한 기본적 정의와 재무회계 계정과목 상의 교재교구비 (목)의 개념 차이의 연장이다.

라.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 구성에는 대부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고, 연구에 따라 차량운영비와 기타운영비가 추가되어 있다. 김현숙 외(2008)와 이미화 외(2012)는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 4개 (목)을 기초로 단가를 산출하였고, 김혜금(2010)은 여기에 차량운영비와 기타운영비가 포함된 단가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임양미 외(2010)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4개 (목)에 차량운영비와 기타운영비가 추가된 단가를 산출하였고, 한국종합경제연구원(2013)은 기타운영비, 서문희 외(2013a)는 다른 선행 연구들이 업무추진비로 별도 산출한 직책급과 회의비, 기관운영비를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단가를 산출하였다.

관리운영비는 대부분의 연구가 실태조사에 의존하여 아동 1인당 단가를 산출하고 있다. 즉, 항목별 산출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무회계 상 관리운영비 월지출 총액을 아동수로 나누어 아동 1인당 단가를 산출하였다. 김현숙·서병선(2008)는 기본안은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나 2안은 김현숙·신은수 외(2008) 연구 결과에 물가상승률 5%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서문희 외(2013)는 어린이집이 매월 시·군·구에 보고한 재무회계 자료를 분석하여 아동 1인당 관리운영비 단가를 추정하였다.

김혜금(2010)는 시설규모와 더불어 영유아 연령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산출한 반면, 나머지 연구(김현숙 외, 2008; 서문희 외, 2013a; 임양미, 2010; 이미화 외 2012)들은 보육 공간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난방시설이나 다른 수용 경비 등의 지출이 더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설규모별 단가를 산출하고 있다.

<표 II-2-4> 관리운영비 산출 기준

구분	김현숙·서병선 (2008)	김혜금(2010)	임양미 외(2010)	송명희 외(2012)	이미희 외(2012)	한국종합경제 연구원(2013)	서문희 외(2013a)
지원 부처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경기 여성가족연구원	서울시 어린이집연합회	육아정책연구소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육아정책연구소	
대상	영유아	영유아	영아	영유아	영유아	영유아	
구성	-납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수용정 비	-1인: 공공요금, 비 및 수수료, 제세 공과금, 연료비, 2인: 1인에 차등비, 기타운영비 가	-여비, 수용비 및 수료, 공공요금/ 세금과금, 운송 비, 연료비, 3인: 차등비 가	-실체 차료 -여비, 수용비 및 수료, 공공요금/ 세금과금, 연료비, 기타운영비 (차량운영비 제외)	-수용비, 수수료, 공공 요금, 제세, 보험료, 세금과금, 연료비, 기타운영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 요금, 제세, 보험료, 연료비, 타운영비 비 포함	-여비, 수용비 및 수료, 연료비, 기타운영비
산출기준	-1인: 조사자료 반영 -2인: 승설대(2008)에 물가상승률 5% 적용	-실태조사 결과 활용 -시설구조, 양별 비용 -이 1인당 비용	-1인: 실태조사 반영 -2인: 민간보육시설 모별 유아 1인당 평균 비용	-안전비용 포함 -어린이집 운영비 태조사결과 적용 -어린이집 규모별 산출	-어린이집 운영비 태조사결과 적용 -어린이집 규모별 산출	-어린이집 운영비 설비-민간어린이집 규모별 산출	-어린이집 운영비 설비-민간어린이집 규모별 산출
단가	-77인기준 1인 월 37,000원 2인 월 43,000원	-77인 기준 1인 월 47,123원 2인 월 94,711원	-1인: 민3세 기준 ·민간: 월 44,122원 ·가정: 월 47,224원 -2인: 민3세 ·민간(77인기준): 월 36,857원 ·가정: 월 47,224원	-최대 72,400원 -77인 기준 월 37,449원	-77인 기준 월 37,449원	-80명 미만: 시설당 월 6,232,805원	-77인 기준 월 40,107원

77인 기준 관리운영비 단가를 보면, 동일 구성항목을 적용한 김현숙 외(2008)와 김혜금(2010)의 1안과 1.27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정도 차이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용비 및 수수료 등 4개 기본 항목에 차량운영비와 기타운영비를 추가한 김혜금(2010) 2안은 임양미 외(2010)의 단가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이미화 외(2012) 연구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4개 기본 항목에 기타운영비를 추가하여 단가를 산출하였는데도 김혜금(2010) 1안과 비교하여 단가가 낮았다. 이는 조사 대상이나 방법 상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4. 업무추진비

선행연구 중 일부는 업무추진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나 일부 연구는 기관운영비와 직책급, 회의비 등으로 구성된 재무회계 업무추진비 항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또는 전부를 별도의 구성 항목으로 두고 단가를 산출하였다.

김현숙 외(2008)는 보육료 산출 시 업무추진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서문희 외(2013a)는 업무추진비를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그러나 세부 항목인 기관운영비와 직책급, 회의비는 모두 포함하였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지원한 연구(한국종합경제연구원, 2013)도 표준보육료 산정 시 업무추진비를 반영하였는데, 앞의 연구와 다른 점은 회의비를 운영위원회 회의비와 학부모간담회비, 교사회비로 세분화하였다는 점이다.

산출기준을 보면, 김혜금(2010)은 보건복지부가 2009년에 제시한 어린이집 규모별 업무추진비를 활용하여 시설규모 및 영유아 연령별 단가를 산출하였다. 이와 달리, 임양미 외(2010)와 이미화 외(2012)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설규모 및 영유아 연령별로 단가를 산출하였다. 서문희 외(2013a)는 어린이집 운영상의 기준들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빈도나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반면, 한국종합경제연구원(2013)은 기본 폼셀을 활용하여 기관운영비는 인건비의 3%, 직책급은 기본급의 10%를 적용하고, 운영위원회와 학부모간담회비는 연간 실비용을 월평균 금액으로 나누어 단가를 산출하였으며, 교사 회의비는 월 실비를 적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업무추진비 단가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비교적 크다. 임양미 외(2010)가 산출한 가정어린이집 1안과 2안이 8천원대이고, 김혜금(2010)의 연구도 77인 기준 만3세가 월 7,143원으로 높은 편이다. 임양미 외(2010)의 민간어린이집 2안과 이미화 외(2012)의 연구가 3,090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I-2-5> 업무추진비 산출 기준

구분	김현숙·서병선 (2008)	김혜금(2010)	임양미 외(2010)	송명희 외(2012)	이미희 외(2012)	한국중합경제 연구원(2013)	서문희 외(2013a)
지원	보전복지부	한국어 린이집 총연합회	여성가족연구원	서울시 기장 어린이집연합회	육아정책연구소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육아정책연구소
대상	영유아	영유아	영유아	영유아	영유아	영유아	영유아
구성	-기관운영비,직책급, 회의비	-기관운영비,직책급, 회의비	-기관운영비에 포함	-기관운영비, 회의비	직책 급, 회의비	-기관운영비, 운무간담회비, 회의비	-기관운영비에 포함 -기관운영비, 직책 급, 교사 급, 운영원회와 모회의비
산출기준	-복지부(2009) 업무 추진비 기준액 대체 기준 비용 산출 기준	-1인·실태조사·반영 -2인·민간보육시설 구모별 월평균 비용 산출 1인당 단가	-1인·실태조사·반영 -2인·민간보육시설 구모별 월평균 비용 산출 1인당 단가	-실태조사와 선행연 구결과 -규모별 월평균 합산하여 산출	-기관운영 1인 부담액 -직책급 -기본급 10% -증정 기금 기부 금 간 설 비 용 월 액 교 사 회 의 비 설비	-기관운영 3% 직책급 -기본급 기부 금 10% 증정 기금 기부 금 간 설 비 용 월 액 교 사 회 의 비 설비	-기관운영 3% 직책급 -기본급 기부 금 10% 증정 기금 기부 금 간 설 비 용 월 액 교 사 회 의 비 설비
단가	-77일 기준 만 3세 월 7,143원	-77일 기준 만3세 기준 • 민간: 월 5,244원 • 가정: 월 8,423원 -2인: • 민3세 기준 • 민1: 월 3,090원 (77인기준) • 가정: 월 8,423원	-77일 기준 구분 불가	-77일 기준 월 3,090원	-77일 기준 월 3,090원	-80명 미만: 월 1,462,922원	분리 가능

바. 시설설치비

어린이집 시설 설치 및 개보수 관련 비용은 연구에 따라 시설설치비, 시설비, 재산조성비 등의 항목으로 보육비용 산정 시 포함되어 있다. 그 구성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김혜금, 2010, 임양미 외, 2010; 이미화 외, 2012; 한국종합경제연구원, 2013)가 공통적으로 자산취득비와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하고 있다. 김혜금(2010)은 여기에 시설비, 한국종합경제연구원(2013)은 시설개보수비를 추가하여 단가를 산출하였다. 김현숙 외(2008)와 서문희 외(2013a)는 건축비와 시설유지관리비 외에 놀이터설치비를 포함하여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였다.

산출기준은 단가 산출 시 포함된 항목에 따라 그 기준이나 방법이 상이하다. 건축비(김현숙 외, 2008, 서문희 외, 2013a)의 경우 영유아 1인당 면적인 4.29m²를 기준으로 평당 건축비나 m²당 정부 지원단가, 공공청사 표준건축비 등을 적용하여 건축비 단가를 산출하였고, 놀이터 설치비도 아동 1인당 면적기준을 적용하거나 평당 놀이터 설치비를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정하였다. 서문희 외(2013)는 시설유지관리비 산출 시 생애주기비용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하였다. 이 외에 김혜금(2010)은 시설비 항목 및 시설종류별로 설비품목별 단가와 소요물량,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시설규모 및 연령별로 시설비를 산출하였으며, 임양미 외(2010)와 이미화 외(2012)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아동 1인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여기에는 재무회계 보고 기준에 맞추어 5만원 이상의 비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설치비 단가를 보면, 김현숙 외(2008)는 건축비가 최소 월 9,000원~13,000원 정도, 놀이터설치비 2,700~3,700원, 시설유지관리비 3,000~5,000원이나 서문희 외(2013)는 건축비가 15,000원~25,000원, 놀이터설치비는 3,300~4,200원, 시설유지관리비는 3,746원으로 건축비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그 동안의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크지 않다.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재산조성비를 산출한 연구를 보면, 민간어린이집 77인 기준 단가를 산출한 임양미 외(2010)와 어린이집 77인 기준 단가를 산출한 이미화 외(2012)의 연구가 아동 1인당 월 5,747원으로 동일하다. 김혜금(2010)은 77인 만 3세 시설비가 총 68,446원으로 다른 연구들에 비해 단가가 높다.

<표 II-2-6> 시설설치비 산출 기준

구분	김현수·서병선 (2008)	김혜금(2010)	임양미 외(2010)	송명희 외(2012)	이미희 외(2012)	한국종합경제 연구원(2013)	서문희 외(2013a)
지원	보건복지부	한국어 린이집 충청협회	경기 여성가족연구원	서울시 기장 어린이집연합회	육아정책연구소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육아정책연구소
대상	영유아	영유아	영유아	영아	영유아	영유아	영유아
구성	-건축비, 건물수선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체산조성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체산조성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체산조성비: 자산취득비용, 시설장비유지비	-체산조성비: 시설개축비, 자산장비유지비	-시설유지관리비, 건축비, 놀이터설치비
산출기준	-건축비: 영유아 1인당 4.29m ² , 기준 250~30만원, 내구연 한 30년 적용, 소요품목과, 내구연 단기, 규모별 산출 -건물수선유지비: 조료연구원(2005) 대로 활용 설치비: 52% 비, 이상 설치비: 25% 기준으로 이동 1인당 전 축면적과 면적 산출	-시설비: 시설종류별 소요품목과, 내구연 단기, 규모별 산출 -보유설비: 조료연구원(2005) 대로 활용 설치비: 52% 비, 이상 설치비: 25% 기준으로 이동 1인당 전 축면적과 면적 산출	-실태조사 결과 반영 적용 -시설유형 연령별 복수안심체육시설 1인: 내구연 고려, 규모별 산출 2인: 민간(50인), 인상(10인) 가 산출	-실태조사 결과 반영 적용 -시설유형 연령별 복수안심체육시설 1인: 내구연 고려, 규모별 산출 2인: 민간(50인), 인상(10인) 가 산출	-실태조사 반영 -규모별 월평균 단기 산출	-실태조사 반영 -군집별 월평균 단기 산출 -시설장비유지비: 민간이전 공공청사 비단기 30% 기준비 -자산취득비용: 규모별 중기준비 -기준금액에 기준비 -기준으로 산출 -기타자산취득비: 내용 2년 이상, 내구연한 10년 평균 또는 30만원 이상 -시설유지관리비: 생활자산에 실비 적용 -법 적용	-건축비: 월평 -1인당 면적 4.29 -단기: 1인 국공립 어린이집, 건축비, 2인 공공청사 설비비 품비(50평): 50평 -비단기: 놀이터설치비, 3종 10% 비용 반영 -기준비 -기타자산취득비: 내용 2년 이상, 내구연한 10년 평균 또는 30만원 이상 -시설유지관리비: 생활자산에 실비 적용 -법 적용
단가	-77인 기준 -1인 14,700원 -2인: 21,700원	-77인 기준 -민3세: 68,446원	-77인 1인 2인 만3세 만간 3,342원 5,747원	64,900원~99,900원	-77인: 월 5,747원	-80명 미만: 2,837,038원	-77인 기준: 1인: 21,361원 2인: 33,817원

3. 시사점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의 의미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연구에 따라서 ‘표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기준을 연구자 임의로 설정하였다.

둘째, 보육비용 산출 방법으로는 규범적 기준 적용의 원칙,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가격 적용, 재무회계 자료 반영이라는 세 가지 방법의 사용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연구가 중점을 두는 방법은 있으되, 이러한 방법들을 연구자가 선별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셋째, 보육비용 산정에서 누가 산정의 주체인가에 따라서 기본적 입장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개인이 투자한 어린이집 운영자 단체가 중심이 될 경우에는 개인 투자, 대표자의 존재 등 현실적인 설치, 운영 상황을 대부분 반영하지만 공공기관이 산정 주체일 경우에는 어린이집 사회복지기관이라는 기본 입장에서 운영비 중심으로 산정하였다.

넷째, 보육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이다. 따라서 인력의 배치와 각 인력의 처우 기준이 인건비는 전체 보육비용에 많은 영향을 준다.

다섯째, 규범적 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는 보육비용 산정 기초자료로 재무회계 자료를 사용하는데, 계정과목과 보육비용 산정 항목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내용상으로 차이가 있어서 비용산정에 반영할 경우에 주의를 요한다. 특히 교재교구비는 5만원 미만의 교재교구 구입비이고 5만원 이상은 자산취득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서 보육활동에 소요되는 실제 교재교구비 중 상당수의 비품이 자산취득비로 분류된다. 또한 관리운영비의 경우도 차량비(목)이 포함되며 또한 수수료 수용비 공공요금(목)에는 차량 관련 비용이 들어 있다. 또한 기타 운영비(목)으로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용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도 포함된다. 기타 운영비는 차량비 할부금은 자산취득이고 건물임대료와 건물 용자금의 이자, 감가상각비 등을 사실 시설비로 분류하여야 할 내용이다.

III.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 및 운영 특성

제3장에서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어린이집 시설비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어린이집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는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시설비 특성을 파악하여 보육비용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기능보강비를 지원한다. 설치 시에도 시설설치 건축비와 설치 시 기자재비를 지원하며, 이후에 환경개선비와 장비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지원은 민간개인과 가정어린이집은 이러한 비용을 모두 개인이 책임진다. 본 장에서는 각각 지원의 기준 개요와 어린이집에서의 지출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은 설치 시에 중앙과 지방 정부가 건축비와 기자재비를 지원하며, 운영하는 동안에는 증개축비, 개보수비 및 장비비를 지원하며, 노후되었을 때에는 다시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하여 재건축한다. 그러므로 운영자는 시설 건축에 대한 부담은 지지 않는다. 지원의 기준 개요와 어린이집에서의 지출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기능보강비

1) 설치비

현재 공립어린이집 건축은 시·군·구 소관업무로 신규 건축 시에 건축비와 기자재구입비를 국고로 지원한다. 건축비 부담비율은 중앙, 시·도, 시·군·구가 50:25:25이다.⁹⁾ 건축비 지원 어린이집 규모는 개소당 330m²기준이며 최대 396m²

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2013년 1,201,300원/ m^2 으로 국고 최대 지원금은 2억 3,785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공립어린이집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보다 많다. 도시건축연구소(김상호, 2013)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사례 등 16개소 공립어린이집 건축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의 면적은 최소 279 m^2 에서 최대 1,786 m^2 이며 평균값은 684 m^2 이다. 정원 규모는 최소 45명에서 최대 200명이며 평균은 83.3명이다. 정원 1인당 면적분포는 최소 5.6 m^2 에서 최대 10.56 m^2 로 약 2배의 편차를 보였으며 평균은 8.1 m^2 로 나타났다. 정원 1인당 공사비는 최소 10,377,000원에서 최대 30,979,000원으로 차이는 약 2.99배에 이르며, 평균값은 17,226,000원으로 나타났다. 1 m^2 당 공사비는 평균 2,112천원으로 산출되었다.

일찍이 2006년에 95명 정원의 3층짜리 연건평 597 m^2 창원시 상남동어린이집의 총사업비는 9억 6,388만원으로 국·도비 지원금액 3억 324만원보다 무려 2배 이상인 6억 6,064만 3천원이 많이 소요되었다. 정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1천만 원이 넘는 수준이다(서문희 외, 2008).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는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등을 구매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 어린이집 지원금은 6,000만원이다. 이 비용은 차량구입비 및 시설 공사비로의 사용이 불가하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과거에 건축비를 지원하였으나 최근 수년간은 장애 아동 전담어린이집 이외에는 지원 사례가 없다.

2) 증개축비 등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같이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어린이집 중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에 환경개선비와 장비비를 지원한다.

가) 증개축비

동일 부지 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소당 132 m^2 까지 증·개축 면적에 따라 지원하고 지원단가는 751,440원/ m^2 이다.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축

규칙 제2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가능함.

의 경우 부분 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며, 지원대상 시설 설치 연도, 지원 횟수, 시설의 자체 환경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정원이 120명 이상인 경우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증축비 지원은 지양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표 III-1-1>은 404개의 조사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의 최근 3년간 증개축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규모를 나타낸다.¹⁰⁾ 조사 대상 중 19.3%만이 지난 3년간 증개축비를 지원 받았고, 이 중 2/3 이상이 1회 지원 받았으며 총 지원금 평균은 약 4,750만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표 III-1-1〉 증개축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단위: %(개소), 회, 만원

구분	지원 여부 지원 (수)	최근 3년간 지원 횟수					개보수비 규모		
		1회	2회	3회 이상	계(수)	평균	지원금	자부담	총액
전체	19.3 (404)	76.9	14.1	9.0	100.0(78)	1.4	4,755.9	278.3	5,037.9
지역규모									
대도시	20.2 (228)	71.7	19.6	8.7	100.0(46)	1.5	4,040.6	260.9	4,301.6
중소도시	16.8 (143)	79.2	8.3	12.5	100.0(24)	1.6	6,148.0	334.5	6,482.5
농어촌	24.2 (33)	100.0	-	-	100.0(8)	1.0	4,581.4	207.9	4,819.0
$\chi^2(dF)/F$	1.2(2)					0.9	0.3	0.3	0.4
정원									
49인 이하	16.0 (125)	70.0	20.0	10.0	100.0(20)	1.6	3,265.1	269.6	3,534.7
50-76인	25.4 (114)	75.9	13.8	10.3	100.0(29)	1.4	6,235.8	198.2	6,441.1
77-99인	16.1 (112)	77.8	11.1	11.1	100.0(18)	1.6	3,947.8	433.6	4,381.4
100인 이상	20.8 (53)	90.9	9.1	-	100.0(11)	1.1	5,048.6	248.6	5,297.2
$\chi^2(dF)/F$	4.5(3)					0.5	0.4	0.9	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나) 개보수비

또한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에 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 중 공기 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고,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어린이집에 다시 지원하지 않는다.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제 개·보수 금액을 지원하되 관계

10) 조사 대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연도는 <부표 III-1-1> 참조

공무원 확인 후 결정하는데, 지원단가는 개소당 3,000만원(국비, 지방비 포함)이다.

〈표 III-1-2〉 개보수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구분	지원 여부	최근 3년간 지원 횟수					개보수비 규모		
		지원 (수)	1회	2회	3회 이상	계(수)	평균	지원금	자부담
전체	63.9 (404)	67.8	20.2	12.0	100.0(258)	1.5	2,437.4	327.7	2,706.5
지역규모									
대도시	67.1 (228)	66.0	20.9	13.1	100.0(153)	1.6	2,305.1	312.4	2,521.3
중소도시	58.7 (143)	65.5	21.4	13.1	100.0(84)	1.6	2,361.8	336.8	2,690.7
농어촌	63.6 (33)	90.5	9.5	-	100.0(21)	1.1	3,680.9	401.9	4,082.9
$\chi^2(dF)/F$	2.7(2)					2.1	1.08	0.21	1.36
정원									
49인 이하	52.0 (125)	69.2	21.5	9.2	100.0(65)	1.4	2,139.0	291.1	2,434.7
50-76인	76.3 (114)	71.3	14.9	13.8	100.0(87)	1.5	2,248.6	330.0	2,582.5
77-99인	62.5 (112)	65.7	22.9	11.4	100.0(70)	1.6	3,104.1	351.3	3,234.8
100인 이상	67.9 (53)	61.1	25.0	13.9	100.0(36)	1.6	2,159.7	342.9	2,502.6
$\chi^2(dF)/F$	15.8(3)**			3.1(6)		0.3	0.84	0.12	0.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 $p < .01$

〈표 III-1-3〉 자부담에 의한 시설개보수 여부 및 부담금액

구분	개보수여부	개보수 시 부담금액								평균
		있음 (수)	250 미만	250~500 미만	500~750 미만	750~1,000 미만	1,000~1,500 미만	1,500~2,000 미만	2,000 이상	
전체	67.1 (404)	13.7	17.7	20.7	6.6	22.5	9.6	9.2	100.0(271)	881.1
지역규모										
대도시	72.4 (228)	12.1	16.4	18.8	6.1	23.0	13.9	9.7	100.0(165)	915.2
중소도시	62.9 (143)	14.4	20.0	26.7	6.7	22.2	2.2	7.8	100.0(90)	835.7
농어촌	48.5 (33)	25.0	18.8	6.3	12.5	18.8	6.3	12.5	100.0(16)	786.0
$\chi^2(dF)/F$	9.2(2)*				-					0.3
정원										
49인 이하	56.0 (125)	30.0	27.1	21.4	4.3	12.9	1.4	2.9	100.0(70)	509.1
50-76인	64.9 (114)	14.9	21.6	21.6	8.1	17.6	8.1	8.1	100.0(74)	729.9
77-99인	74.1 (112)	6.0	13.3	20.5	7.2	30.1	14.5	8.4	100.0(83)	1,054.6
100인 이상	83.0 (53)	0.0	4.5	18.2	6.8	31.8	15.9	22.7	100.0(44)	1,426.1
$\chi^2(dF)/F$	15.8(3)**			62.1(18)***						1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1-2>는 조사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의 최근 3년간 개보수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규모를 나타낸다. 조사 대상 중 개보수비 지원 비율은 64% 정도이고, 횟수는 2/3이 1회 지원받았으며, 58.7%가 1,000만원 미만이었다.

다음 <표 III-1-3>은 조사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의 최근 3년간 자부담으로 개보수를 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67.1%가 자부담으로 개보수 공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용 규모는 평균 880만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다) 장비비

장비비는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이다. 구입 품목은 안전용품(소화기, 가스누출탐지기, 화재탐지기 등), 급식용품(조리기구, 자외선 살균기 등), 사무용품(복사기, 컴퓨터, 프린트 등), 실내공기 질 개선물품(공기청정기 등), 기타(손씻기 시설 등) 등이다. 영유아의 안전과 급식 개선을 위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고, 지원단가는 중앙정부 기준은 개소당 200만원(국비, 지방비 포함)이다.

조사 대상 국공립어린이집 중 32% 정도는 최근 3년간 장비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액수는 평균 500만원 내외이었다(표 III-1-4 참조).

<표 III-1-4> 장비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단위: %(개소), 회, 만원

구분	지원 여부	최근 3년간 지원 횟수					개보수비 규모		
		지원 (수)	1회	2회	3회 이상	계(수)	평균	지원금	자부담
전체	32.2 (404)	77.7	12.3	10.0	100.0(130)	1.5	525.7	53.2	513.0
지역규모									
대도시	35.1 (228)	75.0	15.0	10.0	100.0(80)	1.5	402.4	54.6	457.7
중소도시	30.1 (143)	81.4	9.3	9.3	100.0(43)	1.4	683.2	51.9	533.5
농어촌	21.2 (33)	85.7	-	14.3	100.0(7)	1.4	972.9	44.6	1,017.4
$\chi^2(dF)/F$	3.0(2)					0.02	1.1	0.0	0.9
정원									
49인 이하	30.4 (125)	76.3	13.2	10.5	100.0(38)	1.5	558.5	22.1	581.2
50-76인	38.6 (114)	75.0	18.2	6.8	100.0(44)	1.4	743.1	84.3	632.7
77-99인	31.3 (112)	80.0	8.6	11.4	100.0(35)	1.4	356.3	64.0	420.3
100인 이상	24.5 (53)	84.6	-	15.4	100.0(13)	1.6	169.3	12.2	181.5
$\chi^2(dF)/F$	3.8(3)					0.2	1.0	2.8***	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 $p < .001$

나. 세출 특성

1) 적립금

국공립어린이집이 퇴직금 이외에 적립금이 있다는 비율은 10% 정도이었고. 적립형태는 저축성보험과 재무회계상 이월금이 각각 45% 내외로 다수이고 예·적금이 16% 정도이었다. 적립금 액수는 1천만원 미만이 2/3 정도이나 3천만원 이상도 10% 이상 되었다.

어린이집 특성별로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와 읍면 소재 어린이집에서 적립한다는 비율이 높고, 적립 시 저축성보험 비율이 높으며 액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5〉 퇴직금 이외 적립금

구분	적립 여부		적립 형태		적립금 규모			단위: %(개소)
	적립 (수)		저축성 보험	재무회계 상 이월금	예·적금	1천만원 미만	1~2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전체	10.6 (404)	48.8	44.2	16.3	65.1	23.3	11.6	(43)
지역규모								
대도시	7.0 (228)	31.3	43.8	25.0	75.0	18.8	6.3	(16)
중소도시	11.9 (143)	47.1	52.9	11.8	52.9	35.3	11.8	(17)
농어촌	30.3 (33)	80.0	30.0	10.0	70.0	10.0	20.0	(10)
$\chi^2(dF)$	16.8(2)***	29.8(2)***	3.6(2)	-	-	-	-	
정원								
49인 이하	8.0 (125)	40.0	70.0	-	80.0	20.0	-	(10)
50-76인	10.5 (114)	50.0	41.7	16.7	75.0	16.7	8.3	(12)
77-99인	12.5 (112)	50.0	42.9	21.4	57.1	21.4	21.4	(14)
100인 이상	13.2 (53)	57.1	14.3	28.6	42.9	42.9	14.3	(7)
$\chi^2(dF)$	1.7(3)	2.9(3)	1.3(3)	-	-	-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 p < .001

적립금은 어린이집 재무회계 계정과목 중 기타 운영비(목)로 세출하여야 하는데, 기타 운영비를 지출한다는 비율은 42.1%이고, 기타운영비 지출 규모는 보육료 수입의 평균 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읍·면에서 지출한다는 비율이 높으나 보육료 수입 대비 지출규모의 비율은 도시지역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III-1-6 참조).

이와 같은 기타 운영비 중에서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0.6% 정도가 된다(표 III-1-7 참조).

〈표 III-1-6〉 기타운영비 지출 여부 및 사용처별 지출 규모

구분	지출 여부		기타운영비 지출 규모					단위: %(개소)
	지출 (수)	5% 이하	6~10%	11~15%	16% 이상	계(수)	평균	
전체	42.1 (404)	48.2	24.7	18.2	8.8	100.0(170)	9.6	
지역규모								
대도시	35.1 (228)	47.5	30.0	13.8	8.8	100.0(80)	10.0	
중소도시	46.2 (143)	43.9	19.7	25.8	10.6	100.0(66)	9.8	
동어촌	72.7 (33)	62.5	20.8	12.5	4.2	100.0(24)	7.7	
$\chi^2(dF)/F$	7.2(6)		7.2(6)				0.4	
정원								
49인 이하	44.0 (125)	49.1	23.6	18.2	9.1	100.0(55)	9.7	
50-76인	43.0 (114)	46.9	28.6	16.3	8.2	100.0(49)	10.4	
77-99인	39.3 (112)	50.0	22.7	20.5	6.8	100.0(44)	8.9	
100인 이상	41.5 (53)	45.5	22.7	18.2	13.6	100.0(22)	8.9	
$\chi^2(dF)/F$	-		-				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표 III-1-7〉 기타운영비 지출 여부 및 사용처별 지출 규모

구분	지출 여부			지출 비중				단위: %(개소)
	적립금	차량할부금	기타 (수)	적립금	차량할부금	기타	계(수)	
전체	13.1	8.2	32.2 (404)	20.6	15.2	64.2	100.0(170)	
지역규모								
대도시	10.1	3.1	28.9 (228)	19.8	5.8	74.4	100.0(80)	
중소도시	15.4	11.9	36.4 (143)	18.7	20.3	61.0	100.0(66)	
동어촌	24.2	27.3	36.4 (33)	28.8	32.8	38.6	100.0(24)	
$\chi^2(dF)/F$	6.1(2) [*]	26.6(2) ^{***}	2.5(2)	0.7	7.6 ^{**}	6.7 ^{**}		
정원								
49인 이하	11.2	12.0	34.4 (125)	9.7	13.7	65.0	100.0(55)	
50-76인	13.2	10.5	31.6 (114)	10.4	20.4	60.0	100.0(49)	
77-99인	11.6	3.6	32.1 (112)	8.9	18.3	74.9	100.0(44)	
100인 이상	20.8	3.8	28.3 (53)	8.9	43.2	50.0	100.0(22)	
$\chi^2(dF)/F$	3.3(3)	7.8(3) [#]	0.7(3)	3.6 [*]	2.3 [#]	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p < .1$, * $p < .05$, ** $p < .01$, *** $p < .001$

2) 인건비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교사 초과근무 수당, 청소인력, 사무인력 배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교사가 초과근무를 하는지에 대하여 71.8%는 가끔, 22%는 자주 있다고 응답하였고, 시간외 수당은 43.3%는 법적 기준에 따라서 평일 임금의 1.5배를 차등 지원하고 12.1% 가량은 지급하지 않고, 그 이외는 법적 기준 미달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어촌 지역이 초과근무 비율은 높으나 법적 기준 수당 지급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원 규모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표 III-1-8 참조).

〈표 III-1-8〉 교사 초과근무 여부 및 시간외 수당 지급 특성

구분	초과근무 여부			시간외 수당 지급 형태					단위: %(개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수)	평일 임금의 1.5배 차등	일정 금액 일괄 지급	호봉 반영 차등 지급	수당 지급 미지급	어린이집 이정한 시간당 금액 정산지급	기타	계(수)
전체	71.8	22.0	(404)	43.3	25.9	12.4	12.1	6.1	0.3	100.0(379)
지역규모										
대도시	74.6	18.4	(228)	44.8	27.8	14.2	8.5	4.2	0.5	100.0(212)
중소도시	62.9	30.8	(143)	48.5	19.4	8.2	17.2	6.7	-	100.0(134)
농어촌	90.9	9.1	(33)	12.1	39.4	18.2	15.2	15.2	-	100.0(33)
$\chi^2(dF)/F$	14.6(4) ^{**}			-						
정원										
49인 이하	71.2	20.8	(125)	43.5	27.0	11.3	12.2	6.1	-	100.0(115)
50-76인	74.6	21.1	(114)	35.8	30.3	17.4	11.0	5.5	-	100.0(109)
77-99인	71.4	24.1	(112)	45.8	24.3	10.3	12.1	6.5	0.9	100.0(107)
100인 이상	67.9	22.6	(53)	54.2	16.7	8.3	14.6	6.3	-	100.0(48)
$\chi^2(dF)/F$	3.3(6)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 $p < .01$

조사된 국공립어린이집의 20%는 청소 전담인력을 두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도시 소재,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서 청소 전담인력을 둘 가능성이 높았다. 규모와 배치비율은 정적인 관계를 보여서, 49인 이하는 7.2%에 불과한 반면에 규모 100인 이상인 경우에 약 36%의 어린이집이 청소전담인력을 두고 있었다. 청

소 전담인력의 근무형태는 시간제가 대부분이고, 외부 위탁도 10% 정도 되었다. 시간제 근로시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18시간이다(표 III-1-9 참조).

〈표 III-1-9〉 청소 전담인력 배치 유무 및 고용 형태

구분	지원 여부		고용형태					주당 근무시간
	있음 (수)	종일제	시간제	외부위탁	기타	계(수)		
전체	20.0 (404)	18.5	61.7	9.9	9.9	100.0(81)	18.3	
지역규모								
대도시	27.2 (228)	21.0	59.7	11.3	8.1	100.0(62)	19.2	
중소도시	11.2 (143)	-	81.3	6.3	12.5	100.0(16)	13.8	
농어촌	9.1 (33)	66.7	-	-	33.3	100.0(3)	24.3	
X ² (dF)/F	16.7(2) ^{***}				-			1.6
정원								
49인 이하	7.2 (125)	33.3	33.3	11.1	22.2	100.0(9)	12.3	
50-76인	18.4 (114)	19.0	71.4	4.8	4.8	100.0(21)	17.7	
77-99인	28.6 (112)	15.6	62.5	9.4	12.5	100.0(32)	22.2	
100인 이상	35.8 (53)	15.8	63.2	15.8	5.3	100.0(19)	15.2	
X ² (dF)/F	26.4(3) ^{***}				-			2.3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p < .1, *** p < .001

〈표 III-1-10〉 사무업무 전담인력 배치 유무 및 고용 형태

구분	지원 여부		고용형태				주당 근무시간
	있음 (수)	종일제	시간제	기타	계(수)		
전체	13.1 (404)	67.9	22.6	9.4	100.0(53)	29.6	
지역규모							
대도시	14.5 (228)	72.7	27.3	-	100.0(33)	30.1	
중소도시	13.3 (143)	57.9	15.8	26.3	100.0(19)	28.3	
농어촌	3.0 (33)	100.0	-	-	100.0(1)	40.0	
X ² (dF)/F	3.3(2)						0.4
정원							
49인 이하	2.4 (125)	33.3	33.3	33.3	100.0(3)	23.0	
50-76인	7.9 (114)	77.8	22.2	-	100.0(9)	34.9	
77-99인	14.3 (112)	50.0	43.8	6.3	100.0(16)	30.2	
100인 이상	47.2 (53)	80.0	8.0	12.0	100.0(25)	28.1	
X ² (dF)/F	69.4(3) ^{***}						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 p < .001

한편 사무 전담인력은 조사된 국공립어린이집의 13% 정도가 배치한다고 응

답하였다. 이 역시 대도시 소재, 규모가 100인 이상으로 큰 어린이집에서 전담 인력을 둘 가능성이 높았다. 규모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절반 정도인 47%의 어린이집이 전담인력을 두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무 전담인력의 근무형태는 종일제가 2/3으로 청소인력보다 종일제가 많았다. 근무시간은 주당 평균 3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III-1-10 참조).

국공립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운영 여건이 좋기 때문에 교사 이외에 추가 지원인력을 배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어린이집에서 추가 인력배치 비율이 높은 것은 규모의 경계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통학차량

조사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은 약 30%가 차량을 운행한다고 응답하였다. 하루 평균 운행거리는 60km이고 소요되는 연료비는 평균 36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의 운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었다(표 III-1-11 참조).

〈표 III-1-11〉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여부 및 차량수, 운행거리, 연료비

구분	통학차량 운행여부		통학차량 수				1일 운행거리	월평균 연료비	
	운행 (수)	1대	2대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9.5 (404)	84.9	15.1		100.0(119)	1.2	60.5	358.8	
지역규모									
대도시	15.4 (228)	85.7	14.3		100.0(35)	1.1	48.5	312.9	
중소도시	37.8 (143)	83.3	14.8		100.0(54)	1.2	64.6	361.1	
농어촌	90.9 (33)	86.7	13.3		100.0(30)	1.1	67.6	408.6	
$\chi^2(dF)/F$	86.6(2) ^{***}			0.2		0.2	1.8	0.8	
정원									
49인 이하	28.8 (125)	94.4	5.6		100.0(36)	1.1	65.0	277.3	
50-76인	34.2 (114)	82.1	17.9		100.0(39)	1.2	65.6	407.3	
77-99인	25.0 (112)	89.3	10.7		100.0(28)	1.1	53.1	402.6	
100인 이상	30.2 (53)	62.5	31.3		100.0(16)	1.4	50.4	359.3	
$\chi^2(dF)/F$	2.4(3)			-		4.1 ^{**}	0.8	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인건비를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지원하므로 인건비 지원 시설로 분류된다. 대지는 법인이 제공하고 정부가 건축비 등 설치비를 지원하여 건립한다. 설치비 이외 기능보강비도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재건축 비용이다. 공립어린이집은 건물의 노후화가 심해지면 정부가 건축비를 마련하여 재건축할 수 있다. 재건축은 국가 책임이다. 그러나 법인 어린이집의 재건축은 법인 책임으로 법인이 스스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공립과 달리 어린이집 회계 운영에서 건물 재건축을 위한 적립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설치시나 운영시 지원 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지원과 관련 비용 세출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 기능보강비

1) 설치비

법인어린이집은 건축 시 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방식으로 건축비만 지원한다. 지원 기준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다.

본 조사 대상 404개소 어린이집이 신축 시에 제공한 자산은 평균 3억 6천만 원 규모로 조사되었다¹¹⁾. 이 비용은 지역 차이가 크다.¹²⁾

〈표 III-2-1〉 어린이집 신축 시 설립자 자산

구분	단위: %(명), 만원							
	1억 미만	1~1억 5천미만	1억5천~2 억미만	2~3억 미만	3~4억 미만	4~5억 미만	5억 이상	계(수) 평균
전체	9.8	20.0	17.4	20.0	13.2	14.0	5.5	100.0(235) 36,170.2
대도시	4.2	12.5	15.3	15.3	19.4	27.8	5.6	100.0(72) 62,208.3
중소도시	10.5	21.9	18.1	22.9	12.4	8.6	5.7	100.0(105) 26,933.3
농어촌	15.5	25.9	19.0	20.7	6.9	6.9	5.2	100.0(58) 20,569.0
X ² (dF)/F			27.0(12) ^{**}					4.1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11) 조사 대상 법인어린이집 설치연도는 〈부표 III-2-1〉 참조

12) 어린이집 규모별로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음.

〈표 III-2-2〉 어린이집 설치 시 융자 여부

단위: %(개소), 만원

구분	설치 시		현재	
	융자 여부 (수)	융자금 (수)	융자 여부 (수)	융자금 (수)
전체	13.6 (404)	16,549.5 (55)	5.4 (404)	15,981.0 (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본 조사 대상 404개소 법인어린이집이 신축 시에 융자를 받았다는 비율은 13.6%이었고 현재에도 융자금이 있는 경우는 5.4%였으며 금액은 평균 1억 5천만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2) 증개축비 등

가) 증개축비

〈표 III-2-3〉은 404개의 조사 대상 법인어린이집의 최근 3년간 증개축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규모를 나타낸다. 조사 대상 중 16.1%만이 지난 3년간 증개축비를 지원 받았고, 대부분이 1회 지원 받았으며 총 지원금 평균은 약 4,430만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지원 받았다는 비율은 3%p 정도 낮고 빈도도 1회 비율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높으나 지원금 수준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III-2-3〉 증개축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단위: %(개소), 회, 만원

구분	지원 여부 지원 (수)	최근 3년간 지원 횟수					개보수비 규모		
		1회	2회	3회 이상	계(수)	평균	지원금	자부담	총액
전체	16.1 (404)	93.8	3.1	3.1	100.0(65)	1.2	4,429.1	1,662.8	5,830.4
지역 규모									
대도시	10.4 (228)	92.3	7.7	-	100.0(13)	1.1	3,554.1	1,231.0	4,785.1
중소도시	18.5 (143)	94.3	2.9	2.9	100.0(35)	1.1	4,578.2	1,644.3	5,722.0
농어촌	18.9 (33)	94.1	-	5.9	100.0(17)	1.5	4,757.4	2,002.4	6,759.7
$\chi^2(dF)/F$	4.3(2)			-		0.9	0.4	0.3	0.4
정원									
49인 이하	18.0 (125)	92.0	-	8.0	100.0(25)	1.4	5,214.7	1,606.7	6,454.0
50-76인	14.2 (114)	94.7	5.3	-	100.0(19)	1.1	2,876.3	614.2	3,409.0
77-99인	17.0 (112)	88.9	11.1	-	100.0(9)	1.1	3,299.8	700.0	3,999.8
100인 이상	15.4 (53)	100.0	-	-	100.0(12)	1.0	5,904.9	4,283.5	9,823.5
$\chi^2(dF)/F$	0.8(3)			-		0.6	2.1	6.7	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나) 개보수비

<표 III-2-4>는 조사 대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최근 3년간 개보수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규모를 나타낸다. 조사 대상 중 개보수비 지원 비율은 55% 정도로 조사되었고, 횟수는 88.8%가 1회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지원금 평균은 약 3,300만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지원 받았다는 비율은 63.9%로 8.5%p 정도 낮고 빈도도 1회 비율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높으나 지원금 수준은 다소 높았다.

〈표 III-2-4〉 개보수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단위: %(개소), 회, 만원

구분	지원 여부	최근 3년간 지원 횟수					개보수비 규모		
		지원 (수)	1회	2회	3회	이상 계(수)	평균	지원금	자부담
전체	55.4 (404)	88.8	9.4	1.8	100.0(224)	1.1	3,366.6	1,132.8	4,229.0
지역규모									
대도시	50.4 (228)	87.3	12.7	-	100.0(63)	1.1	2,703.8	1,008.0	3,310.0
중소도시	56.6 (143)	86.9	10.3	2.8	100.0(107)	1.2	3,847.9	1,230.9	4,853.1
농어촌	60.0 (33)	94.4	3.7	1.9	100.0(54)	1.1	3,222.7	1,080.8	4,112.2
$\chi^2(dF)/F$	2.1(2)			-		0.9	2.0	0.3	2.2
정원									
49인 이하	51.1 (125)	90.1	5.6	4.2	100.0(71)	1.1	2,980.4	1,308.8	4,120.2
50-76인	55.2 (114)	87.8	10.8	1.4	100.0(74)	1.1	3,743.4	1,021.3	4,497.6
77-99인	66.0 (112)	82.9	17.1	-	100.0(35)	1.2	2,902.3	942.7	3,844.9
100인 이상	56.4 (53)	93.2	6.8	-	100.0(44)	1.1	3,741.7	1,202.4	4,281.3
$\chi^2(dF)/F$	3.5(3)			-		0.5	0.8	0.4	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다) 장비비

조사에서 조사 대상 법인어린이집 중 23% 정도는 최근 3년간 장비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액수는 평균 220만원으로 나타났다(표 III-2-5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장비비 지원과 비교하여 지원 받았다는 비율은 9%p 정도 낮고 지원 받았다는 빈도도 1회 비율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높고 지원금 수준도 국공립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II-2-5〉 장비비 지원 여부 및 지원 횟수, 지원금

구분	지원 여부 지원 (수)	최근 3년간 지원 횟수					개보수비 규모		
		1회	2회	3회 이상	계(수)	평균	지원금	자부담	총액
전체	23.3 (404)	87.2	2.1	10.6	100.0(94)	1.3	224.0	40.3	252.1
지역규모									
대도시	18.4 (228)	91.3	-	8.7	100.0(23)	1.3	250.5	48.2	298.4
중소도시	26.5 (143)	86.0	4.0	10.0	100.0(50)	1.3	227.7	40.3	245.1
농어촌	23.3 (33)	85.7	-	14.3	100.0(21)	1.3	181.3	29.7	211.6
$\chi^2(dF)/F$	2.7(2)			-		1.8	0.8	1.2	1.3
정원									
49인 이하	23.0 (125)	81.3	3.1	15.6	100.0(32)	1.3	256.1	32.2	249.1
50-76인	24.6 (114)	97.0	-	3.0	100.0(33)	1.1	202.4	44.2	248.0
77-99인	22.6 (112)	83.3	-	16.7	100.0(12)	1.4	273.0	50.8	322.0
100인 이상	21.8 (53)	82.4	5.9	11.8	100.0(17)	1.4	178.6	39.0	215.4
$\chi^2(dF)/F$	0.3(3)			-		0.6	1.1	0.9	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나. 세출 특성

1) 적립금

〈표 III-2-6〉은 법인어린이집의 기타운영비 지출 여부 및 사용처를 나타낸다.

〈표 III-2-6〉 기타운영비 지출 여부 및 사용처별 지출 규모

구분	지출 여부 지출 (수)	기타운영비 지출 규모						단위: %(개소)
		5% 이하	6~10%	11~15%	16% 이상	계(수)	평균	
전체	82.9 (404)	44.8	30.1	18.5	6.6	100.0(335)	7.6	
지역규모								
대도시	82.4 (228)	38.8	34.0	22.3	4.9	100.0(103)	7.2	
중소도시	83.6 (143)	46.8	29.1	16.5	7.6	100.0(158)	7.7	
농어촌	82.2 (33)	48.6	27.0	17.6	6.8	100.0(74)	8.0	
$\chi^2(dF)/F$	0.1(2)			3.9(6)			0.2	
정원								
49인 이하	82.0 (125)	43.9	29.8	19.3	7.0	100.0(114)	8.1	
50-76인	83.6 (114)	45.5	29.5	18.8	6.3	100.0(112)	7.9	
77-99인	84.9 (112)	42.2	35.6	13.3	8.9	100.0(45)	7.6	
100인 이상	82.1 (53)	46.9	28.1	20.3	4.7	100.0(64)	6.3	
$\chi^2(dF)/F$	0.3(3)			2.3(9)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대부분인 83%가 기타 운영여비를 지출하고 있고, 지출 시 규모는 보육료 수입의 평균 7.6%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기타운영비 지출은 어린이집 소재 지역이나 규모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한편 기타운영비 안에는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약 50%가 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적립금 비중은 기타 운영비의 43% 수준이다. 이 비율은 시설 규모가 커지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표 III-2-7 참조).

〈표 III-2-7〉 기타운영비 지출 여부 및 사용처별 지출 규모

단위: %(개소)

구분	지출 비율					기타운영비 구성					
	용차금	적립금	차량	할부금	기타	(수)	용차금	적립금	차량	할부금	기타
전체	7.7	49.8	34.4	48.5	(404)		2.5	42.5	23.8	31.2	100.0(335)
지역규모											
대도시	5.6	51.2	30.4	54.4	(125)		1.5	43.5	21.2	33.8	100.0(103)
중소도시	7.4	48.1	33.9	46.0	(189)		2.6	42.4	24.5	30.5	100.0(158)
농어촌	11.1	51.1	41.1	45.6	(90)		3.5	41.3	25.7	29.5	100.0(74)
$\chi^2(dF)/F$	2.3(2)	0.4(2)	2.7(2)	2.5(2)			0.6	0.1	0.4	0.3	
정원											
49인 이하	9.4	44.6	36.7	50.4	(139)		3.0	35.7	26.0	35.3	100.0(114)
50-76인	8.2	50.7	35.8	49.3	(134)		2.6	42.4	24.7	30.3	100.0(112)
77-99인	3.8	56.6	32.1	56.6	(53)		1.2	48.1	16.7	34.0	100.0(45)
100인 이상	6.4	52.6	29.5	38.5	(78)		2.2	50.9	23.1	23.8	100.0(64)
$\chi^2(dF)/F$	1.9(3)	2.8(3)	1.4(3)	4.8(3)			0.2	2.2	0.8	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2) 교사 지원

법인어린이집은 농어촌 등 취약 지역에 설치되었을 가능성(13)이 높아서, 교사 확보에 애로를 겪는 어린이집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사 대상 중 교사에게 어린이집 차원에서 별도의 수당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표 III-2-8>을 보면 전체적으로 52.5%의 어린이집에서 교사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비율은 지역보다는 어린이집 규모와 관련성이 높아서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서 지원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지원시 평균 액수는 월 12만원 정도로 파악되었다.

13) 본 조사 대상 법인어린이집도 46.8%가 농어촌 특례지역에 소재함

〈표 III-2-8〉 별도 교사 수당 지급 여부

단위: %(개소), 천원

구분	지급 비율 (수)	지급시 교사 수 (수)	지급 시 수당 금액						계(수)	평균
			5만원 미만	5~10만 원 미만	10~15만 원 미만	15~20만 원 미만	20만원 이상			
전체	52.5 (404)	6.3 (212)	20.8	34.0	23.6	9.4	12.3	100.0(212)	119.8	
지역규모										
대도시	55.2 (228)	7.4 (69)	21.7	34.8	18.8	11.6	13.0	100.0(69)	94.0	
중소도시	52.9 (143)	6.2 (100)	24.0	33.0	25.0	8.0	10.0	100.0(100)	133.0	
농어촌	47.8 (33)	4.9 (43)	11.6	34.9	27.9	9.3	16.3	100.0(43)	130.6	
X ² (dF)/F	1.2(2)	4.3*			5.0(8)					0.4
정원										
76인 이하	39.6 (125)	6.3 (55)	23.6	32.7	21.8	7.3	14.5	100.0(55)	93.8	
77-99인	56.7 (114)	5.2 (76)	18.4	34.2	25.0	6.6	15.8	100.0(76)	175.2	
100-125인	54.7 (112)	5.5 (29)	13.8	44.8	17.2	13.8	10.3	100.0(29)	90.2	
126인 이상	66.7 (53)	8.5 (52)	25.0	28.8	26.9	13.5	5.8	100.0(52)	83.8	
X ² (dF)/F	16.7(3)**	6.6***			9.1(12)					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2-9〉 교사 출퇴근 및 숙소 지원 여부

단위: %(개소), 천원

구분	지원 비율 (수)	지원 시 교사 수 (수)	지원 시 월 소요 비용						계(수)	평균
			5만원 미만	5~10만 원 미만	10~15만 원 미만	15~20만 원 미만	20만원 이상			
출퇴근 지원										
전체	7.4 (404)	4.9 (30)	30.0	36.7	20.0	6.7	6.7	100.0(30)	71.4	
대도시	4.8 (228)	5.5 (6)	50.0	33.3	16.7	-	-	100.0(6)	43.5	
중소도시	6.3 (143)	5.6 (12)	41.7	41.7	16.7	-	-	100.0(12)	45.8	
농어촌	13.3 (33)	4.0 (12)	8.3	33.3	25.0	16.7	16.7	100.0(12)	110.8	
X ² (dF)/F	6.1(2)*	0.5								4.9
숙소 제공										
전체	4.7 (404)	2.1 (19)	15.8	15.8	42.1	15.8	10.5	100.0(19)	96.7	
대도시	0.8 (228)	4.0 (1)	-	-	100.0	-	-	100.0(1)	100.0	
중소도시	2.6 (143)	2.0 (5)	20.0	20.0	40.0	-	20.0	100.0(5)	98.0	
농어촌	14.4 (33)	2.0 (13)	15.4	15.4	38.5	23.1	7.7	100.0(13)	95.8	
X ² (dF)/F	25.1(2)**	0.1			3.2(6)					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조사 대상 법인어린이집 중 교사에게 출퇴근을 시켜주는 비율은 7.4%이었다. 이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7만원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농어촌은 13%에 해당되었고 소요비용도 10만원이 넘은 것으로 타나났다(표 III-2-9 참조).

또한 법인어린이집 교사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비율은 4.7%이었다. 이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월 평균 97,000원 정도로 파악되었다. 교사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비율은 농어촌은 14% 이상으로 높았다. 소요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표 III-2-9 참조).

3) 통학차량

조사 대상 법인어린이집은 96%가 차량을 운행한다고 응답하였다. 하루 평균 운행거리는 90km이고 소요되는 연료비는 월 평균 56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규모가 큰 어린이집의 월평균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컸다(표 III-2-10 참조).

〈표 III-2-10〉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여부 및 차량수, 운행거리, 연료비

구분	통학차량 운행여부		통학차량 수					단위: %(개소), 대, km, 천원	
	운행 (수)	1대	2대	3대이상	계(수)	평균	1일 운행거리	월평균 연료비	
전체	96.0 (404)	38.7	50.8	10.6	100.0(388)	1.7	90.8	558.2	
지역규모									
대도시	90.4 (125)	45.1	46.0	8.8	100.0(113)	1.6	73.5	500.3	
중소도시	98.4 (189)	30.1	55.9	14.0	100.0(186)	1.9	96.3	569.8	
농어촌	98.9 (90)	48.3	46.1	5.6	100.0(89)	1.6	101.2	611.5	
$\chi^2(dF)/F$	-	13.2(4)*				6.7**	6.3***	2.2	
정원									
49인 이하	95.7 (139)	57.1	33.8	9.0	100.0(133)	1.5	90.0	500.6	
50-76인	95.5 (134)	37.5	57.8	4.7	100.0(128)	1.7	91.9	584.2	
77-99인	100.0 (53)	24.5	64.2	11.3	100.0(53)	1.9	90.4	572.0	
100인 이상	94.9 (78)	17.6	59.5	23.0	100.0(74)	2.5	90.8	605.4	
$\chi^2(dF)/F$	-	50.1(6)***				12.9***	0.0	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3. 민간·가정 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기본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환경개선비와 장비비가 투자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비 투자를 위하여 개인 설치·운영자가 자본을 스스로 조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만으로 투자한 경우와 타인자본이 투자된 경우가 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으로 어린이집 설치비는 자기자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절에서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실제 어린이집에서 설치비와 시설유지비 규모와 비용 조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 설치 방식

조사에 참여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설치년도는 34.1%가 5~10년 이전이고 26.5%가 5년 미만 전이며, 설치된 지 15년 이상 된 경우는 18% 정도이었다.¹⁴⁾

〈표 III-3-1〉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 방식

구분	어린이집 신축	일반건물 매입	어린이집 건물 매입	일반건물 임대	어린이집 건물 임대	단위: %(개소)	
						계(수)	100.0(543)
전체	30.4	33.1	21.0	7.9	7.6	100.0(543)	
정원							
20인이하	1.4	52.5	26.4	12.7	6.9	100.0(276)	
43~54인	32.6	20.9	9.3	7.0	30.2	100.0(43)	
68~85인	45.8	29.2	4.2	-	20.8	100.0(24)	
86~113인	68.2	9.1	18.2	4.5	-	100.0(66)	
120~159인	60.3	11.5	20.5	2.6	5.1	100.0(78)	
160인이상	78.6	7.1	14.3	-	-	100.0(56)	
지역규모							
서울	30.6	30.6	16.1	8.1	14.5	100.0(62)	
수도권	35.5	28.1	17.4	8.3	10.7	100.0(121)	
광역시	19.2	41.7	25.8	7.5	5.8	100.0(120)	
시도	32.9	33.5	19.9	8.7	5.0	100.0(161)	
읍면	34.2	29.1	25.3	6.3	5.1	100.0(79)	

주: 규모 구분은 조사에 응한 어린이집 규모 분포를 반영하여 구분한 것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14) <부표 III-3-1> 참조

본 조사에 응한 어린이집은 일반건물 매입 후 어린이집으로 개보수한 경우와 부지 매입 후 어린이집을 신축한 비율이 각각 33.1%, 30.4%이고, 21%는 어린이집 건물을 매입 후 개보수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건물 또는 어린이집 건물을 임대하여 개보수한 경우는 8% 정도이다. 주로 아파트나 주택에 설치되는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일반 건물 또는 어린이집 건물을 매입 후 개보수하는 경우가 각각 52.5%, 26.4%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 읍면지역은 부지 매입 후 어린이집을 신축한 경우가 다빈도이고, 광역시와 시도는 일반 건물 매입 후 어린이집으로 개보수한 경우가 많았다(표 III-3-1 참조).

나. 설치비 규모

1) 신축시 설치비

가) 총 설치비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비 규모를 신축과 매입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먼저 민간·가정 어린이집 신축시¹⁵⁾ 비용은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약 3억, 120인 이상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10~15억원 정도이었다.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면 20인 이하가 1천 6백만원이고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비용은 점차 줄어든다. 지역별로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해 보면, 서울이 1천 2백만원이고 수도권과 광역시는 1천만원, 시도와 읍면은 8백만원 수준이다(표 III-3-2 참조).

민간·가정 어린이집 매입 후 개보수하였다는 경우에 설치비는 20인 이하는 2억 2천만원 정도가 드는데 반해 43인 이상 113인 이하는 5~9억원 정도이고, 120인 이상은 10억이 넘는다. 아동 1인당으로는 20인 이하가 1천 2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120인 이상은 8~9백만원 정도로 낮아진다. 지역별 아동 1인당 설치비는 서울이 1천 7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도와 읍면지역이 9백만원으로 서울에 비해 53% 수준이다.

<표 III-3-3>은 어린이집 건물의 조사 시점에서의 매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인데, 매매가는 20인 이하는 2억 4천만원 정도이나 43~85인은 7~8억원 정도, 86인 이상은 10억원 내외이다. 새로이 마련하는 설치 비용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15)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건물을 지었다는 개념보다는 새롭게 마련하였다는 의미임.

〈표 III-3-2〉 신축 및 매입 시 설치비

단위: 천만원

구분	신축				매입 후 개보수			
	부지	건축비	총계	아동1인당	구입비	개보수비	총계	아동1인당
전체	46.2	61.2	105.6	0.9	35.7	8.5	42.6	1.1
정원								
20인이하	17.9	12.5	30.4	1.6	19.5	3.1	22.1	1.2
43~54인	31.7	35.8	62.6	1.3	45.8	12.1	55.5	1.1
68~85인	35.7	38.1	73.8	0.9	63.4	45.5	93.1	1.2
86~113인	40.2	45.3	83.5	0.9	79.8	17.8	96.6	1.0
120~159인	49.5	61.6	111.1	0.8	99.7	18.0	107.1	0.8
160인이상	59.0	96.9	152.8	0.8	132.5	44.3	160.7	0.9
X ² (dF)/F	3.3 ^{**}	24.0 ^{***}	15.2 ^{***}	4.6 ^{**}	87.3 ^{***}	24.3 ^{***}	74.9 ^{***}	2.7 [*]
지역 규모								
서울	61.9	42.6	100.8	1.2	61.5	11.8	70.4	1.7
수도권	56.1	71.0	122.5	1.0	60.3	14.9	72.7	1.3
광역시	41.1	55.1	96.3	1.0	32.3	7.6	38.7	1.1
시도	40.2	64.4	103.7	0.8	22.7	5.0	26.6	0.9
읍면	39.0	58.3	95.8	0.8	22.7	7.3	28.6	0.9
X ² (dF)/F	3.0 [*]	2.3	1.2	3.8 ^{**}	12.3 ^{***}	2.2	11.0 ^{***}	16.4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3-3〉 매매 시 매매가

단위: %(개소), 천만원

구분	1억5천 만원 미만	1.5~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3.2	38.9	13.9	9.0	16.9	8.1	100.0(409)	61.9
20인 이하	17.4	57.9	21.7	3.0	-	-	100.0(235)	23.7
43~54인	4.0	24.0	16.0	40.0	8.0	8.0	100.0(25)	70.4
68~85인	22.2	5.6	-	22.2	44.4	5.6	100.0(18)	81.3
86~113인	7.0	9.3	2.3	25.6	48.8	7.0	100.0(43)	99.6
120~159인	6.1	14.3	2.0	10.2	53.1	14.3	100.0(49)	116.9
160인이상	5.1	12.8	-	-	30.8	51.3	100.0(39)	170.0
X ² (dF)/F								87.6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이 관한 조사」 결과임.

*** p < .001

나) 신축·매입 어린이집 융자금

신축이나 매입 등 자가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시 부지 또는 건물을 담보로 은

행 등의 금융권이나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상 어린이집의 89.7%가 융자를 받았고, 융자금은 평균 3억 2천만 원이었으며, 이를 아동 1인당으로 산출하면 5백만원 정도이다. 정원별로 보면, 43~54인을 제외한 나머지 규모 모두 90% 내외가 융자를 받았고, 융자금액은 20인 이하 1억 1천만원에서 160인 이상은 7억으로 규모에 비례하여 늘어난다. 그러나 아동 1인당 부담액은 43~54인이 약 74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규모와 반비례하여 160인 이상이 되면 36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역별로는 아동 1인당 부담액은 서울이 740만원이고 시도와 읍·면이 4백만원대이다.

설치비 대비 융자비율은 전체 평균 48.0%이다. 이 비율은 어린이집 규모 및 지역에 상관없이 50% 내외 수준을 나타낸다. 현재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 시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 재산권 등에 대해 100분의 50 미만의 부채를 가질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맞춰서 융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I-3-4〉 설치 시 융자 여부 및 융자금 규모

단위: %(개소), 만원, 천만원

구분	융자 여부 받음 (수)	설치 융자금								현재 융자 금
		1억 미만	1~2억 미만	2~5억 미만	5~8억 미만	8억 이상	계(수)	평균	아동 1인당	
전체	89.7 (456)	23.1	33.0	18.6	14.1	11.2	100(403)	32.1	526.7	48.0
정원										
20인이하	89.0 (228)	39.9	55.2	3.4	.5	1.0	100(203)	11.5	601.0	46.8
43~54인	80.0 (25)	10.5	5.3	52.6	26.3	5.3	100(19)	36.9	738.1	54.3
68~85인	94.4 (18)	6.3	18.8	50.0	18.8	6.3	100(16)	33.4	415.6	41.4
86~113인	88.9 (63)	7.3	10.9	32.7	29.1	20.0	100(55)	50.0	515.4	48.7
120~159인	90.9 (66)	5.3	7.0	40.4	29.8	17.5	100(57)	52.0	383.5	50.1
160인이상	94.6 (56)	3.8	13.2	17.0	28.3	37.7	100(53)	70.3	359.7	49.5
X ² (dF)/F	4.7(5)			-				54.3***	5.2***	0.9
지역규모										
서울	93.5 (46)	0.0	36.6	26.8	17.1	19.5	100(41)	45.1	743.8	51.8
수도권	92.7 (96)	11.4	27.3	20.5	20.5	20.5	100(88)	43.4	535.6	47.8
광역시	91.2 (102)	28.0	39.8	12.9	12.9	6.5	100(93)	25.3	591.7	45.8
시도	86.6 (142)	32.5	31.7	20.0	10.8	5.0	100(120)	26.8	438.2	46.7
읍면	87.1 (70)	29.5	31.1	16.4	11.5	11.5	100(61)	28.3	442.0	51.4
X ² (dF)/F	3.8(4)		46.8(16)***					5.6***	5.0**	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또한 현재 남은 융자금은 평균 3억 2천만원으로 설치 시 받은 융자금과 같은 수준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융자금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기타운영비로 이자만 갚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3-4 참조).

현재 은행 등의 금융권 및 타인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이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4.6%이었다. 이를 구간별로 보면, 4~4.5%와 4.5~5%가 각각 30.6%, 2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5.5% 이상의 높은 이자를 갚고 있는 어린이집도 17%나 되었다. 어린이집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II-3-5).

〈표 III-3-5〉 융자금 이자율

구분						계(수)	단위: %(개소) 평균
	3.9%미만	4~4.5%미만	4.5~5%미만	5~5.5%미만	5.5%이상		
전체	14.6	30.6	21.8	16.0	17.0	100.0(376)	4.6
지역규모							
서울	15.4	41.0	17.9	12.8	12.8	100.0(39)	4.4
수도권	11.3	38.8	18.8	15.0	16.3	100.0(80)	4.6
광역시	13.8	28.7	19.5	26.4	11.5	100.0(87)	4.5
시도	16.4	23.6	27.3	12.7	20.0	100.0(110)	4.6
읍면	16.7	28.3	21.7	10.0	23.3	100.0(60)	4.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다) 매입 어린이집 권리금

어린이집을 매입한 경우 권리금을 부담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36.7%가 부담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집 규모별 차이는 일관성이 없으나,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는 기타 시도에서 비율이 높았다.

해당될 경우에 금액은 분포상으로는 70% 정도가 9천만원 미만이고 30% 정도가 9천만원 이상이다. 평균이 1억원이 넘는 것은 소수의 고액 부담 어린이집 때문이다. 이 금액을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220만원 수준이었고, 규모나 지역별 차이는 일관성은 보이지는 않았다(표 III-3-6 참조).

〈표 III-3-6〉 매입 시 권리금 부담 여부 및 규모

단위: %(개소), 천만원, 만원

구분	권리금 여부 부담 (수)	매입 시 권리금 규모							아동 1인당 평균
		3천 만월 미만	3~6천 만월 미만	6~9천 만월 미만	9천~ 1억2천 만월미만	1억 2천 만원미만	계(수)	평균	
전체	36.7 (169)	18.3	30.0	20.0	11.7	20.0	100.0(60)	10.2	219.3
정원									
20인 이하	38.0 (100)	26.3	36.8	26.3	10.5	-	100.0(38)	4.7	250.7
43~54인	20.0 (5)	-	-	100.0	-	-	100.0(1)	8.0	163.3
68~85	16.7 (6)	-	100.0	-	-	-	100.0(1)	3.0	38.5
86~113	50.0 (22)	10.0	20.0	10.0	10.0	50.0	100.0(10)	15.4	161.0
120~159	26.1 (23)	-	-	-	20.0	80.0	100.0(5)	29.0	213.7
160이상	38.5 (13)	-	20.0	-	20.0	60.0	100.0(5)	26.0	139.2
X ² (dF)/F								10.4***	1.5
지역규모									
서울	22.2 (18)	-	-	66.7	-	33.3	100.0(3)	14.0	182.6
수도권	27.3 (33)	12.5	25.0	-	12.5	50.0	100.0(8)	22.8	187.8
광역시	45.0 (40)	5.6	27.8	33.3	16.7	16.7	100.0(18)	8.8	273.9
시도	37.7 (53)	40.0	35.0	10.0	-	15.0	100.0(20)	6.0	159.7
읍면	44.0 (25)	9.1	36.4	18.2	27.3	9.1	100.0(11)	10.0	276.3
X ² (dF)/F								3.1*	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2) 임대 시 설치비

가) 총 비용

조사 대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는 소수이었는데, 이들의 임대 형태는 월세가 53.6%로 절반 이상이고, 다음으로 전월세가 34.5%, 전세가 11.9%이었다.¹⁶⁾

이들 임대어린이집의 총 부담금은 평균 1억 2천만원이고, 이를 아동 1인당 비용으로 산출하면 313만원 정도 된다. 임대 시 총 부담금은 어린이집 규모에 비례해서 늘어난다. 20인 이하는 6천만원 정도이나 68인 이상이 되면 2억원대로 늘어나고, 120인 이상 대형 어린이집은 3억 7천만원 정도를 부담한다. 아동 1인당 비용으로는 20인 이하는 평균 340만원이고 점차 줄어들어서 86~113인 규모

16) 총 84 사례임.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전·월세와 월세가 과반수 이상이고, 43~54인 중간 규모는 월세가 77.8%, 전·월세가 22.2%이었음.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과 수도권, 읍면지역은 월세가 많고, 광역시와 시도는 전·월세가 다수를 차지하였음.

는 250만원 정도가 된다. 지역별 아동 1인당 비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300만원 내외인데 반해 읍·면은 170만원 정도로 적었다.

〈표 III-3-7〉 임대 형태 및 임대 시 비용 부담

구분	임대 형태				임대 시 총 부담금								단위: %(개소), 천만원, 만원	
	전 세	전· 월세	월 세	계(수)	5천 만원 미만	5~10 천만원 미만	10~15 천만원 미만	15~20 천만원 미만	20천 만원 이상	계(수)	평균	아동 1인당 평균		
					만원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만원			1인당 평균	1인당 평균	
전체	11.9	34.5	53.6	100.0(84)	21.7	30.1	16.9	14.5	16.9	100.0(83)	12.3	312.7		
정원														
20인이하	20.0	40.0	40.0	100.0(50)	36.7	40.8	16.3	6.1	-	100.0(49)	6.4	340.2		
43~54인	-	22.2	77.8	100.0(18)	-	27.8	22.2	33.3	16.7	100.0(18)	13.9	277.5		
68~85	-	50.0	50.0	100.0(6)	-	-	33.3	33.3	33.3	100.0(6)	20.5	267.9		
86~113	-	66.7	33.3	100.0(3)	-	-	-	33.3	66.7	100.0(3)	25.2	250.1		
120~159	-	-	100.0	100.0(7)	-	-	-	-	100.0	100.0(7)	36.8	276.0		
160이상	-	-	-	-	-	-	-	-	-	-	-	-		
X ² (dF)/F	-										58.9***	0.7		
지역규모														
서울	-	42.9	57.1	100.0(14)	-	20.0	13.3	26.7	40.0	100.0(15)	19.5	374.2		
수도권	-	16.7	83.3	100.0(24)	12.0	28.0	12.0	20.0	28.0	100.0(25)	16.3	295.7		
광역시	18.8	50.0	31.3	100.0(16)	26.7	26.7	33.3	6.7	6.7	100.0(15)	9.5	339.7		
시도	28.6	42.9	28.6	100.0(21)	25.0	45.0	20.0	10.0	-	100.0(20)	7.6	324.2		
읍면	11.1	22.2	66.7	100.0(9)	75.0	25.0	-	-	100.0(8)	3.1	171.4			
X ² (dF)/F	-										7.1***	2.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p < .001

나) 설치시 항목별 비용

〈표 III-3-8〉은 임대 시 권리금 및 보증금, 개보수비 부담 여부 및 부담 시 그 규모를 제시한 것이다. 임대시 보증금과 개보수비를 부담했다는 비율이 각각 88.1%, 83.3%로 높고, 권리금을 주었다는 비율은 45.2% 정도이다. 규모와 지역 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비용 부담 시 그 금액을 보면, 권리금이 평균 1억 5,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보증금과 개보수비는 5천만원 정도이다. 정원별로 보면, 권리금은 54인 이하의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 1억 6천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보증금과 개보수비는 120~159인이 1억 7~8천만원 정도로 큰 비용을 내고 있다.

〈표 III-3-8〉 임대 시 비용 부담 여부 및 규모

구분	비용 부담 여부				부담 시 금액		
	권리금	보증금	개보수비	(수)	권리금	보증금	개보수비
전체	45.2	88.1	83.3	(84)	153.3	5.4	5.4
정원							
20인 이하	44.0	86.0	78.0	(50)	169.1	3.5	2.2
43~54인	44.4	88.9	94.4	(18)	164.0	4.5	6.1
68~85인	50.0	100.0	100.0	(6)	93.3	7.5	9.5
86~113인	-	100.0	100.0	(3)	-	9.5	15.7
120~159인	71.4	85.7	71.4	(7)	99.5	18.2	16.9
160이상	-	-	-	-	-	-	-
X ² (dF)/F	-	-	-	-	0.9	10.6***	15.3***
지역규모							
서울	35.7	92.9	100.0	(14)	152.0	6.7	10.0
수도권	62.5	100.0	87.5	(24)	131.6	8.1	5.0
광역시	31.3	81.3	87.5	(16)	289.4	3.2	5.3
시도	52.4	85.7	66.7	(21)	144.5	3.6	3.5
읍면	22.2	66.7	77.8	(9)	38.5	2.0	1.7
X ² (dF)/F	-	-	-	-	3.2*	2.5	2.8*

주: 권리금, 보증금, 개보수비 사례수는 일정하지 않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다) 현재 보증금 또는 월세

전월세 임대 시 보증금 또는 월세 규모를 살펴보았다. 보증금은 평균 5천 8백만원이고, 1~3천만원이 3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6천만원 26.7%, 나머지는 10% 내외 정도이다. 아동 1인당 부담액은 평균 153만원 정도이다.

어린이집 규모가 클수록 보증금도 정비례하여 늘어난다. 20인 이하는 3천 5백만원이나 160인 이상이 되면 3억으로 늘어난다.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 데, 서울과 수도권은 7천 6백만원 정도로 많다. 아동 1인당 부담액은 정원 및 지역에 따라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II-3-9 참조).

임대 시 월세는 월평균 2백만원으로 구간별로는 월 50~100만원 미만이 40.3%로 절반 가까이 되고, 100~200만원이 24.7%, 300만원 이상이 14.3%, 5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이 각각 10.4%이다(표 III-3-10 참조).

〈표 III-3-9〉 전월세 임대 시 보증금 규모

구분	단위: %(개소), 천만원, 만원						
	1천만원 미만	1천~3천만 원 미만	3천~6천만 원 미만	6천~9천만 원 미만	9천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8.0	36.0	26.7	10.7	18.7	100.0(75)	5.8
정원							153.3
20인 이하	11.6	44.2	27.9	4.7	11.6	100.0(43)	3.5
43~54인	5.9	29.4	29.4	23.5	11.8	100.0(17)	5.2
68~85인	-	33.3	33.3	16.7	16.7	100.0(6)	7.5
86~113인	-	-	-	50.0	50.0	100.0(2)	12.8
120~159인	-	16.7	16.7	-	66.7	100.0(6)	15.3
160인 이상	-	-	-	-	100.0	100.0(1)	30.0
X ² (dF)/F							10.0***
지역규모							1.1
서울	-	14.3	35.7	21.4	28.6	100.0(14)	7.6
수도권	4.2	37.5	20.8	8.3	29.2	100.0(24)	7.6
광역시	7.7	38.5	38.5	15.4	-	100.0(13)	3.2
시도	11.8	41.2	23.5	5.9	17.6	100.0(17)	5.3
읍면	28.6	57.1	14.3	-	-	100.0(7)	1.8
X ² (dF)/F							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II-3-10〉 전월세 임대 시 월세 규모

구분	단위: %(개소), 천만원, 만원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0.4	40.3	24.7	10.4	14.3	100.0(77)	0.2
정원							3.9
20인이하	19.0	61.9	16.7	-	2.4	100.0(42)	0.1
43~54인	-	26.3	42.1	15.8	15.8	100.0(19)	0.2
68~85인	-	-	33.3	50.0	16.7	100.0(6)	0.2
86~113인	-	-	-	50.0	50.0	100.0(2)	0.3
120~159인	-	-	14.3	14.3	71.4	100.0(7)	0.5
160인 이상	-	-	100.0	-	-	100.0(1)	0.2
X ² (dF)/F							14.7***
지역규모							0.4
서울	-	6.7	46.7	26.7	20.0	100.0(15)	0.2
수도권	8.3	29.2	29.2	8.3	25.0	100.0(24)	0.2
광역시	-	69.2	7.7	15.4	7.7	100.0(13)	0.1
시도	11.8	70.6	17.6	-	-	100.0(17)	0.1
읍면	50.0	25.0	12.5	-	12.5	100.0(8)	0.1
X ² (dF)/F							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정원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20인 이하는 월 100만원 정도이나 월 세가 점차적으로 늘어 120~159인은 월 500만원을 내고 있다. 이 비용을 아동 1 인당으로 환산하면 월 3만 9천원으로 정원에 따라 차이가 없으나 20인 이하가 4만 5천원이고 160인 이상은 7천원 정도로 낮아진다(표 III-3-10 참조).

3) 설치비 지역 차이

어린이집 소재 지역의 평당 공시지사는 평균 500만원이다. 지역별로 서울이 1 천 1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수도권과 광역시는 5~6백만원, 시도와 읍면은 3~4백 만원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표 III-3-11 참조).

〈표 III-3-11〉 평당 공시 지가

구분	단위: %(개소), 천만원							평균
	100만원 미만	100~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미만	500~750만 원 미만	750~1000만 원 미만	1000만원 이상	계(수)	
전체	14.7	20.4	23.2	17.2	11.2	13.3	100.0(285)	0.5
서울	-	3.3	16.7	6.7	6.7	66.7	100.0(30)	1.1
수도권	5.6	22.5	18.3	12.7	23.9	16.9	100.0(71)	0.6
광역시	12.5	8.9	30.4	32.1	12.5	3.6	100.0(56)	0.5
시도	17.3	30.9	27.2	17.3	4.9	2.5	100.0(81)	0.3
읍면	36.2	23.4	19.1	12.8	4.3	4.3	100.0(47)	0.4
$\chi^2(dF)/F$								1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p < .001$

다. 건물 관련 세출 규모

1) 기타운영비

어린이집 회계운영 시 건물 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용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을 기타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료 수입의 15%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체 지출 중에서 기타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0.3%이었다. 구간별로는 5~10% 사이가 41.2%, 10~15%가 30.4%이며, 15% 이상 지출한다는 어린이집도 6.8%나 되었다(표 III-3-12 참조).

〈표 III-3-12〉 총 세출 대비 기타운영비 비율

구분						단위: %(개소)	
	5% 이하	5.01~10% 이하	10.01~15% 이하	15.01%이상	계(수)	평균	
전체	21.5	41.2	30.4	6.8	100.0(483)	10.3	
정원							
20인이하	26.3	47.0	22.8	3.9	100.0(232)	9.4	
43~54인	17.9	30.8	35.9	15.4	100.0(39)	11.3	
68~85인	4.2	29.2	50.0	16.7	100.0(24)	14.1	
86~113인	21.0	30.6	41.9	6.5	100.0(62)	10.6	
120~159인	20.3	41.9	29.7	8.1	100.0(74)	10.4	
160인이상	13.5	40.4	38.5	7.7	100.0(52)	11.8	
X ² (dF)/F		35.5(15)**				3.7**	
지역규모							
서울	13.3	46.7	31.7	8.3	100.0(60)	11.4	
수도권	16.5	26.6	45.0	11.9	100.0(109)	12.1	
광역시	18.1	55.2	21.9	4.8	100.0(105)	9.4	
시도	30.2	43.2	23.0	3.6	100.0(139)	8.9	
읍면	24.3	34.3	34.3	7.1	100.0(70)	11.1	
X ² (dF)/F		41.0(12)***				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로 중복응답 결과임.

** $p < .01$, *** $p < .001$

기타운영비 비율은 정원 및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0인 이하는 평균 9.4%인데 반해, 그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은 10~14%대이다. 구간별로 보면, 과반수 이상이 5~15%를 지출하나 43~54인, 68~113인 어린이집의 15% 이상이 전체 지출 중 15% 이상을 기타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지역 중에서도 광역시와 시·도는 평균 10% 미만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11~12% 정도이었다. 구간별로는 시·도나 읍·면지역은 5% 이하를 지출한다는 비율이 20~3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II-3-12 참조).

〈표 III-3-13〉은 어린이집 설치유형별 기타운영비 사용처 비율을 나타낸다. 어린이집을 매입한 경우, 기타운영비 중 53.2%를 용자금 이자로 내고, 15.5%는 적립금, 9.9%는 차량할부금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어린이집 규모별 차이는 없다.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료 58.7%, 적립금 11.2%, 차량할부금 5% 정도를 지출하였다. 정원에 따른 차이는 사례수가 작아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표 III-3-13〉 기타운영비 사용처별 비율

단위: %(개소)

구분	매입				임대			
	융자금 이자	적립금	차량 할부금	기타 (수)	임대료	적립금	차량 할부금	기타 (수)
전체	53.2	15.5	9.9	7.6 (459)	58.7	11.2	5.0	7.2 (84)
20인이하	51.7	13.8	9.6	7.5 (222)	50.4	15.6	4.9	6.4 (54)
43~54인	38.9	16.1	7.8	11.2 (27)	71.4	5.2	7.9	5.4 (16)
68~85인	54.1	21.6	7.6	7.8 (19)	97.6	2.4	-	- (5)
86~113인	54.4	14.4	14.0	5.7 (63)	40.0	-	3.3	50.0 (3)
120~159인	54.1	19.2	10.5	9.5 (72)	75.7	0.8	3.5	3.3 (6)
160인이상	63.3	16.4	7.7	5.4 (56)				
X ² (dF)	1.5	0.7	0.7	0.6	2.7*	1.2	0.4	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2) 개보수비

<표 III-3-14>는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 개보수를 한 적이 있는지, 개보수 시 그 비용을 조사한 것이다.

응답자의 80.3%가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비용은 개소당 평균 3천만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구간별로 보면, 1~2천만원 미만과 500만원 미만이 각각 1/5 정도를 차지하고, 500~1천만원 미만과 2~3천만원, 5천만원 이상이 16% 내외이다. 정원별로도 시설 개보수 비용 지출 비율 차이는 없으나, 지출 시 비용은 규모가 커질수록 그 비용도 증가하여 20인 이하 900만원에서 160인 이상 8천 6백만원에 이른다. 지역별로도 지출했다는 비율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개보수 시 아동 1인당 비용은 수도권이 4천 1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광역시가 3천만원 정도이며, 읍면이 1천 9백만원으로 가장 적다(표 III-3-14 참조).

시설 개보수 시 비용 조달방법을 조사한 결과, 운영자와 적립금이 각각 35.7%, 34.5%로 높고, 개인이 31.4%, 금융권이 23.7%로 가장 저조하다. 정원별로 보면, 160인 이상 규모가 큰 어린이집 절반 이상은 운영자가 직접 조달하고, 금융권은 68~86인 미만의 중간 규모 어린이집이 주로 이용하고, 20인 이하는 개인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적립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수도권은 개인, 나머지 지역은 운영자나 적립금을 주로 활용하였다(표 III-3-15 참조).

〈표 III-3-14〉 어린이집 개보수 여부 및 비용

단위: %(개소), 천만원

구분	개보수 여부 지출 (수)	개보수비용그룹								계(수)	평균
		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2천만원 미만	2~3천만원 미만	3~4천만원 미만	4~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전체	80.3 (552)	19.4	16.3	21.0	15.6	8.5	3.1	16.1	100.0(423)	3.1	
정원											
20인이하	78.1 (279)	34.1	22.4	25.9	13.2	3.4	-	1.0	100.0(205)	0.9	
43~54인	77.3 (44)	14.7	20.6	23.5	17.6	11.8	5.9	5.9	100.0(34)	1.8	
68~85인	80.8 (26)	4.8	4.8	9.5	28.6	14.3	4.8	33.3	100.0(21)	3.6	
86~113인	85.5 (69)	3.5	15.8	15.8	19.3	12.3	5.3	28.1	100.0(57)	4.8	
120~159인	84.6 (78)	6.5	8.1	14.5	16.1	21.0	4.8	29.0	100.0(62)	5.1	
160인이상	80.4 (56)	-	2.3	18.2	13.6	4.5	9.1	52.3	100.0(44)	8.6	
X ² (dF)/F	3.2(5)				-					17.9***	
지역규모											
서울	84.4 (64)	7.7	23.1	23.1	13.5	9.6	3.8	19.2	100.0(52)	3.1	
수도권	86.8 (121)	8.8	12.7	20.6	19.6	9.8	6.9	21.6	100.0(102)	4.1	
광역시	76.9 (121)	26.7	17.4	23.3	9.3	3.5	1.2	18.6	100.0(86)	3.0	
시도	76.5 (166)	24.4	16.3	20.3	16.3	9.8	0.8	12.2	100.0(123)	2.8	
읍면	80.0 (80)	26.7	15.0	18.3	18.3	10.0	3.3	8.3	100.0(60)	1.9	
X ² (dF)/F	6.3(4)				38.9(24)*					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표 III-3-15〉 개보수비 조달 방법 및 회계 상의 세출 반영 여부

단위: %(개소)

구분	개보수비 조달 방법				세출 반영 여부				계(수)
	운영자	적립금	금융권	개인	(수)	모두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및 운영자 처리	
전체	35.7	34.5	23.7	31.4	(443)	43.2	39.9	17.0	100.0(424)
정원									
20인이하	32.1	35.8	15.6	39.4	(218)	43.1	41.1	15.8	100.0(209)
43~54인	41.2	29.4	14.7	26.5	(34)	46.9	31.3	21.9	100.0(32)
68~85인	23.8	23.8	47.6	23.8	(21)	50.0	40.0	10.0	100.0(20)
86~113인	37.3	35.6	30.5	22.0	(59)	38.6	40.4	21.1	100.0(57)
120~159인	36.4	39.4	31.8	24.2	(66)	49.2	36.5	14.3	100.0(63)
160인이상	51.1	28.9	37.8	22.2	(45)	34.9	44.2	20.9	100.0(43)
X ² (dF)	7.7(5)	3.0(5)	24.9(5)***	13.2(4)*		5.3(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시설 개보수비를 어린이집 회계의 세출에 반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43.2%

가 모두 반영하고, 39.9%는 일부만 반영하고 있었고 반영하지 않거나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어린이집이 17%나 되었다. 정원에 따라서는 86~113인과 160인 이상 어린이집은 일부만 반영한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다(표 III-3-15 참조).

라. 차입금

가) 단기 차입

보육료 등의 수납이 늦어져서 잔액이 부족하여 집행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적으로 차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도 차입하고 있다.

2013년 한해 동안 단기 차입이 있었다는 어린이집은 66.8%이고, 차입금액은 연 평균 1천 4백만원 정도이다.

〈표 III-3-16〉 단기 차입 여부 및 차입 금액

단위: %(개소), 천만원

구분	차입여부 있음 (수)	단기차입금액								계(수)	평균
		250만원 미만	250~500만원 미만	500~750만원 미만	750~1,000만원 미만	750~1,000만원 미만	1,000~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전체	66.8 (552)	12.7	15.9	21.6	8.1	21.3	10.7	9.8	100.0(347)	1.4	
정원											
20인이하	76.3 (279)	16.8	21.8	27.9	7.1	18.8	6.1	1.5	100.0(197)	0.8	
43~54인	59.1 (44)	8.0	16.0	32.0	12.0	16.0	8.0	8.0	100.0(25)	1.1	
68~85인	50.0 (26)	-	8.3	16.7	16.7	33.3	0.0	25.0	100.0(12)	1.7	
86~113인	68.1 (69)	4.3	8.7	10.9	8.7	32.6	23.9	10.9	100.0(46)	1.7	
120~159인	48.7 (78)	13.9	5.6	8.3	8.3	22.2	19.4	22.2	100.0(36)	2.3	
160인이상	57.1 (56)	6.5	3.2	6.5	6.5	19.4	16.1	41.9	100.0(31)	3.8	
X2(dF)/F	-				-					0.5	
지역규모											
서울	42.2 (64)	26.1	8.7	17.4	4.3	26.1	4.3	13.0	100.0(23)	1.4	
수도권	69.4 (121)	8.4	7.2	16.9	7.2	33.7	15.7	10.8	100.0(83)	1.6	
광역시	68.6 (121)	14.5	14.5	27.6	7.9	21.1	7.9	6.6	100.0(76)	1.1	
시도	73.5 (166)	13.7	22.2	20.5	9.4	13.7	9.4	11.1	100.0(117)	1.3	
읍면	66.3 (80)	8.3	20.8	25.0	8.3	16.7	12.5	8.3	100.0(48)	1.4	
X2(dF)/F	-				-				15.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p < .001$

정원규모별로 보면, 20인 이하가 76.3%로 많고, 그 이상 규모도 50% 내외로 단기 차입이 보편적임을 나타냈다. 차입금액은 20인 이하는 800만원 정도이나 규모가 늘어날수록 그 규모도 증가하여 160인 이상은 4천만원 가까이 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 70% 내외로 높은 편이고, 서울은 42.2%로 절반에 못 미친다. 그러나 차입금액은 수도권이 1천 6백만원이고 광역시가 1천 1백만원으로 유의미하게 적다(표 III-3-16 참조).

<표 III-3-17>은 단기 차입 시 회계처리 방법과 차입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과반수인 79.9%가 단기 차입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23.0%는 원장 급여를 반납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13.0%는 전입금으로 처리하였다.

〈표 III-3-17〉 단기차입 시 회계처리 방법 및 차입 이유

단위: %(개소)

구분	회계처리 방법				차입 이유					(수)
	단기 차입	원장 급여 반납	전입금 처리	기타	개보수	퇴직금	급여	식자재	공공요금	
전체	79.9	23.0	13.0	8.9	42.3	11.9	58.5	17.3	20.9	33.6 (369)
정원										
20인이하	83.6	24.4	13.1	6.6	37.6	11.3	70.0	20.2	25.4	28.6 (213)
43~54인	65.4	26.9	15.4	7.7	34.6	3.8	50.0	11.5	3.8	23.1 (26)
68~85인	92.3	15.4	15.4	7.7	69.2	15.4	38.5	30.8	7.7	15.4 (13)
86~113인	72.3	23.4	10.6	14.9	44.7	8.5	42.6	14.9	17.0	53.2 (47)
120~159인	81.6	10.5	7.9	7.9	50.0	15.8	34.2	7.9	7.9	44.7 (38)
160인이상	71.9	28.1	18.8	18.8	56.3	21.9	50.0	12.5	31.3	40.6 (32)
X ² (df)	9.4(5)	4.7(5)	-	-	10.0(5)	-	29.6(5) ^{***}	6.5(5)	14.9(5) [*]	16.5(5) ^{**}
지역규모										
서울	70.4	14.8	14.8	14.8	37.0	7.4	44.4	14.8	11.1	22.2 (27)
수도권	84.5	20.2	8.3	6.0	46.4	19.0	54.8	9.5	13.1	34.5 (84)
광역시	80.7	26.5	13.3	12.0	38.6	9.6	55.4	22.9	19.3	38.6 (83)
시도	81.1	21.3	13.9	9.0	44.3	10.7	57.4	16.4	23.0	33.6 (122)
읍면	73.6	30.2	17.0	5.7	39.6	9.4	79.2	24.5	35.8	30.2 (53)
X ² (df)	4.1(4)	3.7(4)	2.5(4)	-	1.7(4)	5.5(4)	12.5(4) [*]	7.5(4)	12.3(4) [*]	2.8(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단기 차입하는 이유는 교직원 급여가 58.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개보수비도 42.3%로 높다. 공공요금도 20.9%로 높고, 퇴직금이나 식자재 구입을 위한 차입은 10%대 정도이다. 소규모 20인 이하는 교직원 급여 때문에 차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규모가 커질수록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차입한다는 비율이 높아진다.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일수록 교직원 급여나 공공요금, 식자재 등의 비용 지출로 인하여 차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 장기 차입

현재 1년 이상의 장기 차입은 금지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재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암묵적으로 장기 차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장기 차입을 한 어린이집은 조사 대상의 37%로 1/3이 넘고, 차입 시 금액은 평균 5천 6백만원 정도이었다. 차입 비율은 정원별로는 160인 이상 대규모 어린이집이 50.9%, 86~113인이 41.8%로 비교적 높았다. 차입 금액은 규모별로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수도권이 47.9%로 비교적 높았고, 차입 금액은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9천 5백만원, 7천 1백만원, 광역시가 3천 4백만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표 III-3-18〉 장기차입 여부 및 차입 금액

단위: %(개소), 천만원

구분	장기 차입 비율 (%)	장기 차입금액						
		1천 만원 미만	1~3천 만원 미만	3~5천 만원 미만	5~7천 만원 미만	7~9천 만원 미만	9천만 원이상	계(%)
전체	37.0 (543)	22.1	35.8	12.1	11.1	2.1	16.8	100.0(190) 5.6
정원								
20인이하	35.9 (273)	32.6	48.9	9.8	4.3	-	4.3	100.0(92) 2.0
43~54인	31.8 (44)	23.1	38.5	15.4	-	7.7	15.4	100.0(13) 4.0
68~85인	34.6 (26)	-	33.3	-	22.2	-	44.4	100.0(9) 19.4
86~113인	41.8 (67)	7.1	21.4	21.4	25.0	-	25.0	100.0(28) 9.2
120~159인	30.8 (78)	31.8	22.7	13.6	9.1	4.5	18.2	100.0(22) 4.9
160인이상	50.9 (55)	-	15.4	11.5	23.1	7.7	42.3	100.0(26) 11.3
X ² (dF)/F	7.2(5)		-					6.3***
지역규모								
서울	30.2 (63)	16.7	44.4	16.7	-	-	22.2	100.0(18) 9.5
수도권	47.9 (119)	9.3	42.6	11.1	9.3	-	27.8	100.0(54) 7.1
광역시	33.6 (119)	37.8	32.4	10.8	5.4	5.4	8.1	100.0(37) 3.4
시도	34.0 (162)	22.6	43.4	9.4	11.3	1.9	11.3	100.0(53) 4.8
읍면	37.5 (80)	28.6	7.1	17.9	28.6	3.6	14.3	100.0(28) 4.8
X ² (dF)/F	8.6(4)		-					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II-3-19〉 장기차입 대상

구분	운영자 및 친인척	제3자	금융권	계(수)	단위: %(개소)				
					구분	운영자 및 친인척	제3자	금융권	계(수)
전체	65.2	12.4	38.8	100.0(201)	지역규모				
정원					서울	52.6	21.1	42.1	100.0(19)
20인 이하	67.3	15.3	25.5	100.0(98)	수도권	78.9	8.8	28.1	100.0(57)
43~54인	50.0	28.6	50.0	100.0(14)	광역시	72.5	15.0	35.0	100.0(40)
68~85인	33.3	-	77.8	100.0(9)	시도	61.8	9.1	38.2	100.0(55)
86~113인	64.3	3.6	57.1	100.0(28)	읍면	43.3	16.7	63.3	100.0(30)
120~159인	70.8	12.5	33.3	100.0(24)	X ² (dF)	13.6(4)**	-	10.7(4)*	
160인 이상	71.4	7.1	53.6	100.0(28)					
X ² (dF)	6.5(5)	-	20.6(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장기 차입 시 차입금을 조달한 대상은 운영자 및 친인척이 65.2%로 많고, 다음으로 금융권이 38.8%, 제3자가 12.4% 정도이다.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과 120인 이상 대규모 어린이집은 운영자 또는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간 규모는 금융권도 많이 이용한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는 없으나 수도권이나 광역시, 시도지역은 운영자 및 친인척 등에게서 주로 장기 차입 하지만, 읍면지역은 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은 제3자에게 차입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다(표 III-3-19 참조).

마. 대표자의 운영 참여

1) 대표자

조사 대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22.1%가 원장과 대표자가 상이하였다.¹⁷⁾

원장이 아닌 대표자 중 50% 이상이 어린이집 운영 행정사무원이나 통학차량 운행, 보육교사 등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정원별로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그 이상 규모 어린이집은 행정사무원이나 통학차량 운행 등의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역시는 보육교사, 그 외 지역은 행정사무원이나 통학차량을

17) 정원별로는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만 원장과 대표자가 다르다는 비율이 6.8%이고, 나머지 규모는 20~40%대이었음. 시도별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약 1/3 정도가 원장과 대표자가 다르고, 나머지 지역은 20% 내외 수준이었음.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III-3-20〉 원장과 대표자 동일 여부 및 대표자 기여형태

구분	다르다는 비율 (수)	대표자 기여 형태							단위: %(개소)
		사무원	차량	운행	보육교사	취사부	기타	미참여	
전체	22.1 (552)	14.3	12.4	9.5	1.0	16.2	46.7	100.0(105)	
정원									
20인이하	6.8 (279)	8.7	8.7	26.1	4.3	4.3	47.8	100.0(23)	
43~54인	40.9 (44)	17.6	5.9	5.9	-	23.5	47.1	100.0(17)	
68~85인	26.9 (26)	-	16.7	16.7	-	-	66.7	100.0(6)	
86~113인	34.8 (69)	4.8	19.0	9.5	-	23.8	42.9	100.0(21)	
120~159인	37.2 (78)	15.8	26.3	-	-	15.8	42.1	100.0(19)	
160인이상	44.6 (56)	31.6	-	-	-	21.1	47.4	100.0(19)	
X ² (dF)	80.6(5)***			-					
지역규모									
서울	28.1 (64)	6.7	-	6.7	-	33.3	53.3	100.0(15)	
수도권	28.1 (121)	22.6	12.9	6.5	3.2	12.9	41.9	100.0(31)	
광역시	19.8 (121)	9.5	9.5	23.8	-	14.3	42.9	100.0(21)	
시도	17.5 (166)	16.0	28.0	8.0	-	16.0	32.0	100.0(25)	
읍면	21.3 (80)	7.7	-	-	-	7.7	84.6	100.0(13)	
X ² (dF)	6.3(4)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II-3-21〉 어린이집 대표자 보육관련 취득 자격유형

구분	원장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간호사	기타	없음	단위: %(명)	
							(수)	
전체	26.2	30.3	18.9	4.1	15.6	36.9	(122)	
지역규모								
서울	33.3	33.3	11.1	5.6	16.7	44.4	(18)	
수도권	17.6	29.4	14.7	2.9	11.8	44.1	(34)	
광역시	33.3	25.0	29.2	4.2	25.0	25.0	(24)	
시도	34.5	41.4	10.3	6.9	13.8	27.6	(29)	
읍면	11.8	17.6	35.3	-	11.8	47.1	(17)	

주: 없음 이외는 중복응답 결과임. 보육교사 3급과 영양사는 보기를 주고 조사하였으나 해당이 없어서 제표에서 삭제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원장이 아닌 대표자가 보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보육관련 자격이 없다는 비율은 36.9% 정도이고, 보육교사 1급 30.3%, 원장 26.2%, 보육교사 2급 18.9%, 조리사 등의 기타 자격증 15.6% 순이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특·광역시와 시도지역이 원장 자격자가 30%대로 높았고, 보

육교사 1급은 시도 41.4%, 서울과 수도권은 30% 내외 수준이었고, 보육교사 2급은 읍·면지역이 35.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서울과 수도권, 읍·면지역은 보육관련 자격이 없다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표 III-3-21 참조).

대표자에게는 부여되는 역할이 없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받지 못한다. 대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41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정원이 클수록, 서울 및 수도권지역일수록 대표자의 인건비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20인 이하는 318만원 정도이나 160인 이상은 550만원 정도로 차이를 보였다(표 III-3-22 참조).

〈표 III-3-22〉 대표자 인건비 수준에 대한 운영자 의견

구분	단위: %(개소), 만원					
	300만원 미만	300~400만 원미만	400~500만 원미만	500~600만 원미만	600만원 이상	계(수)
전체	14.2	37.5	12.9	23.4	12.0	100.0(542) 410.7
정원						
20인 이하	23.4	58.3	9.4	8.3	0.7	100.0(278) 318.4
43~54인	7.0	23.3	18.6	41.9	9.3	100.0(43) 439.3
68~85인	3.8	11.5	34.6	38.5	11.5	100.0(26) 488.5
86~113인	4.5	17.9	13.4	32.8	31.3	100.0(67) 534.6
120~159인	4.1	13.5	18.9	39.2	24.3	100.0(74) 502.7
160인 이상	3.7	11.1	7.4	46.3	31.5	100.0(54) 548.3
X ² (dF)/F		253.5(20)***				53.0***
지역규모						
서울	4.8	17.7	27.4	37.1	12.9	100.0(62) 471.0
수도권	12.0	29.9	8.5	25.6	23.9	100.0(117) 464.5
광역시	17.6	47.1	15.1	15.1	5.0	100.0(119) 363.4
시도	16.4	40.6	10.3	22.4	10.3	100.0(165) 397.9
읍면	15.2	43.0	10.1	24.1	7.6	100.0(79) 382.4
X ² (dF)/F		50.9(16)***				8.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p < .001

2) 가족 및 친인척

〈표 III-3-23〉은 운영자의 가족 및 친인척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여부와 참여 시 형태를 나타낸다.

어린이집 중 43.8%가 가족 및 친인척 등이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고 있고, 정원이 클수록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20인 이하는 22.6%이나 160인 이상은 71.4%로 높다. 지역별로는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 40% 선으로 높았

다.

참여 시 형태는 보육교사와 차량기사가 각각 44.2%, 42.6%로 높고, 사무원 23.1%, 취사부 19% 순이다. 어린이집 규모가 작을수록 보육교사로 참여한다는 비율이 높고, 어린이집 정원이 많을수록 차량기사와 사무원 비율이 높아진다. 지역별로는 차량기사는 수도권과 시도, 읍면지역이 높고, 취사부는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높다.

참여 시 인원수는 평균 1명 정도로 비슷하다. 특히 160인 이상 규모가 큰 어린이집과 읍면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표 III-3-23〉 운영자 가족 및 친인척의 운영 참여 형태

단위: %(개소), 명

구분	참여 기관 비율 (%)	참여 형태					참여 시 인원 수				
		보육 교사	차량 기사	취사부	사무원	기타 (%)	보육 교사	차량 기사	취사 부	사무 원	기타
전체	43.8 (552)	44.2	42.6	19.0	23.1	6.6 (242)	1.3	1.0	1.1	1.0	1.1
정원											
20인이하	22.6 (279)	63.5	20.6	33.3	6.3	4.8 (63)	1.1	1.0	1.0	1.0	1.0
43~54인	56.8 (44)	56.0	44.0	12.0	4.0	8.0 (25)	1.4	1.0	1.0	1.0	1.0
68~85인	53.8 (26)	42.9	42.9	21.4	14.3	- (14)	1.2	1.0	1.0	1.0	-
86~113인	73.9 (69)	37.3	58.8	15.7	17.6	7.8 (51)	1.4	1.0	1.1	1.0	1.0
120~159인	62.8 (78)	32.7	53.1	12.2	49.0	6.1 (49)	1.2	1.1	1.2	1.0	1.0
160인이상	71.4 (56)	30.0	42.5	12.5	40.0	10.0 (40)	2.4	1.1	1.4	1.0	1.3
X ² (dF)/F	109.4(5) ***	17.8(5) **	20.1(5) **	12.2(5) *	41.4(5) ***	-	1.2	0.9	1.2	-	0.7
지역규모											
서울	48.4 (64)	45.2	38.7	22.6	19.4	9.7 (31)	1.0	1.0	1.0	1.0	1.0
수도권	45.5 (121)	34.5	50.9	20.0	32.7	9.1 (55)	1.4	1.1	1.0	1.0	1.0
광역시	39.7 (121)	41.7	31.3	29.2	20.8	2.1 (48)	1.0	1.0	1.1	1.0	1.0
시도	44.0 (166)	52.1	42.5	12.3	13.7	8.2 (73)	1.2	1.0	1.0	1.0	1.2
읍면	43.8 (80)	45.7	48.6	14.3	34.3	2.9 (35)	2.4	1.1	1.4	1.0	1.0
X ² (dF)/F	1.5(4)	-	4.1(4)	4.8(4)	6.1(4)	9.3(4)	1.9	1.0	1.5	-	0.3

주: 참여 형태는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4. 소결

시설유형별 시설비 차이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조사자료 분석 결과의 소결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는 증개축비, 개보수 및 장비비가 지원되는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국공립에 비하여 지원되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보육비용 산정 시에 반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새롭게 건축할 경우에 그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즉, 사회복지법인은 국공립과 다르게 설치비 중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가상각비로 인정해서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취약지역에 많아 설치되어 있으므로 교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비율이 전체 비용 산정에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할 수준은 아니었다.

한편으로, 개인이 투자한 어린이집의 설치비 부채는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나타냈다. 개인의 설치 투자 비용 규모는 신축이나 매입 모두 설치비는 아동 1인당 최소 800만원에서 1,700만원에 이르고, 그 비용의 반 정도가 융자금이다. 임대 시에는 아동 1인당 300만원 이상이 들고 임대료로 평균 39,000원이다. 따라서 기타 운영비 지출이 전체 지출 대비 비율은 평균 10%인데, 15% 이상인 어린이집도 조사 대상의 7% 정도이고, 그 사용처로는 융자금 이자와 임대료의 비중이 가장 컸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개보수 비용 부담도 있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은 최근 3년간 80% 정도가 개보수를 했다고 응답하였고, 개보수 비용은 평균 3,000만원 정도이었는데, 과반수 이상이 이 비용을 세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급여나 개보수로 인하여 단기 차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 차입도 37%의 어린이집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 대상은 금융권보다 운영자 친인척이 더 많았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에 실제로 대표자에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음을 나타냈다. 본 조사에서 이들 중 50% 이상의 대표자가 교직원으로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 관련 자격 소지 비율도 75% 정도가 되었다. 대표자는 월 400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IV. 어린이집 세입·세출 현황

제4장은 어린이집 세입, 세출 보고자료를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12개월치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입, 세출 보고 자료를 정리하여 보육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별로 월 평균 비율과 금액을 산출하였다.

1. 어린이집 세입세출 자료 특성과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12개월치 월별 어린이집 재무회계 보고 자료를 정리하여, 12개월치 자료가 모두 있고 급간식비 지출 기록이 있는 어린이집을 선별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¹⁸⁾

세입 세출 차이 분석은 전체 분석 대상을 기준으로 시설유형별 차이를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선별하여 규모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어린이집 규모별 분석은 보육비용 산정시 기본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어린이집 규모를 기준으로 ±4명의 범주로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기본 모형에 따른 규모는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이다.¹⁹⁾

이 규모를 기준으로 ±4명를 분석 대상 범주로 설정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선정한 모형이 어린이집 정원 기준이기는 하지만 기본모형이므로 초과 보육이나 정원 미달 등 실제와의 차이를 고려하여 유사한 규모의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분석 대상 범주를 넓히고자 하였다. 둘째는 현원 규모가 일정한 어린이집이 아동 연령별 반 구성의 특성도 유사하기 때문에 연령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보육비용 항목 산출 시에는 아동 1인당의 의미가 동질적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8) 어린이집 재무회계 예결산 기준 일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임. 그러나 어린이집은 거의 다가 3월부터 새로운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지원단가 등을 새롭게 적용하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회계 예결산 기준과 달리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자료를 1년치 자료로 분석하였다.

19) 통계분석은 교차분석 결과로 카이값을 제시하였고, 사후검증은 생략하였음.

〈표 IV-1-1〉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항	목	분석 대상	산출 기준
인건비	기본급	○	보육교직원에 대한 기본봉급(상여금 포함)
	일용잡급	-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제수당	○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수당(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 및 기타수당)
	퇴직금(직립금)	-	보육교직원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	보육교직원의 사회보험 부담
	기타후생경비	○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비·급량비·연구연수비, 보육교직원 상용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비	○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직책급	○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회의비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관리 운영비	여비	○	보육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	사무용품비·인쇄비·침기구입비(장기간 또는 고정자산 취급되는 침기류는 3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 공고료·등기료·수수료,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도시가스료, 자동차세·협회비·화재·자동차보험료 등
	차량비	○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
	연료비	○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축사에 필요한 연료비
사업 운영비	기타운영비	○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용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
	급간식비	○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 등
	교재교구비	○	교재교구의 구입 및 제작비
	행사비	-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기타필요경비지출	-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
	특별활동비 지출	-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시설비	시설비	○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개·보수비)
	자산취득비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주: 세출 계정과목 중 전출금, 잡지출, 예비비 (항)은 분석하지 않으므로 생략함.

2.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세입 현황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수입 분포를 분석하였다. 시설유형별로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한 총 수입 대비 수입 분포와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시설유형별로 총 수입대비 항목별 비중을 알아보았다.

가.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

<표 IV-2-1>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한 총 수입 대비 수입 분포를 시설유형별로 알아본 것이고, <표 IV-2-2>는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시설유형별로 총 수입대비 항목별 비중을 알아본 것이다.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한 경우, 전체 수입의 56.5%가 보육료 수입, 22.1%는 기본보육료, 7.7% 인건비 보조금, 기타지원금 5.0%, 기타 8.4%로 구성된다. 시설유형별로 민간과 가정, 부모협동은 보육료 수입이 50~60% 정도이고, 가정은 기본보육료가 30%가 넘는다.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인건비보조금이 40% 이상이고, 직장은 기업지원금이 20% 가까이 된다.

<표 IV-2-1> 어린이집 유형별 전체 수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단위: %(개소)

구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기업 지원금	기타	(수)
전체	56.5	7.7	22.1	5.0	0.1	0.2	8.4	(42,975)
국공립	45.9	41.3	0.1	7.6	0.4	-	4.6	(2,237)
사회복지법인	46.0	40.5	0.5	7.0	0.4	-	5.6	(1,436)
법인단체등	46.9	35.1	2.5	8.6	0.3	-	6.6	(860)
민간	63.4	4.2	16.4	7.8	0.1	-	8.2	(14,546)
가정	54.6	3.4	30.4	2.7	-	-	8.8	(23,255)
직장	38.9	15.5	1.5	7.6	0.8	19.8	15.9	(522)
부모협동	54.6	2.3	12.1	6.9	0.1	-	24.0	(119)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하면, 보육료 수입이 전체 수입의 52%로 감소하고, 기본보육료는 20.9%, 인건비 보조금 7.2%, 기타 지원금 4.5%, 기타 7.9%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유형별 차이를 보면, 민간과 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이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민간과 가정은 기본보육료가

각각 14.7%, 29.1%로 상대적으로 높다.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은 인건비보조금이 30% 이상을 나타낸다.

〈표 IV-2-2〉 어린이집 유형별 전체 수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

단위:%(개소)

구분	기타필 요경비	특별활 동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보 육료	기타지 원금	자본보 조금	기업지 원금	기타	(수)
전체	3.2	4.1	52.0	7.2	20.9	4.5	0.1	0.2	7.9	(42,975)
국공립	3.2	4.1	42.4	38.4	0.1	7.0	0.4	-	4.3	(2,237)
사회복지법인	2.8	4.6	42.2	37.9	0.5	6.5	0.4	-	5.2	(1,436)
법인단체등	3.4	4.5	42.8	32.7	2.2	7.9	0.3	-	6.1	(860)
민간	5.2	7.1	55.1	3.8	14.7	6.7	-	-	7.3	(14,546)
가정	2.0	2.1	52.3	3.3	29.1	2.6	-	-	8.5	(23,255)
직장	1.4	2.6	37.0	14.9	1.4	7.2	0.8	19.3	15.4	(522)
부모협동	0.9	1.4	53.2	2.3	11.7	6.7	0.1	-	23.7	(119)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 세출 회계자료.

나.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차이

다음은 전체 어린이집 수입 분포를 시설유형 및 규모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한 경우 국공립은 93인 이상은 보육료 수입이 50% 이상을 차지하나 그 이하는 30~40%대로 낮아진다. 인건비보조금은 16~20인이 48.8%로 높고, 규모가 늘어날수록 그 비율은 감소하여 165인 이상은 31.5%에 이른다. 기타 지원금은 8~10%로 큰 차이가 없다. 사회복지법인은 보육료 수입이 규모에 비례하여 늘어난다. 16~20인이 35.8%에서 165인 이상이 57.2%이다. 인건비 보조금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규모가 늘어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타 지원금은 16~20인이 12%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5~9% 수준이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앞서 살펴본 국공립, 사회복지법인에 비해 보육료 수입 비율이 높다. 16~20인 57.9%를 제외한 나머지 규모는 60~70%를 차지한다. 기본보육료는 영아 보육 중심인 16~20인이 23.1%로 가장 높고, 165인이 7.2%로 가장 적다. 기타 지원금은 73인 이상은 10% 이상을 차지한다. 가정은 민간 16~20인과 유사하게 보육료 수입이 56.6%를 차지하고, 기본보육료가 29.6%로 높다.

〈표 IV-2-3〉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전체 수입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구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단위:%(개소)	
						기타	(수)
국공립							
16-20명	34.5	48.8	1.5	8.2	0.8	6.3	(53)
46-54명	44.7	42.7	-	7.5	0.6	4.5	(252)
73-81명	49.2	36.6	0.2	8.6	0.4	5.0	(303)
93-101명	50.5	35.8	-	8.9	0.4	4.3	(170)
120-128명	53.2	32.6	0.1	9.0	0.1	5.1	(41)
138-146명	53.6	32.1	-	9.8	0.3	4.1	(32)
165명이상	53.0	31.5	-	10.3	0.3	4.9	(30)
사회복지법인							
16-20명	35.8	41.7	1.6	12.0	0.2	8.7	(32)
46-54명	42.7	44.4	0.3	5.9	0.6	6.0	(149)
73-81명	49.2	36.8	0.4	7.5	0.4	5.7	(151)
93-101명	52.1	33.6	0.1	8.0	0.4	5.9	(90)
120-128명	55.1	30.2	-	9.2	0.6	4.9	(30)
138-146명	56.6	30.0	-	9.1	0.1	4.2	(29)
165명이상	57.2	28.1	0.1	9.1	-	5.5	(44)
민간							
16-20명	57.9	3.4	23.1	4.8	0.1	10.7	(1,143)
46-54명	64.9	5.0	14.2	8.9	0.1	6.9	(1,174)
73-81명	68.1	3.8	11.0	10.7	0.1	6.3	(647)
93-101명	70.0	2.2	9.3	12.7	-	5.7	(410)
120-128명	71.6	1.8	8.6	11.7	-	6.2	(180)
138-146명	68.6	2.0	8.7	12.5	-	8.2	(102)
165명이상	74.2	0.9	7.2	11.6	-	6.1	(232)
가정							
16-20명	56.6	4.2	29.6	3.0	-	6.6	(8,315)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하여 살펴보면, 국공립은 보육료 수입이 16~20인 33.8%를 제외하고 나머지 규모는 40%대로 낮아지고, 인건비보조금은 16~20인 47.8%에서 165인 28.5%로 정의 관계로 감소한다.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는 16~20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3~6%대 정도이다. 사회복지법인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보육료 수입이 16~20인 35%에서 165인 49.2%로 늘어나며, 인건비보조금은 54인 이하 40%대에서 점차적으로 낮아져서 165인 이상은 24.3%에 이른다.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는 규모가 늘어날수록 그 비율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이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규모가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기본보육료와 인건비보조금은 반대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인다.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는 16~20인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각각 10% 내외, 6~9%대로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비해 높다. 가정 어린이집은 민간 16~20인과 유사한 수입 분포를 나타낸다.

〈표 IV-2-4〉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전체 수입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

구분	기타필 요경비	특별 활동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단위:%(개소)	
								기타	계(수)
국공립									
16-20명	0.7	1.1	33.8	47.8	1.5	8.1	0.7	6.2	(53)
46-54명	4.0	3.2	41.4	39.7	-	6.9	0.6	4.2	(252)
73-81명	5.0	3.2	45.2	33.7	0.2	7.9	0.4	4.6	(303)
93-101명	5.3	3.8	45.9	32.6	-	8.0	0.4	4.0	(170)
120-128명	5.7	4.5	47.7	29.3	0.1	8.1	0.1	4.6	(41)
138-146명	6.6	4.1	47.9	28.7	-	8.8	0.2	3.7	(32)
165명 이상	6.2	3.7	47.6	28.5	-	9.2	0.2	4.5	(30)
사회복지법인									
16-20명	1.6	0.8	35.0	40.8	1.6	11.7	0.2	8.4	(32)
46-54명	3.2	2.1	40.3	42.2	0.3	5.6	0.6	5.7	(149)
73-81명	5.3	3.0	45.0	33.8	0.4	6.8	0.4	5.3	(151)
93-101명	6.9	3.6	46.5	30.1	0.1	7.1	0.3	5.3	(90)
120-128명	9.4	4.8	47.1	25.9	-	7.9	0.5	4.3	(30)
138-146명	8.3	5.0	49.0	26.1	-	7.9	0.1	3.6	(29)
165명 이상	8.7	5.1	49.2	24.3	0.1	7.8	-	4.8	(44)
민간									
16-20명	3.8	3.0	53.7	3.3	21.7	4.4	0.1	10.0	(1,143)
46-54명	8.2	6.0	55.4	4.5	12.3	7.5	0.1	6.0	(1,174)
73-81명	10.0	6.7	56.4	3.2	9.3	8.9	0.1	5.4	(647)
93-101명	10.6	7.4	57.3	1.8	7.8	10.4	-	4.7	(410)
120-128명	10.8	8.8	57.4	1.5	7.0	9.4	-	5.1	(180)
138-146명	9.9	8.6	55.5	1.7	7.2	10.1	-	6.9	(102)
165명 이상	11.7	9.8	58.1	0.7	5.8	9.0	-	4.9	(232)
가정									
16-20명	2.9	2.8	53.3	4.0	27.9	2.8	-	6.2	(8,315)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표 IV-2-5>는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한 경우 규모 구분별로 재원별 평균 액수를 나타낸다.

〈표 IV-2-5〉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각 항목 수입 평균

구분	기타 필요경비	특별 활동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자본 보조금	단위: 천원(개소)	
								기타수입	(수)
국공립									
16-20명	2,373	1,382	64,005	107,580	1,254	13,490	1,523	10,023	(53)
46-54명	12,304	14,932	158,291	156,043	122	25,806	2,916	16,429	(252)
73-81명	16,433	25,356	231,911	175,278	952	40,352	1,966	23,902	(303)
93-101명	24,135	33,480	289,220	209,190	199	50,966	2,509	25,518	(170)
120-128명	34,147	43,428	362,982	228,274	390	62,530	855	35,384	(41)
138-146명	35,804	57,442	416,253	254,362	226	76,204	1,952	33,136	(32)
165명 이상	44,240	78,020	592,093	360,253	217	115,306	3,043	58,872	(30)
F	57.7***	163.8***	878.4***	68.5***	0.3	260.7***	0.6	24.9***	
사회복지법인									
16-20명	1,510	2,357	58,208	93,047	780	12,019	209	13,338	(32)
46-54명	9,004	12,618	169,597	191,289	727	23,302	2,780	26,164	(149)
73-81명	16,283	28,593	240,090	183,325	2,046	35,667	2,058	30,099	(151)
93-101명	22,765	43,444	290,252	190,141	510	44,115	2,231	34,481	(90)
120-128명	38,447	75,144	373,440	206,460	205	61,499	5,300	37,675	(30)
138-146명	44,330	72,274	421,576	227,515	-	67,173	569	32,575	(29)
165명 이상	60,577	105,135	578,965	286,746	612	91,960	136	58,672	(44)
F	63.6***	136.3***	943.5***	26.8***	0.3	136.5***	1.2	5.6***	
민간									
16-20명	4,624	5,618	77,391	6,377	31,917	5,981	98	15,385	(1,143)
46-54명	18,857	25,966	173,124	18,164	39,004	23,604	389	21,015	(1,174)
73-81명	30,967	46,488	255,464	17,588	42,900	40,827	297	27,823	(647)
93-101명	41,165	59,054	311,256	11,916	42,936	57,424	130	27,434	(410)
120-128명	62,999	75,685	400,881	12,114	49,809	65,560	87	38,160	(180)
138-146명	72,261	81,780	457,945	15,627	60,755	82,833	175	62,030	(102)
165명 이상	115,324	134,223	651,416	8,370	63,602	102,539	100	63,607	(232)
F	577.9***	1081.4**	7984.4***	12.6***	83.7**	923.9***	0.7	50.5**	
가정									
16-20명	2,550	2,606	59,846	4,899	32,930	3,132	56	9,311	(8,318)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3.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세출 현황

인건비는 1개 반당 평균을 산출하였고, 그 이외 비용은 아동 1인당으로 산출하였다.

분석 대상 계정과목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설치비 각 (항)의 각 (목)이다. 관리운영비 (항)과 관리운영비 (항) 중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에는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량 미운영 어린이집과 운영 어린이집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연간으로 합산한 다음에 이를 다시 반당 및 아동 1인당 월 평균 자료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인건비 (항) 중 기본급과 제수당 및 후생경비 (목)은 반당으로 환산하였으며, 기타 항목은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분석은 전체 평균과 항목별로 지출이 있다는 어린이집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가. 세출 분포

어린이집 연간 세출의 항목별 분포를 알아보았다.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산출하면, 인건비 65.6%, 관리운영비 14.7%, 사업운영비 12.3% 순이다. 시설유형 별로 항목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인건비는 국공립과 부모협동이 70%가 넘고, 민간이 63.7%로 가장 낮다. 관리운영비는 민간과 가정이 15%대이고, 국공립은 9% 정도이다. 사업운영비는 직장과 국공립 어린이집이 각각 18.8%, 15.1%로 높은 반면에 가정은 10.6%로 낮다.²⁰⁾ 업무추진비는 직장이 5.8%로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시설비는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4~5%대이나 민간과 가정은 1~2%대로 절반 수준이다(표 IV-3-1 참조).

기타 필요경비 지출을 포함하여 산출하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60.9%를 차지하고, 사업운영비가 18.6%, 관리운영비가 13.6% 정도이다. 시설유형별 차이를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부모협동을 제외하고 대체로 63~66% 정도이나 민간은 56.1% 크게 낮다. 관리운영비도 가정과 민간이 13~14%대이고 국공립이 8%대로 5%p 이상 차이가 난다. 사업운영비는 민간이 24.3%이고 가정이 14.5%로 큰 차이를 보인다. 시설비는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이 3~4%대이나 가정어린이집은 1.5%로 절반 정도이다(표 IV-3-2 참조).

20) 이는 가정어린이집이 영아 중심으로 교재교구비의 지출이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표 IV-3-1〉 어린이집 유형별 지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제외

구분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단위: %(개소)	
							기타	(수)
전체	65.6	1.7	14.7	12.3	2.2	3.1	0.3	(41,315)
국공립	70.4	1.3	8.8	15.1	4.0	0.3	0.1	(2,231)
사회복지법인	68.4	1.2	11.4	12.9	5.0	0.9	0.2	(1,412)
법인단체등	69.3	1.3	10.8	13.5	3.9	1.0	0.2	(849)
민간	63.7	1.3	15.2	14.1	2.6	3.0	0.3	(14,053)
가정	66.0	2.1	15.6	10.6	1.6	3.7	0.4	(22,194)
직장	67.9	5.8	4.3	18.8	2.4	0.7	0.1	(462)
부모협동	70.0	1.2	10.3	14.6	1.4	2.1	0.4	(114)
F	410.4 ***	1164.0 ***	1365.3 ***	2047.1 ***	508.1 ***	350.4 ***	55.7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표 IV-3-2〉 어린이집 유형별 지출 분포: 기타 필요경비 포함

구분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단위: %(개소)	
							기타	(수)
전체	60.9	1.6	13.6	18.6	2.0	2.9	0.3	(41,315)
국공립	64.9	1.2	8.1	21.7	3.7	0.3	0.1	(2,231)
사회복지법인	63.3	1.1	10.5	19.5	4.6	0.8	0.2	(1,412)
법인단체등	63.9	1.2	9.9	20.4	3.6	0.9	0.2	(849)
민간	56.1	1.1	13.3	24.3	2.3	2.7	0.2	(14,053)
가정	63.2	2.0	14.9	14.5	1.5	3.5	0.4	(22,194)
직장	66.0	5.7	4.1	21.1	2.3	0.7	0.1	(462)
부모협동	68.5	1.2	10.0	16.5	1.4	2.1	0.4	(114)
F	1228.7 ***	1371.9 ***	1511.7 ***	3202.9 ***	451.0 ***	368.0 ***	60.4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나. 인건비

인건비는 기본급, 제 수당, 기타후생경비 (목)의 연간 지출의 반당 월평균 액수를 산출하였다. 일률적으로 가산되는 법정 부담금이나 추가 인력에 대한 급여 지출인 일용 잡급은 제외하였다.

이 비용의 대상은 모든 보육교직원이고 어린이집마다 인력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공통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만 규모별로 아동 연령반 구성이나 인력의 배치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반당 지출 규모의 시설유형과 규모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 기본급(목)

어린이집의 2013.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1년간 월 평균 반당 기본급 평균은 158만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시설유형별로 평균을 비교해 보면 국공립이 266만원이고, 민간이 170만원, 가정은 128만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 비용은 보육교사 이외에 원장 등 주요 인력의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표 IV-3-3 참조).

〈표 IV-3-3〉 어린이집 유형별 반당 월 평균 지출: (항)기본급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수)	단위: 원(개소)
					최대값
전체	1,578,552	568,461	1,415,120	(41,315)	14,620,977
국공립	2,664,006	472,822	2,630,964	(2,231)	14,620,977
사회복지법인	2,449,063	365,807	2,417,845	(1,412)	4,103,560
법인단체등	2,513,183	489,159	2,518,608	(849)	4,738,035
민간	1,696,007	432,763	1,610,290	(14,053)	6,088,612
가정	1,277,363	306,581	1,239,984	(22,194)	6,896,781
직장	2,780,339	903,047	2,797,029	(462)	8,783,438
부모협동	1,880,714	606,462	1,807,320	(114)	4,360,073
F	8369.7***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표 IV-3-4〉는 시설유형별로 나누어 규모별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어린이집 규모별 차이는 유형별 차이처럼 크지 않다.

〈표 IV-3-4〉 어린이집 유형과 규모별 반당 월 평균 지출: (항)기본급

구분	국공립					법인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최대값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16-20명	2,491,633	621,710	621,710	(45)	5,032,455	2,344,480	647,244	2,259,379	(23)	3,983,929	
46-54명	2,780,438	922,146	2,730,073	(199)	14,620,977	2,526,963	356,678	2,486,323	(133)	3,700,808	
73-81명	2,611,420	274,950	2,605,374	(261)	3,605,831	2,501,529	355,800	2,479,011	(133)	3,550,720	
93-101명	2,558,261	254,432	2,568,841	(105)	3,284,113	2,460,308	341,957	2,466,106	(77)	3,281,449	
120-128명	2,579,260	261,707	2,581,579	(34)	3,116,063	2,460,359	325,139	2,376,613	(25)	3,274,129	
138-146명	2,528,829	326,148	2,461,844	(19)	3,438,140	2,252,878	295,910	2,323,377	(26)	2,725,879	
165명이상	2,483,658	260,959	2,454,264	(29)	2,960,476	2,318,028	315,997	2,373,686	(39)	3,055,299	
F	3.60**					3.8**					

(표 IV-3-4 계속)

구분	국공립					법인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최대값
민간						가정				
16-20명	1,450,539	365,330	1,387,052	(787)	4,455,735	1,373,869	295,441	1,313,713	(9,774)	4,096,845
46-54명	1,794,909	440,745	1,706,667	(935)	4,215,868					
73-81명	1,843,029	395,143	1,785,746	(614)	3,316,893					
93-101명	1,875,250	416,949	1,813,048	(317)	3,380,263					
120-128명	1,893,942	453,760	1,807,577	(156)	3,260,343					
138-146명	1,914,558	413,117	1,915,114	(84)	3,132,661					
165명이상	1,854,193	397,328	1,823,935	(231)	3,141,746					
F	90.4***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1, *** p < .001

민간과 가정의 20인 이하 어린이집이 130~140만원 수준으로 다소 낮게 산출되었고, 이외에는 규모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민간어린이집은 규모별로 반당 지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4 참조).

2) 제 수당

제 수당은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연 구수당, 급식비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

〈표 IV-3-5〉 어린이집 유형별 반당 월 평균 지출: (항)제수당

단위: 원(개소)

구분	전체			지출 없음 제외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수)	
전체	71,312	106,786	26,087	(41,315)	92,719	113,321	49,744	(31,776)	1,755,317
국공립	163,274	112,518	147,696	(2,231)	166,104	111,398	150,120	(2,193)	1,133,488
사회복지법인	98,616	104,415	71,439	(1,412)	107,030	104,557	81,318	(1,301)	999,914
법인단체등	102,769	144,590	57,627	(849)	117,589	148,930	72,227	(742)	1,573,960
민간	79,389	119,639	27,354	(14,053)	100,873	126,570	49,167	(11,060)	1,268,163
가정	52,128	79,782	17,300	(22,194)	71,446	85,697	37,234	(16,193)	891,175
직장	136,611	229,697	0	(462)	301,983	258,373	234,614	(209)	1,284,481
부모협동	173,692	298,091	40,768	(114)	253,858	331,342	110,976	(78)	1,755,317
F	518.7***				447.2***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어린이집의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1년간 보육인력의 제 수당을 월 평균 반당으로 산출하면 71,000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분석 대상 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어린이집이 23% 정도이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평균은 93,000 원 정도이다. 시설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어린이집 전체 평균은 국공립이 16만원 이상이고, 법인이 98,000원 수준, 민간 8만원, 가정은 5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표 IV-3-6〉 어린이집 유형과 규모별 반당 월 평균 지출: (항)제수당

구분	전체			지출 없음 제외			최대값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수)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수)		
국공립								
16-20명	110,749	108,734	90,434 (45)	127,788	107,029	112,639 (39)	441,635	
46-54명	164,967	112,054	147,565 (199)	169,218	110,264	152,041 (194)	802,677	
73-81명	172,077	105,165	165,583 (261)	173,406	104,470	166,357 (259)	881,257	
93-101명	155,928	99,442	145,244 (105)	157,427	98,724	145,606 (104)	563,019	
120-128명	174,493	90,060	160,696 (34)	174,493	90,060	160,696 (34)	426,613	
138-146명	191,134	108,822	152,767 (19)	191,134	108,822	152,767 (19)	414,132	
165명이상	182,056	159,555	118,347 (29)	182,056	159,555	118,347 (29)	786,280	
F	2.5*		1.4					
사회복지법인								
16-20명	58,377	105,042	6,000 (23)	95,905	121,641	39,704 (14)	403,095	
46-54명	84,453	99,785	58,333 (133)	94,389	100,959	74,561 (119)	547,872	
73-81명	118,107	120,471	92,113 (133)	124,668	120,421	94,599 (126)	837,953	
93-101명	108,512	130,136	71,513 (77)	114,457	131,097	79,114 (73)	878,677	
120-128명	111,821	103,827	85,059 (25)	116,480	103,356	85,517 (24)	456,727	
138-146명	96,736	85,676	74,742 (26)	100,606	85,092	75,714 (25)	345,070	
165명이상	136,853	95,884	124,940 (39)	140,455	94,460	127,199 (38)	363,253	
F	2.3*		1.3					
가정								
16-20명	61,493	86,418	25,862 (9,774)	77,314	90,368	41,936 (7,774)	891,175	
민간								
16-20명	45,967	84,469	9,269 (787)	70,794	96,100	33,404 (511)	767,340	
46-54명	86,008	120,703	34,567 (935)	101,409	124,970	52,410 (793)	1,026,234	
73-81명	94,127	126,405	36,128 (614)	109,251	129,981	53,735 (529)	725,362	
93-101명	100,931	138,942	34,747 (317)	116,346	143,052	45,725 (275)	545,191	
120-128명	137,892	181,085	60,803 (156)	164,208	186,396	89,565 (131)	1,077,760	
138-146명	120,028	187,397	42,710 (84)	129,261	191,429	50,664 (78)	905,257	
165명이상	161,619	184,642	82,954 (231)	176,938	186,054	105,617 (21)	952,676	
F	32.6***		20.1**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5$, *** $p < .001$

비용 지출이 있는 경우만 선별해 보면 국공립은 큰 변동이 없고 법인은 107,000원 정도이며 민간이 10만원, 가정은 7만원 수준으로 산출되었다(표 IV-3-5 참조). 특히 부모협동과 직장어린이집은 제수당 지출 어린이집 비율이 낮아서 전체 평균과 지출시 평균간의 격차가 크다.

<표 IV-3-6>은 제수당 연 지출의 월 평균을 시설유형별로 나누어 규모별 차 이를 알아본 것이다. 어린이집 규모별 차이는 국공립과 민간은 대체로 소규모 어린이집의 반당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어린이집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정적 관련성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기타후생경비

기타후생경비는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비·급량비·연구연수비, 보육교직원 상용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어린이집의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1년간 후생경비 지출을 월 평균 반당으로 산출하면 65,000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어린이집은 극히 소수이다. 시설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어린이집 전체 평균은 국공립이 125,000원 이상이고, 법인이 75,000원 수준, 민간 67,000원, 가정 57,000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표 IV-3-7 참조).

<표 IV-3-7> 어린이집 유형별 반당 월 평균 지출: (항)기타후생경비

구분	전체			지출 없음 제외			최대값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수)		
전체	64,815	51,771	52,018 (41,315)	65,749	51,548	52,762 (40,729)	972,545	
국공립	125,220	64,392	117,098 (2,231)	125,220	64,392	117,098 (2,231)	512,181	
사회복지법인	75,183	57,120	59,706 (1,412)	75,612	56,999	60,033 (1,404)	360,500	
법인단체등	82,382	61,091	69,107 (849)	84,471	60,417	71,037 (828)	381,672	
민간	66,677	53,734	54,453 (14,053)	67,319	53,590	54,997 (13,919)	972,545	
가정	56,439	42,190	46,576 (22,194)	56,924	42,039	46,942 (22,006)	489,709	
직장	57,251	81,811	3,277 (462)	112,076	83,421	96,422 (236)	382,222	
부모협동	55,401	56,147	41,832 (114)	60,150	56,008	44,492 (105)	370,458	
F	698.3***			735.1***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이 소수이므로 전체 평균 값만 어

린이집 규모별로 산출하였는데, 규모별 월 평균 지출은 시설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인 이하가 8만원 대로 낮고 50인 기준과 77인 기준 어린이집이 13~14만원대이고 그 이상 규모는 11~12만원대로 오히려 규모가 커지면서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20인 기준이 55,000원, 50인 기준이 7만원 수준이고 그 이상은 8~9만이고 165인 이상 대규모 어린이집은 10만원에 근접한다. 민간의 경우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규모와 반당 후생경비 지출이 정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인이 48,000원이고 점차 증가하여 165인 이상이면 98,000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한편 가정어린이집은 64,000원 규모이었다(표 IV-3-8 참조).

〈표 IV-3-8〉 어린이집 유형과 규모별 반당 월 평균 지출: (향)기타후생경비

단위: 원(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16-20명	84,396	76,452	68,920	(45)	373,230	54,878	73,858	35,322
46-54명	131,433	71,180	118,017	(199)	512,181	69,573	60,440	52,843
73-81명	142,323	66,423	135,967	(261)	357,941	91,545	61,732	78,736
93-101명	120,683	46,956	116,986	(105)	288,230	85,242	57,959	71,575
120-128명	109,840	48,805	104,100	(34)	231,729	84,097	48,897	71,415
138-146명	125,111	58,351	111,912	(19)	264,861	98,069	70,697	66,062
165명이상	111,370	41,105	114,305	(29)	190,087	99,784	74,577	74,397
F	6.7***				3.0**			
민간	가정							
16-20명	47,953	41,311	37,249	(787)	387,919	64,270	41,496	55,005
46-54명	69,481	49,333	57,664	(935)	363,874			(9,774)
73-81명	72,824	52,876	63,284	(614)	721,689			
93-101명	84,233	61,555	70,870	(317)	434,572			
120-128명	89,685	54,746	83,592	(156)	430,825			
138-146명	93,997	67,116	82,274	(84)	377,225			
165명이상	97,997	77,474	80,601	(231)	607,849			
F	44.1***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1$, *** $p < .001$

다. 업무추진비

1) 업무추진비(향)

전체 어린이집의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1년간 월 평균 아동 1인당 업무추진비 지출액은 1만원 정도로 추정되었다.²¹⁾ 시설유형별로는 전체 평균으로 비교해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27,000원 이상 수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아동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으로 13,000원 선이다. 다음은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이 7,500원 내외이고 부모협동, 민간단체 어린이집이 7,000원에 가까우며 민간이 6,200원 정도로 가장 낮다(표 IV-3-9참조).

〈표 IV-3-9〉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향)업무추진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단위: 원(개소)	
				(수)	최대값
전체	10,290	8,807	8,621	(41,139)	98,908
국공립	7,701	4,973	6,480	(2,226)	70,833
사회복지법인	7,368	4,906	6,410	(1,410)	38,665
법인단체등	6,804	5,785	5,925	(845)	88,932
민간	6,172	5,621	5,112	(14,021)	89,059
가정	13,196	8,943	12,327	(22,143)	98,908
직장	27,656	26,987	12,624	(380)	97,890
부모협동	6,895	7,495	4,673	(114)	39,217
F	1515.9**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표 IV-3-10>은 시설유형별로 나누어 규모별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가정어린이집을 논의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규모가 커지면 아동 1인당 업무추진비는 감소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50명 내외는 8,000원 수준, 77명 내외는 5,900원, 97명과 124명 기준은 4,500원 내외, 142인 기준은 3,700원, 165인 이상은 3,000원 수준이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현원 20인 미만은 비용이 다소 낮으나 전체적인 추세는 국공립과 동일하다. 민간어린이집도 20인 이하는 7,300원이고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감소하여 165인 시설은 3,200원 수준이 된다.

21) 업무추진비 지출이 없는 어린이집은 0.97%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전체 평균만 제시함.

〈표 IV-3-10〉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향)업무추진비

단위: 원(개소)

구분	전체			지출 없음 제외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국공립								
16-20명	11,956	7,212	13,155 (45)	12,810	6,680	13,209 (42)	29,468	
46-54명	8,070	3,887	7,855 (198)	8,070	3,887	7,855 (198)	46,709	
73-81명	5,900	1,886	5,797 (261)	5,900	1,886	5,797 (261)	14,894	
93-101명	4,449	1,333	4,445 (105)	4,449	1,333	4,445 (105)	10,583	
120-128명	4,518	1,740	4,364 (34)	4,518	1,740	4,364 (34)	8,990	
138-146명	3,659	1,093	3,535 (19)	3,659	1,093	3,535 (19)	5,811	
165명이상	3,020	1,127	2,946 (29)	3,020	1,127	2,946 (29)	6,067	
F	52.2***			62.3***				
사회복지법인								
16-20명	5,630	7,058	1,886 (23)	6,815	7,236	3,698 (19)	20,903	
46-54명	8,610	4,767	8,282 (133)	8,676	4,725	8,341 (132)	24,256	
73-81명	6,992	4,253	6,484 (133)	6,992	4,253	6,484 (133)	33,706	
93-101명	5,511	2,786	5,115 (77)	5,511	2,786	5,115 (77)	12,705	
120-128명	4,754	2,338	4,299 (25)	4,754	2,338	4,299 (25)	10,975	
138-146명	4,403	1,582	4,037 (26)	4,403	1,582	4,037 (26)	9,967	
165명이상	3,366	2,010	3,176 (39)	3,366	2,010	3,176 (39)	8,003	
F	13.0***			13.4***				
가정								
16~20명	12,376	7,009	11,706 (9,757)	12,522	6,919	11,781 (9,643)	78,904	
민간								
16-20명	7,289	6,956	5,920 (787)	7,711	6,923	6,657 (744)	55,308	
46-54명	5,910	4,215	5,274 (933)	6,073	4,156	5,374 (908)	22,772	
73-81명	4,377	3,115	3,951 (611)	4,487	3,075	4,018 (596)	27,358	
93-101명	4,499	3,838	3,953 (317)	4,600	3,821	3,999 (310)	31,887	
120-128명	3,635	2,553	3,524 (156)	3,682	2,535	3,537 (154)	15,872	
138-146명	3,370	2,436	3,046 (84)	3,495	2,391	3,106 (81)	10,636	
165명이상	3,180	3,432	2,566 (231)	3,279	3,438	2,643 (224)	36,368	
F	44.2***			51.3***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2) 기관운영비(목)

전체 어린이집 월 평균 아동 1인당 기관운영비는 가정어린이집이 3,100원 수준이고 이외 어린이집은 2,100원 내외로 추정되었다. 기관운영비는 지출이 없는 어린이집도 일부 있으므로 지출하는 어린이집만을 중심으로 보면 평균이 약간

올라간다. 특히 부모협동어린이집은 기관운영비 미지출 어린이집이 많으므로 1,000원 정도가 올라간다(표 IV-3-11 참조).

〈표 IV-3-11〉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기관운영비

단위: 원(개소)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전체	2,943	6,729	1,494 (41,211)	3,289	7,033	1,770 (36,881)	149,988
국공립	2,031	2,194	1,512 (2,226)	2,077	2,197	1,557 (2,177)	50,603
사회복지법인	2,197	2,882	1,378 (1,410)	2,367	2,924	1,541 (1,309)	29,006
법인단체등	2,211	4,138	1,339 (847)	2,401	4,259	1,483 (780)	86,622
민간	2,003	3,467	1,135 (14,028)	2,221	3,583	1,329 (12,655)	133,284
가정	3,082	4,643	1,812 (22,158)	3,508	4,800	2,204 (19,470)	110,119
직장	35,406	40,854	14,188 (428)	36,080	40,945	16,137 (420)	149,988
부모협동	2,179	5,404	577 (114)	3,549	6,550	1,298 (70)	38,796
F	2,292.2***			2,144.7***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시설유형별로는 나누어 규모별 차이를 보면 가정어린이집은 3,000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이외 유형은 모두 최대 3,000원 미만이며 규모가 커지면서 이 비용은 월 1,000원 미만으로 낮아진다(표 IV-3-12 참조).

〈표 IV-3-12〉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기관운영비

단위: 원(개소)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국공립							
16-20명	2,739	2,434	2,568 (45)	3,244	2,316	2,965 (38)	8,218
46-54명	2,032	1,532	1,787 (198)	2,096	1,512	1,857 (192)	9,006
73-81명	1,655	1,263	1,387 (261)	1,680	1,255	1,396 (257)	8,856
93-101명	1,350	948	1,192 (105)	1,363	944	1,197 (104)	4,668
120-128명	1,610	1,150	1,473 (34)	1,610	1,150	1,473 (34)	5,999
138-146명	1,252	1,088	1,095 (19)	1,252	1,088	1,095 (19)	4,023
165명 이상	953	734	826 (29)	953	734	826 (29)	2,650
F	8.9***			13.5***			
사회복지법인							
16-20명	986	1,505	344 (23)	1,512	1,645	539 (15)	5,469
46-54명	2,767	3,163	1,833 (133)	2,920	3,180	2,146 (126)	16,454
73-81명	2,166	2,721	1,476 (132)	2,306	2,750	1,549 (124)	17,753
93-101명	1,335	1,474	882 (77)	1,469	1,481	1,010 (70)	7,596
120-128명	1,301	1,794	549 (25)	1,548	1,860	602 (21)	7,187
138-146명	1,390	1,051	1,225 (26)	1,446	1,033	1,295 (25)	3,675
165명 이상	898	817	645 (39)	922	814	663 (38)	3,044
F	5.9***			5.3***			

(표 IV-3-12 계속)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가정									
16~20명	2,946	3,761	1,923	(9,758)	3,205	3,815	2,178	(8,972)	75,088
민간									
16-20명	2,534	4,057	1,354	(787)	3,045	4,269	1,832	(655)	52,556
46-54명	1,884	2,272	1,210	(933)	2,049	2,297	1,345	(858)	19,902
73-81명	1,297	1,790	877	(611)	1,407	1,822	967	(563)	27,358
93-101명	1,457	2,035	894	(317)	1,530	2,058	951	(302)	21,972
120-128명	1,064	1,049	820	(156)	1,122	1,047	884	(148)	6,188
138-146명	1,153	1,203	820	(84)	1,196	1,204	842	(81)	7,908
165명이상	1,332	2,856	681	(231)	1,425	2,931	756	(216)	33,136
F	17.7***				26.3***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3) 직책급(목)

직책급은 월 평균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7,258원이다.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가 있어서 가정어린이집이 1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국공립이 5,000원이 약간 넘고 사회복지법인이 4,800원 수준이며 법인·단체와 민간이 4,000원이 조금 넘는다. 직장어린이집이 2,000원 미만으로 가장 낮다. 직책급은 지출이 없는 어린이집이 16%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평균을 산출하면,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는 줄어들어서 직장어린이집도 4,500원 수준으로 상승한다(표 IV-3-13 참조).

<표 IV-3-13>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직책급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전체	7,258	6,838	5,914	(41,309)	8,647	6,610	7,463	(34,676)	94,737
국공립	5,284	3,836	4,371	(2,231)	5,407	3,794	4,449	(2,180)	50,000
사회복지법인	4,817	3,602	4,180	(1,412)	5,297	3,423	4,491	(1,284)	24,236
법인단체등	4,200	3,488	3,939	(849)	4,925	3,271	4,336	(724)	39,115
민간	4,014	4,198	3,235	(14,050)	5,154	4,093	4,407	(10,943)	48,790
가정	9,921	7,559	9,393	(22,191)	11,392	6,990	10,329	(19,325)	57,431
직장	1,682	3,312	0	(462)	4,572	4,078	3,709	(170)	37,500
부모협동	3,061	4,791	0	(114)	6,980	5,001	6,978	(50)	25,294
F	1,505.5***				1,605.4***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표 IV-3-14〉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직책급

단위: 원(개소)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국공립							
16-20명	8,663	6,033	8,898 (45)	10,829	4,651	10,438 (36)	22,304
46-54명	5,655	3,216	5,381 (198)	5,713	3,181	5,421 (196)	37,279
73-81명	3,873	1,464	3,575 (261)	3,918	1,412	3,600 (258)	8,419
93-101명	2,819	1,083	2,531 (105)	2,846	1,052	2,536 (104)	5,748
120-128명	2,528	879	2,295 (34)	2,605	769	2,330 (33)	4,125
138-146명	2,257	836	1,883 (19)	2,257	836	1,883 (19)	3,636
165명 이상	1,833	540	1,680 (29)	1,833	540	1,680 (29)	3,031
F	48.6***			82.6***			
사회복지법인							
16-20명	4,470	6,542	0 (23)	11,423	5,325	11,220 (9)	20,455
46-54명	5,268	3,130	4,783 (133)	5,697	2,853	5,009 (123)	18,051
73-81명	4,280	2,287	3,863 (133)	4,590	2,044	4,164 (124)	10,478
93-101명	3,835	2,458	3,242 (77)	4,159	2,278	3,651 (71)	10,901
120-128명	3,107	1,841	2,593 (25)	3,377	1,657	2,765 (23)	7,478
138-146명	2,832	1,310	2,528 (26)	2,946	1,200	2,597 (25)	6,498
165명 이상	2,391	1,421	1,921 (39)	2,590	1,289	1,997 (36)	5,522
F	7.7***			24.8***			
가정							
16~20명	9,226	5,697	8,867 (9,772)	10,095	5,171	9,231 (8,931)	57,431
민간							
16-20명	4,566	5,402	2,315 (787)	6,818	5,312	6,490 (527)	38,635
46-54명	3,860	3,304	3,798 (933)	4,739	3,039	4,237 (760)	20,767
73-81명	2,945	2,390	2,918 (611)	3,556	2,173	3,306 (506)	12,194
93-101명	2,929	3,099	2,411 (317)	3,641	3,058	2,751 (255)	26,430
120-128명	2,383	2,078	2,106 (156)	2,998	1,893	2,568 (124)	9,349
138-146명	1,987	1,936	1,677 (84)	2,608	1,814	2,400 (64)	7,901
165명 이상	1,777	1,814	1,550 (231)	2,280	1,753	1,863 (180)	10,235
F	29.8***			70.9***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전체 어린이집을 시설유형별, 규모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8,600원 수준에서 1,800원 정도까지 낮아지고, 사회복지법인은 20인, 50인, 77인 기준은 4,000원 이상이고 97인 기준은 3,800원 정도이며 165명 이상은 2,4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민간어린이집은 20인 이하가 4,600원이고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용은 비례해서 감소하여 165인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인 1,800원 선이었다(표 IV-3-14 참조).

4) 회의비 (목)

2013년 기준 어린이집 회의비를 월 평균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231 원이고 지출하는 어린이집만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평균 620원이다.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이 각각 1,655원, 2,657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직장어린이집으로 각각 760원, 1,800원 선으로 산출되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는 전체적으로 400원 미만이고, 가정과 민간도 전체적으로 100~200원 선으로 가장 낮다. 그러나 지출이 있는 경우를 보면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가정어린이집 지출이 월등히 높아진다(표 IV-3-15 참조).

〈표 IV-3-15〉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회의비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전체	231	721	0	(41,223)	617	1,072	283	(15,454)	22,192	
국공립	401	553	228	(2,226)	481	573	298	(1,853)	5,760	
사회복지법인	355	689	87	(1,410)	585	804	295	(857)	6,558	
법인단체등	379	756	111	(845)	603	879	301	(532)	7,634	
민간	166	528	0	(14,022)	443	790	189	(5,244)	9,677	
가정	224	734	0	(22,154)	740	1,181	357	(6,711)	22,192	
직장	756	2,259	0	(452)	1,837	3,231	563	(186)	18,646	
부모협동	1,655	2,892	345	(114)	2,657	3,287	1,648	(71)	21,247	
F	171.2***				132.4***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어린이집 규모별로 회의비는 월 평균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원 20인 이하가 평균 550원에서 142인 내외까지는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150원 정도로 줄어든다. 그러나 그 이상 규모에서는 오히려 235원으로 높아졌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20인 이하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규모에 따라 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간어린이집은 규모별로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고 142명 내외 규모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인이나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규모가 증가하면서 대내외적 회의비 지출이 증가한 결과로 추정되지만 과다한 지출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표 IV-3-16 참조).

〈표 IV-3-16〉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회의비

단위: 원(개소)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국공립							
16-20명	553	957	192 (45)	858	1,081	590 (29)	5,177
46-54명	382	504	188 (198)	491	523	307 (154)	3,391
73-81명	373	443	228 (261)	431	449	278 (226)	2,798
93-101명	281	350	140 (105)	328	357	214 (90)	1,649
120-128명	380	490	201 (34)	403	496	215 (32)	1,802
138-146명	149	122	131 (19)	158	120	138 (18)	486
165명이상	235	272	206 (29)	273	275	231 (25)	1,228
F	2.6*			5.9***			
사회복지법인							
16-20명	174	313	0 (23)	571	307	553 (7)	1,059
46-54명	447	760	129 (133)	733	860	427 (81)	5,722
73-81명	366	633	105 (133)	567	713	325 (86)	3,463
93-101명	341	727	90 (77)	525	849	265 (50)	5,224
120-128명	346	954	62 (25)	541	1,159	163 (16)	4,788
138-146명	180	276	64 (26)	261	300	122 (18)	934
165명이상	77	170	4 (39)	143	211	81 (21)	870
F	2.1*			2.2*			
가정							
16~20명	202	557	0 (9,758)	587	822	306 (3,360)	10,566
민간							
16-20명	189	626	0 (787)	713	1,051	303 (209)	6,450
46-54명	165	554	0 (933)	403	807	180 (383)	9,677
73-81명	134	319	0 (611)	297	420	164 (277)	2,983
93-101명	113	270	0 (317)	239	352	108 (150)	2,930
120-128명	188	639	6 (156)	366	858	104 (80)	5,532
138-146명	230	754	0 (84)	522	1,074	152 (37)	5,932
165명이상	71	259	0 (231)	164	374	77 (100)	3,526
F	2.7*			10.4***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5$, *** $p < .001$

라.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 (항)

어린이집 관리운영비에는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가 포함된다.²²⁾ 전체 어린이집의 월평균 아동 1인당 관리운영비는 월

22) 각 항목별로 포함되는 내역은 〈표 IV-1-1〉 참조.

86,000원 수준이다.²³⁾ 어린이집 유형별로 가정어린이집이 10만원대로 가장 높고, 다음이 민간어린이집 73,206원, 사회복지법인 67,900원이다(표 IV-3-17 참조).

〈표 IV-3-17〉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향)관리운영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단위: 원(개소)	
				(수)	최대값
전체	86,003	36,960	82,040	(41,031)	399,617
국공립	50,827	22,204	45,793	(2,218)	237,080
사회복지법인	67,900	29,123	62,605	(1,403)	311,557
법인단체등	59,093	28,701	55,387	(841)	285,505
민간	73,206	28,600	69,356	(13,988)	399,617
가정	101,172	35,742	97,454	(22,008)	394,034
직장	30,843	39,384	20,730	(459)	265,724
부모협동	55,625	35,068	45,059	(114)	202,443
F	1,997.1***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표 IV-3-18〉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향)관리운영비

구분	국공립					법인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최대값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16-20명	75,901	37,863	72,721	(44)	169,910	73,373	58,360	71,569	(23)	222,101
46-54명	50,664	16,671	47,025	(197)	104,530	76,234	29,289	71,634	(133)	194,135
73-81명	43,049	11,797	41,069	(261)	91,281	60,075	19,465	56,997	(133)	126,036
93-101명	42,752	13,074	39,379	(105)	80,090	54,486	18,871	50,975	(77)	114,876
120-128명	38,427	8,124	38,238	(34)	60,906	45,913	12,705	46,057	(25)	64,593
138-146명	40,144	11,093	38,263	(19)	67,287	55,148	16,356	60,334	(25)	85,832
165명이상	34,387	7,536	33,434	(27)	47,892	49,674	13,765	48,451	(39)	76,369
F	34.1***					12.7***				
민간						가정				
16-20명	91,262	33,572	89,500	(782)	244,806	94,112	25,784	93,606	(9,696)	265,481
46-54명	67,138	21,577	65,655	(929)	166,183					
73-81명	62,707	19,662	62,166	(611)	184,521					
93-101명	59,246	17,098	58,895	(316)	146,437					
120-128명	59,494	18,871	57,439	(156)	161,264					
138-146명	61,424	18,480	58,591	(83)	111,928					
165명이상	59,175	18,337	58,378	(228)	130,095					
F	137.6***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23) 2013년 기준 어린이집재무회계 자료에서 관리운영비 지출 미기재 어린이집 극히 소수임.

어린이집 유형 및 시설규모별로 아동 1인당 월평균 관리운영비를 보면, 국공립은 20인 이하가 75,901원에서 77인에서 142인까지가 4만원 내외 수준을 보이다가 164인 34,000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50인 이하가 73,000원이 넘고, 99인 이하와 142인이 55,000원 내외, 124인과 165인 이상은 4만원대이다.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은 94,112원으로 높다. 민간어린이집은 20인 이하 91,262원을 제외하고 대체로 아동 1인당 월평균 관리운영비가 5~6만원대로 규모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표 IV-3-18 참조).

2) 여비(목)

전체 어린이집에서 연간 지출된 여비를 연 인원으로 나누어 월 평균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509원이다.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가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1,800원 수준으로 비교적 높고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가 900원 수준이고 민간은 250원 수준으로 가장 낮다. 여비 지출이 없는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는 56%이므로 지출이 있는 어린이집만을 선별하여 보면 평균은 국공립과 직장이 2,000원 내외이고 민간은 600원 수준으로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가 컸다.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어린이집은 중앙값이 0원으로 과반수 이상이 연간 여비 지출 기록이 없다(표 IV-3-19 참조).

〈표 IV-3-19〉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여비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전체	509	1,483	0	(41,031)	1,151	2,058	377	(18,146)	26,335
국공립	1,756	2,426	886	(2,218)	1,913	2,472	1,083	(2,036)	24,237
사회복지법인	903	1,588	303	(1,403)	1,227	1,741	652	(1,032)	20,807
법인단체등	907	1,388	314	(841)	1,199	1,483	656	(636)	11,135
민간	253	840	0	(13,988)	581	1,196	180	(6,081)	21,019
가정	501	1,595	0	(22,008)	1,356	2,392	446	(8,134)	26,335
직장	710	1,664	0	(459)	1,752	2,241	837	(186)	11,886
부모협동	573	1,486	0	(114)	1,592	2,139	755	(41)	8,760
F	379.0***				147.7***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표 IV-3-20〉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여비

단위: 원(개소)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국공립							
16-20명	2,170	2,154	1,442 (44)	2,512	2,123	1,897 (38)	8,892
46-54명	1,893	2,358	1,126 (197)	2,049	2,388	1,336 (182)	18,692
73-81명	1,132	1,357	644 (261)	1,231	1,371	729 (240)	8,765
93-101명	942	1,063	582 (105)	1,009	1,070	648 (98)	4,361
120-128명	763	777	431 (34)	786	777	459 (33)	2,967
138-146명	1,116	1,654	705 (19)	1,178	1,679	741 (18)	7,267
165명 이상	695	777	557 (27)	722	779	557 (26)	2,656
F	8.2***			9.6***			
사회복지법인							
16-20명	624	921	0 (23)	1,435	883	1,440 (10)	2,961
46-54명	1,033	1,646	433 (133)	1,387	1,776	773 (99)	9,554
73-81명	1,081	1,842	451 (133)	1,370	1,977	792 (105)	14,965
93-101명	788	958	426 (77)	978	977	686 (62)	3,846
120-128명	512	655	194 (25)	641	675	343 (20)	2,269
138-146명	473	486	254 (25)	537	483	311 (22)	1,579
165명 이상	261	391	66 (39)	392	424	260 (26)	1,638
F	2.7*			2.9**			
가정							
16~20명	495	1,421	0 (9,696)	1,172	1,997	406 (4,094)	26,068
민간							
16-20명	275	1,008	0 (782)	928	1,682	253 (232)	11,213
46-54명	279	836	0 (929)	590	1,138	197 (440)	12,202
73-81명	207	568	11 (611)	388	732	120 (326)	6,363
93-101명	209	514	16 (316)	371	640	152 (178)	4,899
120-128명	134	272	20 (156)	230	324	82 (91)	1,559
138-146명	178	374	10 (83)	315	453	87 (47)	1,984
165명 이상	97	240	6 (228)	175	301	55 (126)	1,533
F	2.9**			11.9***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1$, ** $p < .05$, *** $p < .001$

지출이 있다는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시설유형 및 규모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2,500원 수준에서 720원 수준으로까지 낮아지고, 사회복지법인은 20인, 50인, 77인 기준은 1,400원 내외이고 97인 기준은 980원 정도이며 165명 이상은 4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민간어린이집은 20인 이하가 930원 정도이고, 혼원 증가와 함께 반비례하여 165인 이상은 175원에 이른다 (표 IV-3-20 참조).

3)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목)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에는 차량 운행 어린이집은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이를 포함하여 월평균 어린이집 수용비 및 수수료와 공공요금 지출은 아동 1인당 월평균 41,020원이다(표 IV-3-21 참조).²⁴⁾

〈표 IV-3-21〉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수용비

단위: 원(개소)

구분	전체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전체	41,020	18,847	38,518	(41,031)	296,156
국공립	38,054	14,253	35,404	(2,218)	159,543
사회복지법인	35,443	16,248	32,385	(1,403)	171,427
법인단체등	32,692	15,485	30,875	(841)	194,591
민간	30,060	12,857	27,827	(13,988)	260,233
가정	49,454	18,142	46,661	(22,008)	296,156
직장	20,273	28,229	3,217	(459)	201,332
부모협동	29,037	21,150	26,492	(114)	198,465
F	2,227.5***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어린이집 유형별로 가정어린이집이 각각 49,000원대로 가장 높고, 다음이 국공립으로 38,000원대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지출이 없는 어린이집이 절반에 가까워서 전체 평균이 20,273원이나 지출이 있는 경우만 산출하면 39,596원으로 2만 원 가까이 상승한다(표 IV-3-21 참조).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아동 1인당 월평균 수용비 및 수수료와 공공요금은 국공립이 20인 54,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모가 대체로 3만원 내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혼원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인 41,687원에서 124인 24,901원에 이른다. 그러나 142인이 29,000원 정도까지 오르다가 다시 떨어진다. 민간어린이집도 20인 37,591원을 제외하고 대체로 2만원 대 수준이다. 142인을 제외하고 50인 27,870원에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반비례로 감소하여 165인 이상 22,086원에 이른다(표 IV-3-22 참조).

24) 지출이 없다는 비율이 0.5%로 소수여서 지출이 있다는 어린이집만 산출하여도 평균값은 전체 평균과 차이가 거의 없음.

<표 IV-3-22>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수용비

단위: 원(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16-20명	54,019	25,664	54,926	(44)	115,412	41,687	38,175	37,335
46-54명	37,040	10,078	36,078	(197)	67,275	39,487	14,943	35,326
73-81명	32,815	8,382	31,856	(261)	73,203	30,515	9,191	29,910
93-101명	33,825	10,205	32,403	(105)	75,985	27,297	8,436	25,948
120-128명	29,751	7,797	28,677	(34)	55,337	24,901	8,323	24,865
138-146명	29,699	5,254	30,197	(19)	39,668	28,973	12,162	26,589
165명이상	30,717	7,403	28,481	(27)	45,427	24,778	9,000	21,114
F	28.0***				13.1***			
민간	가정							
16-20명	37,591	13,993	35,750	(782)	102,413	44,139	12,260	43,096 (9,696)
46-54명	27,870	9,591	27,046	(929)	79,083			
73-81명	25,181	7,935	23,914	(611)	58,232			
93-101명	23,631	7,563	22,790	(316)	73,045			
120-128명	22,979	6,480	22,251	(156)	50,869			
138-146명	23,942	7,748	21,566	(83)	46,700			
165명이상	22,086	8,424	20,688	(228)	98,822			
F	152.3***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4) 연료비

난방 및 취사 등에 사용한 연료비는 아동 1인당 월평균 1,979원이고, 지출이 있다는 어린이집만 산출한 경우 평균 3,962원이다. 난방 및 취사 등을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경우,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으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는 비율이 50%를 차지한다.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이 각각 4,519원, 4,061원이고, 다음이 부모협동으로 3,519원, 국공립 3,246원 순이다. 직장어린이집이 1,334원으로 가장 낮다(표 IV-3-23 참조).

지출이 있는 경우만을 산출하면, 사회복지법인은 전체 평균과 차이가 거의 없으나 부모협동과 직장 어린이집은 6천원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3~4천원대로 늘어난다. 가정과 직장 어린이집은 중앙값이 0으로 절반 이상이 연료비를 지출하지 않으므로 평균 차이가 크다.

2013년 기준 어린이집이 지출한 아동 1인당 월평균 연료비를 어린이집 규모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현원 20인, 50인, 124인, 142인 기준이 평균 3천원대

이고, 77인과 99인 기준은 2,700원대, 164인 이상이 되면 2천원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다. 사회복지법인은 현원 규모 77인까지는 4천원 대를 나타내지만, 그 이상 규모는 3천원대 이하로 낮아진다. 민간어린이집은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으나 20인 이하 2,161원을 제외하고 아동 1인당 평균 1,500~1,900원 선이다.

〈표 IV-3-23〉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연료비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전체	1,979	3,527	0 (41,031)	3,962	4,130	2,968 (20,490)	80,370	
국공립	3,246	4,224	1,626 (2,218)	4,935	4,335	4,340 (1,459)	63,663	
사회복지법인	4,519	4,526	3,464 (1,403)	4,922	4,509	3,885 (1,288)	41,995	
법인단체등	4,061	4,381	2,650 (841)	5,337	4,291	4,713 (640)	25,224	
민간	1,911	2,990	531 (13,988)	3,122	3,290	2,249 (8,563)	48,417	
가정	1,658	3,485	0 (22,008)	4,350	4,489	3,443 (8,386)	80,370	
직장	1,334	5,132	0 (459)	6,654	9,836	2,943 (92)	55,519	
부모협동	3,519	4,874	714 (114)	6,471	4,960	5,899 (62)	19,904	
F	265.1***			122.8***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표 IV-3-24〉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연료비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국공립								
16-20명	3,666	5,488	745 (44)	5,761	5,954	4,338 (28)	23,941	
46-54명	3,361	3,961	1,690 (197)	4,979	3,897	4,505 (133)	19,606	
73-81명	2,700	3,383	1,152 (261)	4,296	3,369	3,772 (164)	22,582	
93-101명	2,777	3,517	996 (105)	4,418	3,525	3,793 (66)	15,532	
120-128명	3,716	3,202	3,472 (34)	5,054	2,656	5,664 (25)	9,203	
138-146명	3,345	3,290	2,347 (19)	4,889	2,839	5,549 (13)	9,322	
165명 이상	1,871	2,930	0 (27)	4,591	2,930	3,143 (11)	9,883	
F	1.5			0.9				
사회복지법인								
16-20명	4,047	5,260	1,121 (23)	6,649	5,310	6,660 (14)	19,071	
46-54명	4,845	5,073	3,706 (133)	5,370	5,070	4,355 (120)	32,788	
73-81명	4,126	3,554	3,626 (133)	4,355	3,511	3,835 (126)	15,872	
93-101명	3,713	3,066	3,129 (77)	3,864	3,033	3,210 (74)	14,203	
120-128명	3,144	2,119	2,683 (25)	3,275	2,058	2,889 (24)	7,132	
138-146명	2,930	3,522	1,818 (25)	3,330	3,575	2,017 (22)	15,534	
165명 이상	3,358	2,560	3,187 (39)	3,638	2,464	3,326 (36)	11,020	
F	1.7			3.1**				

(표 IV-3-24 계속)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가정 16~20명	1,369	2,635	0	(9,696)	3,618	3,197	3,051	(3,668)	28,524
민간									
16-20명	2,161	3,627	215	(782)	4,102	4,125	2,903	(412)	35,154
46-54명	1,782	2,662	611	(929)	2,844	2,879	2,027	(582)	21,665
73-81명	1,564	2,188	536	(611)	2,426	2,310	1,857	(394)	16,950
93-101명	1,699	2,144	724	(316)	2,397	2,194	1,931	(224)	15,202
120-128명	1,450	2,007	497	(156)	2,038	2,114	1,378	(111)	8,538
138-146명	1,936	2,611	869	(83)	2,551	2,725	1,826	(63)	11,963
165명이상	1,773	2,415	785	(228)	2,350	2,525	1,690	(172)	22,877
F	3.5 ^{**}				16.9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1$, *** $p < .001$

5) 차량비

어린이집 재무회계에서 차량비는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이다. 이와 같은 차량비는 지출이 있다는 경우가 66% 정도이다. 지출이 있다는 경우에 아동 1인당 평균은 12,448원이다.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 모든 아동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지만 전체 아동으로 평균을 산출하였다.

<표 IV-3-25>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차량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단위: 원(개소)	
					최대값	
전체	12,448	10,532	10,343	(27,154)	118,899	
국공립	11,261	11,697	7,585	(1,008)	87,081	
사회복지법인	16,079	13,037	12,833	(1,315)	86,704	
법인단체등	13,927	12,359	10,772	(700)	108,206	
민간	10,040	8,580	8,270	(12,271)	118,899	
가정	14,583	11,228	13,322	(11,767)	114,427	
직장	10,993	11,397	8,494	(51)	45,114	
부모협동	9,407	11,614	4,832	(42)	60,000	
F	229.7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농어촌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아동 1인당 비용이 16,079원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고 가정어린이집도 아동수가 적어

아동 1인당 차량비가 14,583원으로 비교적 높다(표 IV-3-25 참조).

차량 운행 비용을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로 구분하여 아동 1인당으로 산출하면 <표 IV-3-26>과 같다. 어린이집 유형 모두 현원에 따른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국공립어린이집 20인이 21,299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50인 12,109원으로 높다. 그 이상 규모는 6~8천원 대이고, 165인 이상 대규모가 되면 2천원대로 떨어진다. 사회복지법인은 현원 50인까지 2만원대로 높고, 99인까지 1만원 정도를 나타내다가 그 이상이 되면 6~7천원대로 낮아진다. 민간어린이집도 20인이 15,239원으로 가장 높으나 현원이 많아집에 따라 감소하여 142인 5,498원에 이른다. 그러나 165인 이상이 되면 다시 6천원 대로 상승한다.

<표 IV-3-26>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차량비

단위: 원(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최대값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16-20명	21,299	17,453	20,013	(29)	80,675	24,444	13,945	24,304	(14)	49,107
46-54명	12,109	11,019	8,802	(92)	48,860	20,973	14,971	18,025	(126)	81,935
73-81명	8,748	8,395	6,350	(115)	43,226	12,397	9,145	10,483	(124)	50,954
93-101명	8,118	10,142	5,742	(38)	44,983	10,922	9,600	8,110	(73)	52,356
120-128명	6,263	7,960	3,845	(15)	27,705	7,748	6,696	6,677	(23)	24,693
138-146명	8,500	6,142	5,324	(9)	18,142	6,998	7,099	5,420	(24)	28,016
165명이상	2,803	3,308	2,071	(7)	9,656	7,863	7,745	6,300	(36)	38,007
F	7.5***				16.1***					
민간	가정									
16-20명	15,239	10,320	13,934	(619)	76,552	12,360	8,744	11,785	(5,644)	107,503
46-54명	8,456	7,012	6,918	(841)	57,858					
73-81명	7,418	6,624	5,844	(587)	51,770					
93-101명	7,369	6,609	6,172	(305)	48,014					
120-128명	6,647	6,686	4,607	(150)	40,836					
138-146명	5,498	6,095	3,885	(79)	37,873					
165명이상	6,262	6,902	3,794	(218)	37,038					
F	83.7***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6) 기타운영비(목)

기타운영비는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용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이 포함된다. 월 평균 기타운영비는 아동 1인당 34,258원이고, 지출이 있다는 경우가 89.2%이므로 이들만 대상으로 산출하면 평균 38,399원으로 상승한다.

〈표 IV-3-27〉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기타운영비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전체	34,258	26,617	31,784 (41,031)	38,399	25,201	35,135 (36,606)	263,358	
국공립	2,653	7,103	0 (2,218)	8,323	10,545	3,984 (707)	73,902	
사회복지법인	11,965	14,276	8,411 (1,403)	15,373	14,474	12,731 (1,092)	148,097	
법인단체등	9,840	13,120	3,402 (841)	14,171	13,658	10,721 (584)	102,272	
민간	32,175	21,705	30,322 (13,988)	34,044	20,852	31,531 (13,220)	263,358	
가정	41,763	27,453	39,912 (22,008)	44,335	26,192	41,739 (20,731)	255,444	
직장	7,305	21,147	0 (459)	17,196	29,745	4,396 (195)	161,454	
부모협동	19,030	25,314	5,201 (114)	28,175	26,301	22,326 (77)	105,122	
F	1,446.0***			780.9***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표 IV-3-28〉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기타운영비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국공립								
16-20명	2,009	6,262	0 (44)	8,838	10,969	5,419 (10)	34,202	
46-54명	2,714	8,760	0 (197)	9,722	14,461	3,982 (55)	73,902	
73-81명	2,548	5,794	0 (261)	7,308	7,861	4,736 (91)	35,693	
93-101명	2,270	5,997	0 (105)	8,218	9,108	3,788 (29)	31,481	
120-128명	1,435	3,734	0 (34)	4,878	5,698	2,801 (10)	16,517	
138-146명	1,959	4,796	0 (19)	5,317	6,941	3,109 (7)	20,343	
165명이상	377	1,403	0 (27)	2,037	2,928	588 (5)	7,007	
F	0.7			0.9				
사회복지법인								
16-20명	12,137	24,963	0 (23)	25,377	31,645	25,953 (11)	110,471	
46-54명	11,000	12,376	6,316 (133)	15,083	12,181	13,729 (97)	49,261	
73-81명	12,794	13,475	10,426 (133)	14,927	13,416	12,645 (114)	79,765	
93-101명	12,333	11,990	9,682 (77)	15,074	11,587	11,821 (63)	49,358	
120-128명	10,227	7,615	10,469 (25)	11,116	7,275	11,174 (23)	24,457	
138-146명	16,053	12,378	16,533 (25)	16,053	12,378	16,533 (25)	44,841	
165명이상	14,018	12,258	9,489 (39)	15,186	12,037	12,297 (36)	42,039	
F	0.8			1.5				
가정								
16~20명	40,915	22,115	40,505 (9,696)	42,293	21,148	41,324 (9,380)	212,786	
민간								
16-20명	39,172	28,245	36,257 (782)	42,782	26,772	38,814 (716)	176,432	
46-54명	29,552	18,300	28,565 (929)	31,268	17,339	29,641 (878)	111,408	
73-81명	28,629	17,335	27,941 (611)	29,952	16,574	28,847 (584)	119,936	
93-101명	26,594	14,704	25,803 (316)	27,285	14,245	26,126 (308)	101,564	
120-128명	28,540	17,011	28,034 (156)	29,099	16,694	28,225 (153)	119,089	
138-146명	30,135	14,253	30,379 (83)	30,135	14,253	30,379 (83)	67,764	
165명이상	29,233	15,265	29,717 (228)	30,296	14,464	30,774 (220)	81,222	
F	25.8***			40.4***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가정어린이집이 전체 41,763원, 지출이 있는 경우 44,335원으로 비교적 높고, 다음은 민간으로 각각 32,175원, 34,044원이고, 사회복지법인이 각각 11,965원, 15,373원이다.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은 중앙값이 0으로 지출이 없다는 시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표 IV-3-27 참조).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로 아동 1인당 월평균 기타운영비를 산출한 결과는 <표 IV-3-28>에 제시하였다. 국공립은 99인까지 평균 2천원대, 120인 이상은 1천 원대, 165인 이상이 되면 377원으로 급감한다. 사회복지법인은 현원에 따른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대체로 1만원 대이다. 142인이 16,000원으로 가장 높다. 민간어린이집도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으나 20인이 39,172원으로 가장 높고, 그 이상 규모는 3만원 내외 수준이다. 99인이 26,594원으로 가장 낮다.

마. 사업비

1) 사업 운영비 (항)

어린이집 재무회계에서 사업운영비는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기타 필요경비, 특별활동비 지출의 합이다. 2013년 기준, 사업운영비는 아동 1인당 평균 111,555원이다. 지출이 없다는 어린이집은 없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직장어린이집이 158,760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민간과 국공립이 12만원 대이며,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가 11만원 선이고, 가정과 부모협동이 9만원 정도이다.

<표 IV-3-29>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항)사업운영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단위: 원(개소)
					최대값
전체	111,555	38,907	105,043	(41,198)	394,080
국공립	128,799	28,521	128,551	(2,227)	394,080
사회복지법인	115,680	34,388	114,160	(1,411)	250,847
법인단체등	114,065	38,601	114,845	(849)	244,662
민간	129,414	44,364	125,435	(14,020)	337,394
가정	97,268	28,527	93,763	(22,120)	379,349
직장	158,760	50,809	156,989	(457)	360,003
부모협동	91,329	30,879	88,932	(114)	259,856
F	1,428.8***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2013년 기준 아동 1인당 사업운영비를 어린이집 규모별로 보면, 국공립은 20인이 10만원, 50인 12만원 선이고, 77인 이상으로 규모가 늘어나면 13만원대로 늘어난다. 사회복지법인도 20인이 72,893원으로 가장 낮고, 50인 10만원, 77인과 99인은 12만원, 그 이상 규모는 13만원 선으로 늘어난다. 가정어린이집은 10만원 선이고, 민간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과 동일하게 20인이 10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고, 이후 현원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65인 이상 규모는 16만원 대까지 올라간다(표 IV-3-30 참조).

〈표 IV-3-30〉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항)사업운영비

단위: 원(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최대값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16-20명	105,881	41,610	108,580	(45)	203,446	72,893	39,824	70,876	(23)	198,203
46-54명	128,265	29,307	128,679	(197)	208,167	107,019	28,783	104,036	(132)	209,685
73-81명	131,629	23,608	129,261	(261)	193,214	121,892	34,703	120,114	(133)	250,847
93-101명	135,590	20,847	135,733	(105)	197,153	125,788	29,380	123,614	(77)	229,352
120-128명	133,405	22,959	127,133	(34)	175,347	139,867	27,253	132,052	(25)	189,057
138-146명	136,235	25,701	137,990	(19)	183,331	137,535	29,822	136,756	(26)	182,928
165명이상	135,442	22,342	134,822	(29)	173,149	137,128	33,819	132,964	(39)	189,800
F	7.8***				17.4***					
민간	가정									
16-20명	103,214	38,351	97,016	(786)	243,415	101,778	28,630	98,247	(9,736)	286,384
46-54명	136,486	43,639	134,261	(933)	281,627					
73-81명	147,473	42,970	144,613	(612)	289,715					
93-101명	149,009	38,770	147,682	(315)	337,394					
120-128명	155,407	35,386	152,312	(156)	250,206					
138-146명	158,067	35,181	155,893	(84)	233,834					
165명이상	166,175	43,902	159,363	(231)	279,233					
F	126.6***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2) 교재교구비 (목)

어린이집 재무회계에서 교재교구비는 교재교구 구입 및 제작비이다. 일반적으로 교재교구는 보육활동에 소요되는 교구, 교재, 소모품으로 구분되는데, 재무회계에서는 5만원 미만으로 제한되고 그 이상은 자산취득으로 분류된다.

어린이집 재무회계 상의 교재교구비는 아동 1인당 평균 11,834원이다.²⁵⁾ 어린

25) 지난 1년간 교재교구비를 지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3% 미만이며, 분석 대상 어린이집의

이집 유형별 차이는 국공립이 21,130원으로 가장 높고, 사회복지법인이 각각 19,000원, 법인단체등 18,000원, 민간 15,000원 선으로 차이를 보였다. 가정어린이집이 각각 8,000원 내외로 가장 낮게 산출되었다(표 IV-3-31 참조).

〈표 IV-3-31〉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교재교구비

단위: 원(개소)

구분	전체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전체	11,834	10,176	9,021	(41,198)	186,215
국공립	21,130	10,922	20,231	(2,227)	114,127
사회복지법인	19,404	11,869	18,323	(1,411)	107,736
법인단체등	18,574	11,450	17,614	(849)	62,097
민간	15,395	10,756	13,941	(14,020)	175,034
가정	7,887	6,931	6,523	(22,120)	153,298
직장	12,284	18,917	737	(457)	186,215
부모협동	12,322	8,652	10,623	(114)	42,969
F	1,669.3***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표 IV-3-32〉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교재교구비

단위: 원(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16-20명	16,822	12,211	14,639	(45)	203,446	12,659	22,700	7,850 (23)
46-54명	20,592	10,752	20,088	(197)	208,167	18,054	11,832	16,246 (132)
73-81명	22,273	8,965	21,569	(261)	193,214	20,855	11,378	19,422 (133)
93-101명	23,536	9,518	22,006	(105)	197,153	19,916	10,596	18,993 (77)
120-128명	18,819	8,466	17,764	(34)	175,347	22,767	11,293	24,678 (25)
138-146명	23,439	8,484	21,506	(19)	183,331	21,845	8,227	19,741 (26)
165명이상	20,705	10,168	19,322	(29)	173,149	22,816	12,021	20,693 (39)
F	3.6**					2.7*		
민간								가정
16-20명	10,119	9,999	7,120	(786)	243,415	7,887	6,931	6,523 (22,120)
46-54명	16,627	10,414	15,663	(933)	281,627			
73-81명	19,748	10,106	19,516	(612)	289,715			
93-101명	20,154	9,637	19,541	(315)	337,394			
120-128명	21,559	9,774	20,975	(156)	250,206			
138-146명	22,670	10,393	23,373	(84)	233,834			
165명이상	22,806	10,444	23,408	(231)	279,233			
F	95.1***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5, ** p < .01, *** p < .001

0.97%임.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 아동 1인당 교재교구비를 보면, 어린이집 유형 모두 20인 정도의 소규모 어린이집이 교재교구비 지출 액수가 가장 낮다. 국공립은 20인 규모 16,822원과 124인 규모 18,819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모는 2만원대 선이다. 사회복지법인도 20인이 12,659원으로 가장 낮고, 50인과 99인 기준 어린이집은 2만원이 채 못되며, 나머지 규모는 2만원 수준이다. 민간어린이집은 20인 10,119원에서 142인 22,670원으로 현원이 늘어날수록 교재교구비 지출규모도 커진다(표 IV-3-32 참조).

3) 급간식비 (목)

2013년 기준, 아동 1인당 월평균 급간식비는 52,971원이다.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를 보면, 부모협동이 62,017원으로 가장 높다. 다음은 가정어린이집 57,161원, 국공립어린이집 55,771원, 직장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각각 47,444원, 47,748원, 법인단체등과 민간 어린이집이 46,681원, 46,930원 순이다.

〈표 IV-3-33〉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급간식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단위: 원(개소)	
				(수)	최대값
전체	52,971	11,993	52,387	(41,198)	189,076
국공립	55,771	10,701	55,611	(2,227)	137,660
사회복지법인	47,748	11,375	46,940	(1,411)	121,616
법인단체등	46,681	13,562	46,900	(849)	184,919
민간	46,930	9,428	46,422	(14,020)	141,247
가정	57,161	11,022	56,161	(22,120)	176,217
직장	47,444	27,957	39,809	(457)	189,076
부모협동	62,017	16,281	59,664	(114)	133,653
F	1,415.1***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어린이집 규모별 아동 1인당 급간식비를 보면, 국공립은 20인 규모가 56,479원에서 142인 52,614원으로 현원 증가에 따라 감소하다가 165인 이상 되면 55,699원으로 다소 증가한다. 사회복지법인은 20인 37,912원으로 가장 낮지만, 50인 48,298원에서 124인 42,680원으로 감소한다. 165인 이상 규모는 45,004원까지 증가한다. 민간도 국공립과 유사하게 20인이 50,787원으로 가장 높고,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165인 이상 규모는 44,460원이 된다(표 IV-3-34 참조).

〈표 IV-3-34〉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급간식비

단위: 원(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최대값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16-20명	56,479	18,561	56,960	(45)	95,047	37,912	22,487	34,854	(23)	95,215
46-54명	54,178	10,477	54,100	(197)	85,744	48,298	10,606	47,911	(132)	85,978
73-81명	54,639	8,976	54,544	(261)	82,113	45,436	8,065	44,766	(133)	69,272
93-101명	54,605	8,827	54,101	(105)	77,586	45,317	8,817	44,930	(77)	83,302
120-128명	53,569	9,362	53,410	(34)	83,133	42,680	7,731	42,645	(25)	56,615
138-146명	52,614	6,698	50,299	(19)	66,701	43,463	7,920	43,763	(26)	62,495
165명이상	55,699	8,823	57,436	(29)	69,764	45,004	8,604	44,847	(39)	60,988
F	0.5					4.3***				
민간						가정				
16-20명	50,787	11,215	50,968	(786)	119,784	55,035	8,474	54,569	(9,736)	144,265
46-54명	45,358	8,920	44,899	(933)	122,672					
73-81명	43,790	7,849	43,962	(612)	70,704					
93-101명	43,471	6,894	43,233	(315)	62,560					
120-128명	42,426	6,732	43,237	(156)	59,988					
138-146명	43,120	6,632	43,148	(84)	63,555					
165명이상	44,460	7,856	44,556	(231)	74,381					
F	55.1***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이상과 같이 아동 1인당 급간식비는 규모가 커질수록 1인당 가격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를 중심으로 보육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게 산출되었다. 이는 어린이집에서 1인당 가격에 맞추어 총액 기준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4) 행사비 (목)

아동 1인당 월평균 행사비는 전체 어린이집이 평균 4,069원이고, 지출이 있는 89.6%의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산출하면 평균 4,542원으로 상승한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지출이 없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어서 평균 차이가 거의 없다. 직장 어린이집이 8만원 내외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5천원 내외로 차이가 매우 크다. 국공립이 평균 6,173원으로 가장 높고,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등,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4천원대, 가정이 3천원 선이며, 민간어린이집이 2천원대로 가장 낮다 (표 IV-3-35 참조).

〈표 IV-3-35〉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행사비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전체	4,069	11,551	2,354 (41,198)	4,542	12,114	2,749 (36,913)	294,978	
국공립	6,173	4,618	5,169 (2,227)	6,221	4,604	5,213 (2,210)	51,984	
사회복지법인	4,592	3,970	3,658 (1,411)	4,709	3,951	3,854 (1,376)	37,111	
법인단체등	4,278	3,806	3,355 (849)	4,512	3,771	3,516 (805)	32,359	
민간	2,560	3,016	1,672 (14,020)	2,900	3,053	2,025 (12,375)	60,339	
가정	3,209	3,203	2,418 (22,120)	3,623	3,176	2,828 (19,594)	35,196	
직장	79,734	72,278	76,757 (457)	80,616	72,186	79,840 (452)	294,978	
부모협동	4,122	4,777	2,418 (114)	4,653	4,826	3,222 (101)	22,126	
F	6,509.1***			5,987.3***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표 IV-3-36〉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행사비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국공립								
16-20명	9,825	10,620	5,985 (45)	9,825	10,620	5,985 (45)	51,984	
46-54명	6,414	4,510	5,705 (197)	6,447	4,498	5,710 (196)	30,393	
73-81명	6,092	3,762	5,211 (261)	6,163	3,726	5,365 (258)	19,417	
93-101명	5,583	3,928	4,885 (105)	5,583	3,928	4,885 (105)	27,385	
120-128명	4,836	3,849	4,088 (34)	4,983	3,811	4,250 (33)	15,128	
138-146명	4,027	3,164	2,946 (19)	4,027	3,164	2,946 (19)	12,646	
165명이상	4,135	3,541	2,889 (29)	4,135	3,541	2,889 (29)	15,623	
F	6.9***			6.8***				
사회복지법인								
16-20명	5,436	5,751	3,182 (23)	6,580	5,698	6,525 (19)	16,910	
46-54명	4,298	3,459	3,479 (132)	4,331	3,452	3,481 (131)	17,214	
73-81명	5,464	3,664	4,943 (133)	5,634	3,589	5,117 (129)	16,661	
93-101명	3,979	2,866	3,973 (77)	4,032	2,848	3,973 (76)	18,459	
120-128명	4,285	3,395	2,960 (25)	4,285	3,395	2,960 (25)	11,496	
138-146명	3,899	3,760	3,007 (26)	4,055	3,751	3,307 (25)	15,215	
165명이상	4,276	2,814	3,344 (39)	4,276	2,814	3,344 (39)	13,439	
F	2.3*			3.5**				
가정								
16~20명	3,086	3,119	2,289 (9,736)	3,509	3,095	2,721 (8,563)	32,626	
민간								
16-20명	2,474	3,146	1,649 (786)	2,872	3,216	2,070 (677)	30,841	
46-54명	2,537	2,899	1,597 (933)	2,880	2,924	1,975 (822)	20,740	
73-81명	2,567	2,869	1,780 (612)	2,805	2,886	2,011 (560)	32,227	
93-101명	2,941	3,228	1,943 (315)	3,250	3,242	2,465 (285)	22,369	
120-128명	2,678	3,479	1,501 (156)	2,942	3,539	1,731 (142)	22,170	
138-146명	3,125	3,621	2,249 (84)	3,595	3,660	2,691 (73)	20,148	
165명이상	2,761	2,785	1,956 (231)	3,096	2,767	2,517 (206)	17,923	
F	1.5			1.4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5, ** p < .01, *** p < .001

어린이집 규모별 아동 1인당 행사비는, 국공립어린이집은 20인이 9,825원으로 가장 높고, 협원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142인이 되면 4,027원에 이른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규모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20인과 77인 규모가 각각 5,400원 수준으로 비교적 높고, 142인이 3,899원으로 가장 낮다. 나머지 규모는 4,000~4,200원 수준이다. 민간어린이집은 전체 평균은 규모별 차이가 거의 없이 2,500~3,000원 규모이고 지출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지만 평균 비용도 2,800~3,600원 수준이다(표 IV-3-36 참조).

5) 특별활동비(목)

2013년 기준으로 특별활동비를 지출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20% 정도에 이른다. 아동 1인당 특별활동비는 전체 어린이집이 평균 25,180원이고, 지출이 있는 어린이집만 산출하면 30,714원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이 각각 평균 39,417원, 41,651원이고,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각각 28,996원, 32,292원, 국공립이 각각 26,407원, 28,219원, 법인단체 등이 각각 26,585원, 29,466원 순이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이 7,940원, 18,472원으로 낮다. 영아 보육 중심의 가정어린이집도 특별활동비로 1인당 16,067원, 22,034원 정도를 지출한다. 부모협동과 직장 어린이집은 중앙값이 0으로 과반수 이상이 특별활동비를 지출하지 않으므로 전체 평균과 지출이 있는 경우만 산출한 값의 차이가 크다(표 IV-3-37 참조).

〈표 IV-3-37〉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특별활동비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전체	25,180	22,713	21,811	(41,198)	30,714	21,431	26,177	(33,775)	181,235
국공립	26,407	14,924	25,853	(2,227)	28,219	13,670	26,845	(2,084)	104,674
사회복지법인	28,996	20,915	26,996	(1,411)	32,292	19,511	30,007	(1,267)	106,343
법인단체등	26,585	18,249	25,114	(849)	29,466	16,857	27,464	(766)	106,144
민간	39,417	25,979	36,054	(14,020)	41,651	24,902	37,741	(13,268)	181,235
가정	16,067	15,609	14,705	(22,120)	22,034	14,235	20,442	(16,130)	157,736
직장	13,432	19,514	0	(457)	29,092	19,212	26,008	(211)	131,552
부모협동	7,940	16,873	0	(114)	18,472	21,717	10,373	(49)	106,438
F	2,003.5***				1,254.6***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표 IV-3-38〉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특별활동비

단위: 원(개소)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국공립							
16-20명	11,479	11,888	9,395 (45)	17,219	10,592	14,283 (30)	40,339
46-54명	26,672	14,009	26,721 (197)	27,801	13,154	27,099 (189)	63,569
73-81명	30,135	13,786	27,746 (261)	30,485	13,474	28,061 (258)	71,018
93-101명	31,106	11,500	31,458 (105)	31,106	11,500	31,458 (105)	67,225
120-128명	30,638	14,231	29,901 (34)	30,638	14,231	29,901 (34)	60,820
138-146명	32,046	11,420	32,096 (19)	32,046	11,420	32,096 (19)	54,520
165명 이상	35,143	14,632	37,520 (29)	36,398	13,216	37,833 (28)	59,806
F	15.5***			7.1***			
사회복지법인							
16-20명	11,228	10,838	10,663 (23)	16,140	9,365	18,628 (16)	28,528
46-54명	22,671	16,476	21,992 (132)	26,023	14,966	24,065 (115)	76,706
73-81명	34,107	19,991	33,714 (133)	35,718	18,991	36,651 (127)	106,343
93-101명	38,654	17,449	37,278 (77)	38,654	17,449	37,278 (77)	87,677
120-128명	51,128	15,531	52,342 (25)	51,128	15,531	52,342 (25)	74,534
138-146명	47,076	22,731	46,944 (26)	47,076	22,731	46,944 (26)	96,478
165명 이상	43,550	21,114	43,292 (39)	45,904	18,961	43,393 (37)	77,541
F	22.6***			16.7***			
가정							
16~20명	19,317	16,267	17,858 (9,736)	23,118	15,126	20,939 (8,135)	157,736
민간							
16-20명	23,434	19,096	21,694 (786)	27,698	17,687	24,650 (665)	129,746
46-54명	44,168	25,857	40,157 (933)	45,037	25,349	40,613 (915)	181,235
73-81명	51,000	27,190	47,801 (612)	51,335	26,961	47,906 (608)	163,742
93-101명	51,014	24,637	49,242 (315)	51,670	24,099	49,562 (311)	174,751
120-128명	52,026	21,582	49,418 (156)	52,702	20,881	49,919 (154)	125,964
138-146명	49,345	23,162	45,525 (84)	49,345	23,162	45,525 (84)	135,751
165명 이상	54,694	25,678	53,923 (231)	55,904	24,619	54,886 (226)	148,499
F	116.1***			81.2***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 세출 회계자료.

*** $p < .001$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로 아동 1인당 월평균 특별활동비를 분석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인이 11,479원으로 가장 낮고, 50인은 26,672원 정도이며, 50인 이상 규모는 3만원대 정도의 수준이다. 사회복지법인은 20인이 1만원 정도이고, 50인 2만원 대이며, 그 이상 규모는 3~5만원 대로 올라간다. 민간어린이집은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은 5만원 미만이지만 70인 규모 이상부터는 대체로 5만원 이상이다(표 IV-3-38 참조).

6) 기타 필요경비(목)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의 기타필요경비를 지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 10% 정도를 차지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전체 어린이집이 아동 1인당 평균 17,500원이고, 지출이 있는 어린이집은 평균 17,852원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각각 25,112원, 25,524원으로 가장 높다. 다음은 국공립으로 19,318원, 19,021원 정도이다. 가정어린이집도 각각 12,944원, 13,191원 정도를 지출한다. 부모협동이 각각 4,929원, 5,762원으로 가장 낮다. 직장어린이집은 과반수 이상이 지출이 없으므로 중앙값이 0이고 전체 평균과 지출이 있는 경우의 평균 차이가 크다(표 IV-3-39 참조).

〈표 IV-3-39〉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기타 필요경비(목)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전체	17,500	19,358	10,795 (41,198)	17,852	19,637	10,926 (36,625)	166,697	
국공립	19,318	14,577	15,079 (2,227)	19,021	14,868	14,775 (709)	86,904	
사회복지법인	14,940	14,463	10,940 (1,411)	15,320	14,367	11,228 (1,093)	85,521	
법인단체등	17,947	18,020	12,233 (849)	18,570	18,224	12,748 (587)	94,824	
민간	25,112	23,374	18,009 (14,020)	25,524	23,407	18,496 (13,226)	166,697	
가정	12,944	15,485	6,516 (22,120)	13,191	15,523	6,793 (20,738)	120,547	
직장	5,866	10,696	0 (457)	5,695	9,354	750 (195)	57,788	
부모협동	4,929	9,693	145 (114)	5,762	10,819	1,084 (77)	62,732	
F	667.6***			606.9***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아동 1인당 월평균 기타 필요경비를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로 산출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20인이 11,277원으로 가장 낮고, 124인이 25,543원으로 가장 높다. 20인과 77인 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규모는 2만원대 수준이다. 사회복지법인은 20인이 5,659원으로 가장 낮고, 현원 증가와 함께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165인 이상은 21,483원 정도까지 올라간다. 민간어린이집도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정적으로 증가하여 20인 16,401원에서 165인 이상이 되면 41,455원에 이른다. 이는 규모가 클수록 유아 중심의 어린이집으로 필요경비가 많이 지출됨을 나타낸다(표 IV-3-40 참조).

〈표 IV-3-40〉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월 평균 지출: (목)기타 필요경비

단위: 원(개소)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국공립									
16-20명	11,277	13,092	6,669 (45)	11,703	10,292	13,621 (11)	32,466		
46-54명	20,410	15,356	16,262 (197)	19,615	16,531	13,799 (55)	68,421		
73-81명	18,490	12,118	15,800 (261)	17,797	12,082	14,299 (91)	55,321		
93-101명	20,760	14,849	15,273 (105)	22,045	16,642	16,027 (29)	61,907		
120-128명	25,543	17,619	20,537 (34)	29,268	27,377	23,325 (10)	86,904		
138-146명	24,110	18,192	15,832 (19)	22,574	19,176	14,891 (7)	52,177		
165명 이상	19,760	13,380	14,022 (29)	18,838	7,925	20,239 (5)	27,910		
F	4.4***		1.6						
사회복지법인									
16-20명	5,659	16,359	916 (23)	9,575	23,212	1,987 (11)	79,032		
46-54명	13,697	13,555	9,741 (132)	13,452	13,433	9,352 (96)	73,634		
73-81명	16,029	15,137	10,866 (133)	16,155	15,323	10,940 (114)	82,536		
93-101명	17,922	14,852	15,723 (77)	16,227	12,229	13,808 (63)	56,684		
120-128명	19,007	14,496	15,119 (25)	18,404	12,780	15,119 (23)	60,516		
138-146명	21,252	14,033	22,222 (26)	21,252	14,033	22,222 (26)	53,309		
165명 이상	21,483	15,011	17,845 (39)	21,645	15,421	17,360 (36)	67,464		
F	4.3***		2.4*						
가정									
16~20명	16,737	17,140	10,726 (9,736)	16,820	17,140	10,784 (9,379)	101,589		
민간									
16-20명	16,401	19,947	7,449 (786)	17,306	20,394	8,250 (719)	104,404		
46-54명	27,795	23,438	20,755 (933)	28,009	23,560	20,828 (878)	117,901		
73-81명	30,369	23,781	24,271 (612)	30,556	23,504	24,749 (583)	125,255		
93-101명	31,430	25,168	26,432 (315)	31,572	24,805	26,504 (307)	144,229		
120-128명	36,719	25,124	32,849 (156)	36,284	25,024	32,005 (153)	113,634		
138-146명	39,807	26,624	35,966 (84)	40,199	26,541	36,581 (83)	91,908		
165명 이상	41,455	29,471	36,474 (231)	41,592	29,582	36,649 (222)	158,887		
F	53.4***		45.9***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 세출 회계 자료.

* $p < .05$, *** $p < .001$

바. 설치비

1) 시설비(향)

시설비는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와 그 밖에 시설비(개·보수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밖에 자산의 취득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구성된다. 시설비 지출이 없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다.

〈표 IV-3-41〉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향)시설비

단위: 원(개소)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전체	13,086	23,773	6,829 (41,230)	14,294	24,496	7,823 (37,745)	638,512
국공립	22,961	25,304	16,560 (2,229)	23,138	25,320	16,782 (2,212)	456,301
사회복지법인	29,568	32,170	20,029 (1,410)	29,886	32,195	20,263 (1,395)	347,310
법인단체등	22,394	30,927	13,824 (848)	23,708	31,329	14,842 (801)	488,372
민간	13,001	25,676	7,003 (14,017)	13,803	26,246	7,629 (13,203)	635,318
가정	10,668	20,284	5,439 (22,152)	12,029	21,156	6,536 (19,646)	638,512
직장	17,908	30,263	9,307 (460)	20,750	31,661	11,813 (397)	355,660
부모협동	7,613	10,760	2,995 (114)	9,537	11,261	6,039 (91)	56,071
F	249.9 ^{***}			202.3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표 IV-3-42〉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향)시설비

단위: 원(개소)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국공립							
16-20명	22,865	29,016	11,380 (45)	23,928	29,257	13,839 (43)	137,997
46-54명	24,230	30,017	15,324 (199)	24,230	30,017	15,324 (199)	297,670
73-81명	21,668	16,324	17,152 (261)	21,668	16,324	17,152 (261)	98,912
93-101명	23,168	16,395	20,471 (105)	23,168	16,395	20,471 (105)	83,645
120-128명	19,052	12,659	14,926 (34)	19,052	12,659	14,926 (34)	62,387
138-146명	19,006	11,219	14,480 (19)	19,006	11,219	14,480 (19)	44,990
165명 이상	22,413	13,365	20,705 (29)	22,413	13,365	20,705 (29)	51,496
F	0.5			0.5			
사회복지법인							
16-20명	8,976	12,039	3,750 (23)	11,469	12,541	6,406 (18)	44,487
46-54명	29,633	27,997	19,468 (133)	29,857	27,983	19,826 (132)	152,087
73-81명	31,084	31,959	23,714 (133)	31,319	31,965	23,909 (132)	193,375
93-101명	28,469	19,899	23,223 (77)	28,469	19,899	23,223 (77)	76,103
120-128명	31,916	28,907	24,248 (25)	31,916	28,907	24,248 (25)	139,261
138-146명	20,724	20,099	16,052 (26)	20,724	20,099	16,052 (26)	101,793
165명 이상	24,308	16,780	22,532 (39)	24,948	16,517	23,197 (38)	67,049
F	2.9 ^{**}			2.1 [#]			
가정							
16~20명	10,628	17,867	5,930 (9,753)	11,478	18,303	6,584 (9,031)	638,512
민간							
16-20명	10,200	18,961	4,658 (785)	11,897	19,981	6,266 (673)	287,268
46-54명	12,197	15,560	7,643 (935)	12,505	15,632	7,914 (912)	206,410
73-81명	14,565	20,500	8,380 (612)	14,758	20,567	8,601 (604)	252,611
93-101명	13,418	17,431	8,636 (316)	13,547	17,465	8,698 (313)	221,927
120-128명	11,956	10,884	8,277 (156)	11,956	10,884	8,277 (156)	60,480
138-146명	15,209	22,196	9,378 (84)	15,209	22,196	9,378 (84)	170,450
165명 이상	14,057	16,480	10,161 (231)	14,057	16,480	10,161 (231)	192,902
F	4.4 ^{***}			2.0 [#]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p < .1, ** p < .01, *** p < .001

이러한 아동 1인당 시설비는 전체 어린이집이 평균 13,086원이다.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29,568원, 다음으로 국공립과 법인이 22,000원 정도이고, 부모협동이 7,613원이며 그 이외는 1만원 선이다(표 IV-3-41 참조).

어린이집 규모별로 아동 1인당 시설비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124인과 142인 규모만 2만원 미만 수준이고 나머지는 2만원대로 차이가 거의 없다. 사회복지법인은 20인이 8,976원으로 가장 낮고, 77인, 124인은 3만원 선으로 높고, 나머지는 모두 2만원대이다. 민간어린이집은 혼원과 함께 비교적 정적으로 늘어난다. 20인 10,200원에서 142인 이상 15,209원까지 상승한다(표 IV-3-42 참조).

2) 시설비(목)

2013년 기준 아동 1인당 월평균 시설비는 평균 월 5,945원이고, 과반수가 넘는 지출이 있는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10,472원이다.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는 사회복지법인이 각각 15,839원, 20,545원으로 높고, 직장이 각각 12,029 원, 17,345원, 국공립 11,292원, 14,383원 순이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모두 1 만원 미만이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이 각각 2,949원, 5,608원으로 가장 낮다. 시설비 지출이 없는 경우가 40%가 넘어 전체와 지출이 있는 경우 평균 차이가 나나 시설 유형 간 차이는 전체 평균과 유사하다(표 IV-3-43 참조).

〈표 IV-3-43〉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시설비

단위: 원(개소)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수)	
전체	5,945	18,723	641	(41,230)	10,472	23,877	4,079	(23,405)	630,317
국공립	11,292	20,450	4,810	(2,229)	14,383	22,096	7,874	(1,750)	335,094
사회복지법인	15,839	28,363	5,740	(1,410)	20,545	30,773	10,110	(1,087)	324,002
법인단체등	10,694	25,700	2,770	(848)	15,039	29,391	5,998	(603)	473,675
민간	6,580	21,762	1,293	(14,017)	9,831	25,993	3,789	(9,382)	626,566
가정	4,082	14,373	0	(22,152)	8,862	20,152	3,523	(10,204)	630,317
직장	12,029	25,023	3,022	(460)	17,345	28,483	8,053	(319)	329,951
부모협동	2,949	6,575	257	(114)	5,603	8,226	3,037	(60)	45,335
F	156.3***				58.3**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어린이집 규모별로 시설비를 월평균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면, 어린이집 유형 모두 일정한 경향성을 없으나 20인 이하가 가장 낮다. 국공립은 20인 이하와 124인이 각각 평균 9,146원, 9,913원으로 1만원 미만이고, 나머지 규모는 1만~1만3천원 정도로 전반적으로 1만원 내외 수준이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20인이 2,583원으로 가장 낮고, 나머지는 1만원대이다. 민간은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표 IV-3-44 참조).

〈표 IV-3-44〉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지출: (목)시설비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국공립										
16-20명	9,146	23,143	2,083	(4)	14,192	27,704	5,084	(29)	133,931	
46-54명	13,296	26,467	3,737	(199)	16,747	28,728	5,647	(158)	265,018	
73-81명	11,156	14,280	5,615	(261)	12,715	14,582	7,672	(229)	89,276	
93-101명	12,569	16,316	6,035	(105)	15,526	16,827	10,014	(85)	77,177	
120-128명	9,913	11,282	7,040	(34)	12,037	11,360	7,750	(28)	48,114	
138-146명	10,141	9,200	8,108	(19)	11,334	8,992	8,257	(17)	31,039	
165명이상	10,831	11,117	8,576	(29)	12,081	11,077	9,556	(26)	43,929	
F	0.5				0.8					
사회복지법인										
16-20명	2,583	8,882	0	(23)	14,851	18,321	7,291	(4)	42,017	
46-54명	16,114	25,556	5,858	(133)	21,648	27,544	12,047	(99)	148,870	
73-81명	17,228	29,922	5,642	(133)	22,686	32,507	11,656	(101)	186,849	
93-101명	15,352	19,598	7,177	(77)	18,470	20,120	10,238	(64)	73,327	
120-128명	18,313	29,808	7,946	(25)	21,801	31,407	10,261	(21)	132,866	
138-146명	11,237	16,101	7,774	(26)	12,703	16,588	8,300	(23)	81,222	
165명이상	11,317	12,336	7,692	(39)	14,237	12,240	12,692	(31)	53,202	
F	1.5				0.8					
가정										
16~20명	4,064	13,470	0	(9,753)	8,163	18,193	3,255	(4,856)	630,317	
민간										
16-20명	4,383	11,612	0	(785)	9,079	15,392	4,387	(379)	154,594	
46-54명	6,178	12,341	1,728	(935)	8,348	13,701	3,609	(692)	166,349	
73-81명	7,460	16,128	2,546	(612)	9,414	17,605	4,372	(485)	223,148	
93-101명	6,776	15,346	2,433	(316)	8,111	16,468	3,457	(264)	219,480	
120-128명	5,548	7,508	3,060	(156)	6,364	7,713	4,006	(136)	56,027	
138-146명	8,202	20,181	2,522	(84)	8,948	20,929	2,869	(77)	159,967	
165명이상	7,037	14,114	4,046	(231)	7,853	14,696	4,751	(207)	185,199	
F	3.8**				0.9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1$

3) 시설장비유지비(목)

시설장비유지비는 아동 1인당 평균이 전체가 1,817원이고, 지출이 있는 어린이집이 2,820원으로 1천원 정도 차이가 난다.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는 사회복지법인이 각각 평균 3,964원, 4,596원으로 높고, 국공립이 각각 3,100원, 3,747원, 법인단체등은 3,120원, 4,020원 순이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각각 1~2천원 선이고, 부모협동어린이집은 1천원대로 가장 낮다.

지출이 없는 어린이집이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전체 평균과 지출이 있는 경우의 차이가 크다. 특히 직장은 다른 유형보다 지출이 없는 어린이집이 과반수 이상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표 IV-3-45 참조).

〈표 IV-3-45〉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시설장비 유지비

단위: 원(개소)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전체	1,817	4,050	504 (41,230)	2,820	4,757	1,322 (26,556)	108,894
국공립	3,100	4,588	1,664 (2,229)	3,747	4,798	2,310 (1,844)	108,894
사회복지법인	3,964	6,103	2,048 (1,410)	4,596	6,348	2,551 (1,216)	68,086
법인단체등	3,120	5,218	1,384 (848)	4,020	5,610	2,219 (658)	52,294
민간	1,718	3,842	553 (14,017)	2,401	4,358	1,077 (10,028)	99,344
가정	1,563	3,794	307 (22,152)	2,756	4,701	1,300 (12,564)	87,688
직장	1,994	5,552	0 (460)	5,123	7,959	2,551 (179)	72,992
부모협동	1,088	2,042	257 (114)	1,851	2,389	988 (67)	11,878
F	137.2***			68.7***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아동 1인당 월평균 시설장비유지비를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로 산출한 결과는 <표 IV-3-46>과 같다.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인 이하가 평균 2,246원에서 99인까지 높아져서 평균 3,560원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그 이상 규모는 2,000원대까지 낮아진다. 사회복지법인은 142인 평균 2,853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모가 3~4천원대 수준이나 경향성은 없다. 민간어린이집도 20인 이하가 평균 1,461원에서 142인까지 현원과 함께 정적으로 증가하여 2,196원에 이르고, 그 이상 규모는 2,000원 이하로 떨어진다.

〈표 IV-3-46〉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시설장비 유지비

단위: 원(개소)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국공립									
16-20명	2,246	3,964	384	(45)	3,887	4,584	2,007	(26)	14,707
46-54명	2,567	3,548	1,361	(199)	3,233	3,703	1,922	(158)	20,667
73-81명	3,178	3,862	1,731	(261)	3,606	3,922	2,095	(230)	21,992
93-101명	3,560	4,166	2,319	(105)	3,815	4,199	2,499	(98)	24,065
120-128명	3,335	3,749	2,547	(34)	3,658	3,774	2,700	(31)	18,571
138-146명	2,059	1,689	1,809	(19)	2,173	1,660	1,852	(18)	5,988
165명 이상	2,978	2,511	2,539	(29)	3,085	2,489	2,616	(28)	11,294
F	1.5				0.7				
사회복지법인									
16-20명	3,112	5,334	0	(23)	6,506	6,189	3,090	(11)	17,976
46-54명	4,353	7,653	1,934	(133)	4,949	7,979	2,719	(117)	68,086
73-81명	3,865	5,166	1,933	(133)	4,509	5,314	2,757	(114)	27,579
93-101명	4,540	5,826	2,741	(77)	4,924	5,910	2,916	(71)	33,427
120-128명	3,513	4,141	2,390	(25)	3,992	4,195	2,842	(22)	20,217
138-146명	2,853	2,849	2,365	(26)	3,225	2,824	2,433	(23)	11,061
165명 이상	4,991	5,695	3,756	(39)	5,261	5,725	3,890	(37)	27,942
F	0.6				0.5				
가정									
16~20명	1,474	3,486	400	(9,753)	2,430	4,209	1,196	(5,915)	87,688
민간									
16-20명	1,461	3,512	159	(785)	2,737	4,431	1,244	(419)	41,410
46-54명	1,751	3,475	615	(935)	2,228	3,781	993	(735)	43,193
73-81명	1,929	3,795	803	(612)	2,270	4,023	1,108	(520)	54,230
93-101명	1,855	2,822	841	(316)	2,094	2,914	1,074	(280)	19,898
120-128명	2,052	3,267	814	(156)	2,337	3,390	1,044	(137)	21,245
138-146명	2,196	2,620	1,389	(84)	2,365	2,645	1,478	(78)	15,258
165명 이상	1,950	3,150	992	(231)	2,145	3,241	1,173	(210)	33,351
F	1.8 [#]				1.2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p < .1$

4) 자산취득비(목)

자산취득비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로 교재교구 중 5만원 이상, 내구연한 5년 이상인 물품 구입비가 자산취득비로 분류된다.

2013년 기준, 아동 1인당 월평균 자산취득비를 산출하면, 전체가 평균 5,324원이다. 그러나 지출이 있는 어린이집만 산출하면 평균 6,915원으로 증가한다(표 IV-3-47 참조).

〈표 IV-3-47〉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자산취득비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전체	5,324	11,491	2,460 (41,230)	6,915	12,669	3,861 (31,746)	399,600	
국공립	8,569	11,107	6,082 (2,229)	8,868	11,181	6,300 (2,154)	129,793	
사회복지법인	9,765	13,424	5,883 (1,410)	10,535	13,649	6,608 (1,307)	150,260	
법인단체등	8,581	13,814	4,847 (848)	9,860	14,376	6,249 (738)	147,046	
민간	4,703	9,518	2,370 (14,017)	5,714	10,212	3,222 (11,538)	399,600	
가정	5,023	12,249	2,014 (22,152)	7,061	14,020	3,790 (15,756)	373,138	
직장	3,886	13,655	0 (460)	9,310	19,932	4,740 (192)	201,460	
부모협동	3,576	7,105	533 (114)	6,683	8,601	2,971 (61)	47,754	
F	88.2***			52.3***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 p < .001

〈표 IV-3-48〉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아동 1인당 월 평균 지출: (목)자산취득비

구분	전체			지출이 있는 경우			최대값	단위: 원(개소)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수)		
국공립								
16-20명	11,473	15,585	5,383 (45)	14,341	16,218	8,468 (36)	64,857	
46-54명	8,366	12,104	5,975 (199)	8,451	12,136	6,018 (197)	115,905	
73-81명	7,334	6,957	5,736 (261)	7,419	6,952	5,874 (258)	57,383	
93-101명	7,039	5,265	5,573 (105)	7,107	5,245	5,680 (104)	23,456	
120-128명	5,804	4,108	4,782 (34)	5,980	4,039	4,923 (33)	17,947	
138-146명	6,806	4,402	5,557 (19)	6,806	4,402	5,557 (19)	16,348	
165명 이상	8,604	5,482	6,332 (29)	8,604	5,482	6,332 (29)	21,351	
F	1.9 [#]			3.7**				
사회복지법인								
16-20명	3,282	6,551	360 (23)	6,290	8,074	2,363 (12)	25,848	
46-54명	9,166	13,341	5,375 (133)	10,159	13,684	5,974 (120)	72,048	
73-81명	9,991	10,411	6,462 (133)	10,381	10,419	6,981 (128)	60,600	
93-101명	8,577	8,855	5,724 (77)	9,302	8,849	6,436 (71)	44,645	
120-128명	10,091	10,031	6,033 (25)	10,091	10,031	6,033 (25)	36,857	
138-146명	6,634	5,803	5,349 (26)	6,899	5,759	5,471 (25)	22,247	
165명 이상	8,000	8,502	4,852 (39)	8,432	8,517	4,854 (37)	32,178	
F	1.6			0.7				
가정								
16~20명	5,090	9,958	2,497 (9,753)	6,448	10,810	3,692 (7,699)	277,992	
민간								
16-20명	4,356	13,731	950 (785)	6,893	16,765	2,919 (496)	247,059	
46-54명	4,268	5,841	2,456 (935)	4,908	6,008	3,058 (813)	58,190	
73-81명	5,177	8,369	2,706 (612)	5,688	8,606	3,205 (557)	84,126	
93-101명	4,787	6,432	2,756 (316)	5,093	6,516	3,122 (297)	67,779	
120-128명	4,356	5,173	2,818 (156)	4,622	5,213	3,015 (147)	26,927	
138-146명	4,811	5,396	3,191 (84)	5,388	5,432	4,134 (75)	30,424	
165명 이상	5,070	7,631	3,016 (231)	5,182	7,678	3,082 (226)	74,593	
F	0.9			2.6*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p < .1, * p < .05, ** p < .01

이를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각각 9,765원, 10,535원으로 높고, 다음은 국공립과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이 8~9천원대이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4~5천원대 정도이다. 지출이 없는 어린이집이 1/4 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부모협동과 직장 어린이집 과반수 이상이 지출이 없어서 전체 평균과 지출이 있는 경우가 차이가 크다(표 IV-3-47 참조).

2013년 기준으로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로 아동 1인당 월평균 자산취득비를 산출한 결과, 국공립은 20인 이하가 평균 11,473원에서 124인까지는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5,804원 정도까지 줄어든다. 그러나 그 이상 규모는 다시 8,604원으로 증가한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일정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인 이하가 평균 3,282원으로 가장 낮고, 다음은 142인 6,634원이며, 나머지는 8,000~10,000원 수준을 나타낸다. 민간어린이집은 전반적으로 4~5천원대로 큰 차이가 없다(표 IV-3-48 참조).

4. 소결

어린이집 세입에서의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원아모집이 운영과 직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전체 수입에서 기타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민간어린이집은 12%가 넘는다. 이 역시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구조가 타 유형에 비하여 취약함을 나타낸다 하겠다.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출 분석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정어린이집의 열악성이다. 시설유형별로 반당 기본급 평균을 비교해 보면 국공립이 266만원이고, 민간이 170만원, 가정은 128만원 수준으로 추정되었고, 현원 16~20인 시설을 선별해 보면 민간어린이집 145만원, 가정어린이집 137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사 외 기타인력을 고려할 때 교사의 급여수준을 가름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관리운영비 비율이 높다. 관리운영비에는 보육료 수입의 15%까지 지출이 가능한 기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설치시 용자금 이자, 임대료, 적립금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 하나 언급할 사항은 가정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 지출 비율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하여 비율이나 아동 1인당 비용 자체가 낮다는 점이다. 이는 영아 중심 어린이집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V. 보육비용 산정

제5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자료에 기초하여 연령별 아동 1인당 항목별 보육비용과 총 보육비용을 산정하고 보육료와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보육의 다양성 관점에서 시간단축형 보육비용을 산정하였다.

1. 보육비용 산정 기본 원칙

가. 항목 구성

본 연구의 보육비용 구성 항목은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출 계정과목을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표 V-1-1〉 보육비용 구성 항목

항	목	참고 기준
인건비	기본급	보육실태조사 자료, 법적 기준
	제수당	회계자료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법정 기준
	사회보험부담비용	법정 기준
사업 운영비	급간식비	선행 연구
	교재교구비	선행 연구
관리 운영비	여비	회계자료
	수용비 · 수수료 및 공공요금	회계자료(차량보험금 포함)
	연료비	회계자료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비	회계자료
	직책급	회계자료
	회의비	회계자료
시설비	시설비(건물비 포함)	본 조사 자료, 회계자료
	장비비	본 조사 자료, 회계자료 차량 관련 제외
	시설장비 유지비	선행연구

인건비는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을 포함하

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를 포함하며, 관리운영비는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연료비를 포함하였다. 사업운영비는 급간식비, 교재교구비를 포함하고, 시설비는 시설비, 장비비,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하였다.

나. 항목별 산출 방법 및 자료

보육비용 산출 방법은 항목별로 차이가 있다. 인건비, 급간식재료비, 교재교구비, 시설유지비 산출은 규범적 접근을 우선으로 하고 보조 자료로 재무회계보고 자료를 사용하였고, 업무추진비 및 관리운영비는 재무회계 보고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바람직한 방향성을 보조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어린이집 재무회계 계정과목과 보육비용 산출에서의 항목이 명칭은 동일하여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관리운영비의 경우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어린이집 건물 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들어 있다. 교재교구비 내 비품과 장비비에서의 비품이 가격으로 구분되므로 사용시 주의를 요한다. 기본 설비는 장비비이고 보육활동에 필요한 비품을 교재교구비로 분류한다. 급간식비는 재료비만 산정되는데 인건비는 제외하더라도 조리 및 배식에 필요한 기본 설비비와 조리에 소요되는 연료비가 있다. 현재까지 조리기구는 장비비, 조리비는 관리운영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로 분류해 왔다. 관리운영비에서 가스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인지 연료비인지 구분이 애매하다.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분할 수 없다. 차량비도 통학비만 산정하는데, 차량 구입비, 기사 인건비를 포함하여 차량을 마련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전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항목이 각 (목)에 분산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무회계 자료 분석 결과를 어린이집 현장의 실제 자료로 간주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보육비용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은 비용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구분

보육비용 산정에서 아동 연령을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의 차이에 반영하였고, 어린이집 규모별로는 기존의 연구를 반영하여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각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와 유아반을 둔다고 가정하고 반을 구성할 경우에 나타나는 총 정원을 적정 규모별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보육사업안내를 통하여 기본 모형으로 제시해 왔고, 선행연구들도 이 기준에 따라 시설 규모별 보육비용을 산정하였다.

〈표 V-1-2〉 어린이집 규모 모형

구분	단위: 반, 명						
	20인미만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0세아반	1	1	1	1	1	2	2
1세아반	1	1	1	2	2	2	2
2세아반	2	1	2	2	3	3	4
3세아반	-	1	1	2	2	3	3
4세아 이상반	-	1	2	2	3	3	4
총 반수	4	5	7	9	11	13	15
정원	20	50	77	97	124	142	169

2. 항목별 보육비용

가. 인건비(안)

본 연구에서는 인력의 배치는 현재 법이나 지침으로 정한 인력 배치 기준을 따르고자 하며, 인건비 수준은 2012년 보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유형별로 차이를 두고자 하였다.

1) 기준

가) 인건비 지원 시설

(1) 인력 배치 기준

영유아보육법상 원장은 20인 이상 어린이집에 배치하며, 담임교사는 반당 1인을 배치한다. 출사부는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아동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영양사와 간호사를 두어야 하는데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인력 배치 아동수 기준은 모두 혼원이 기준이지만 원장만은 정원 기준이다.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

〈표 V-2-1〉 어린이집 규모별 인력 배치 기준

구분	단위: 반						
	20인미만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원장	-	1	1	1	1	1	1
담임교사							
0세아반	1	1	1	1	1	2	2
1세아반	1	1	1	2	2	2	2
2세아반	2	1	2	2	3	3	4
3세아반	-	1	1	2	2	3	3
4세아 이상반	-	1	2	2	3	3	4
소계	4	5	7	9	11	13	15
취사원	1/2	1	1	2	2	2	3
영양사	-	-	-	-	1/5	1/5	1/5
간호사	-	-	-	-	1	1	1
누리보조교사	-	-	1/2	1/2	1	1	1
계	4.5	7	10	13	15.25	19.25	21.25

〈표 V-2-2〉 어린이집 수 대비 기타 인력 수 비율

구분	단위: %, 명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100인 이상 어린이집 수 대비 영양사 수 비율	39.3	38.0	34.4	-
100인 이상 어린이집 수 대비 간호사 수 비율	59.6	49.6	56.2	-
어린이집 수 대비 취사부 수	129.2	134.1	85.6	30.3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통계

어린이집 인력 배치는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보육사업안내로 누리과정 비담임 교사를 두는 것 이외에 몇 가지 예외를 둔다. 원장은 20인 이상 어린이집에만 배치하고, 교사는 반당 1인 담임교사와 누리과정 반 수에 따라 단시간 보조교사를 둔다. 아동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영양사와 간호사를 두어야 하는데 영양사는 5개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고 간호사는 규정대로 둔다.²⁶⁾ 100인 이상 어린이집 수 대비 영양사 수는 2013년 보육통계에 의하면 국공립 39.3%, 사회복지법인 38.0%, 민간 34.4%이다(표 V-2-2 참조). 간호사 비율은 이

26) 어린이집 간호(조무)사 배치 비율은 5% 미만으로 배치한 경우에도 겸직이 다수임.

보다 높다. 기준 인력의 중복 자격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간호사는 법적기준을 준수하기로 한다. 취사부는 영유아 40인~79인 어린이집은 1인을 두며, 영유아가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하는 것으로 한다. 40인 미만 어린이집에는 반일제 취사부를 둔다.

이외에 어린이집이 임의로 배치할 수 있는 (축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교직원은 제외한다.

(2) 급여 기준

어린이집 교직원의 급여는 조사 자료와 봉급표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기준 호봉은 201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로 산출된 전국 교사, 원장 평균 호봉을 적용하여 2014년 급여로 설정한다. 원장은 국공립 14.9호봉, 사회복지법인 15.6호봉이고 급여는 둘 다 253만원 수준이다. 이 자료에 의거하여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모두 15호봉을 책정하였다. 교사는 국공립 5.94호봉, 사회복지법인 5.59호봉이 이므로 6호봉으로 한다. 취사부의 월 보수는 국공립 평균 125만원, 법인 120만원이므로 2012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3호봉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영양사와 간호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143만원, 140만원이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각각 87만원, 113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그러나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급여를 고려하여 3호봉을 적용하였다. 비담임교사는 보육교사 1호봉을 적용하였다. 모든 어린이집 교직원은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²⁷⁾과 퇴직적립금²⁸⁾을 포함하여 17.468%를 가산한다.

본 재무회계 분석에서 반당 인건비 평균은 국공립이 266만원이고, 법인 245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비용은 보육교사 이외에 원장 등 주요 인력의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원장이나 교사 인건비 수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이외에 교사에게 직접 지원되는 누리반 교사 월 30만원, 영아반 교사 월 15만원을 포함한다. 원장 겸직 교사에게는 월 75,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시간외 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책정한다. 이는 재무회계보고 자료 중 반당 수당 평균 16만원을 반영한 것이다.²⁹⁾

27) 국민연금 부담금: 월보수액 × 9.0%/2, 국민건강보험료: 월보수액 × 5.8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보수액 × 5.89% × 6.55%/2, 고용보험료: 월보수액 × 0.8%, 산재보험료: 월보수액 × 0.7%.

28) 월지급액의 1/12임.

29) 공립유치원교사 19호봉 이하 시간당 9,238원을 10시간 인정함.

〈표 V-2-3〉 인건비 적용 인력 배치 및 급여 기준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원장	- 15호봉	- 8호봉	미배치
보육교사	- 6호봉	- 2호봉	- 1호봉
취사원	- 3호봉	- 정액 100만원	- 정액 60만원
영양사	- 5개 시설 공동 - 3호봉	- 5개 시설 공동 - 정액 100만원	
간호사	- 5개 시설 공동 - 3호봉	- 5개 시설 공동 - 정액 100만원	
보조(비담임)교사	- 누리반 보조교사	- 누리반 보조교사	
제수당	- 처우개선비, 환경개선준비금 - 시간외 수당	- 처우개선비, 환경개선준비금 - 시간외 수당	- 처우개선비, 환경개선준비금 - 시간외 수당

주: 기본 호봉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설정함. 제수당과 후생경비는 재무회계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함.

나) 가정·민간어린이집

(1) 배치

가정·민간어린이집 보육인력의 배치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한다. 대규모 어린이집은 간호사와 영양사 배치 비율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배치에 있어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차이를 둘 명분이 약하다. 취사부의 경우에도 2013년 통계로 가정어린이집 수 대비 취사부의 수가 30% 정도이다. 따라서 40인 미만 어린이집은 조리사 배치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가정어린이집에도 반일제 근로 기준의 취사부를 두는 것으로 한다.

(2) 급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보육인력의 호봉 적용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원장 호봉은 조사에서 평균 민간 7.7호봉, 가정어린이집이 4.4호봉이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민간 어린이집 원장 8호봉, 가정어린이집 원장 5호봉으로 설정하였다.

보육교사 급여는 재무회계 분석에서도 반당 월 평균 기본 인건비는 민간이 170만원, 가정은 128만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 비용은 보육교사 이외에 원장 등 주요 인력의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국공립과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실태조사에서는 시설유형별로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3.4호봉, 가정어린이

집의 경우 2, 3호봉으로 나타났으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교사 중 호봉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각각 71%, 87%이어서 호봉을 적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의거하여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2호봉, 가정어린이집 1호봉으로 설정하였다.

취사부는 급여 수준이 100만원에 못 미치지만 1호봉을 적용하였다. 영양사와 간호사 급여는 77만원으로 산출되어서 월 100만원 정액을 적용하였다. 비담임교사는 보육교사 1호봉을 적용하였다.

4대 보험과 퇴직금,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누리교사와 영아반 교사 수당, 원장 겸직 교사 수당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누리반 교사 월 30만원, 영아반 교사 월 15만원, 원장 겸직 교사에게는 월 75,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시간외 수당으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각각 월 5만원, 4만원을 책정하였다. 이는 재무회계보고 자료 중 인력 전체의 반당 수당 평균 각각 79,400원, 52,100원을 반영한 것이다.³⁰⁾

2) 아동 1인당 표준 인건비

위에서 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인건비는 <표 V-2-4>와 같다.

<표 V-2-4>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인건비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단위: 원
국공립 볍인								
0	862,300	833,800	838,600	829,000	822,500	825,300		
1	550,600	522,100	525,700	517,300	510,800	512,500		
2	416,529	388,029	391,629	383,229	376,629	379,529		
3	248,900	243,900	235,800	234,400	225,500	226,000		
4+	207,000	203,200	195,000	192,500	183,600	185,300		
민간 가정								
0	676,500	730,700	706,500	708,700	702,600	697,100	698,700	
1	419,800	465,600	441,300	444,700	438,600	433,100	433,500	
2	310,229	351,929	327,629	331,029	324,929	319,429	321,029	
3	210,400	212,000	202,500	202,200	194,400	194,800		
4+	175,300	175,700	166,100	167,000	159,200	159,700		

주: 기본 호봉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설정함.

30) 공립유치원교사 19호봉 이하 시간당 9,238원을 10시간 인정함.

나. 업무추진비

어린이집 업무추진비는 어린이집의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1년간 월 평균 아동 1인당 업무추진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이 유사하여 인건비 지원 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 산출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구분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³¹⁾

〈표 V-2-5〉 어린이집 업무추진비

구분	기관 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계	단위: 원			
					기관 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계
국공립					민간			
46-54명	2,739	8,663	553	11,956	2,534	4,566	189	7,289
73-81명	2,032	5,655	382	8,070	1,884	3,860	165	5,910
93-101명	1,655	3,873	373	5,900	1,297	2,945	134	4,377
120-128명	1,350	2,819	281	4,449	1,457	2,929	113	4,499
138-146명	1,610	2,528	380	4,518	1,064	2,383	188	3,635
165명이상	1,252	2,257	149	3,659	1,153	1,987	230	3,370
가정								
16~20명	2,986	9,236	202	12,424				

다.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도 본 어린이집 재무회계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의 각 전체 평균과 이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국공립이 33,000~42,000원이고 민간은 24,000~30,000원 사이이며, 가정어린이집은 46,000원 수준으로 다소 높다.

한편 기타 운영비는 재무회계 분석에서 산출된 평균은 각각 12,000원, 32,100원, 41,700원이다. 그러나 비용은 적립금, 임대료, 응자금 이자, 차량할부금 등 용도가 다양하고 일부는 시설비 항목으로 비용 산정에 반영되었으므로 관리운영비에서는 제외하였다.

31) 제 IV 장 〈표 IV-3-9〉 참조.

〈표 V-2-6〉 어린이집 관리운영비

구분	여비	수용비	연료비	계	단위: 원			
					민간	민간	연료비	계
국공립·법인								
46-54명	1,893	37,040	3,361	42,294	279	27,870	1,782	29,931
73-81명	1,132	32,815	2,700	36,647	207	25,181	1,564	26,952
93-101명	942	33,825	2,777	37,544	209	23,631	1,699	25,539
120-128명	763	29,751	3,716	34,230	134	22,979	1,450	24,563
138-146명	1,116	29,699	3,345	34,160	178	23,942	1,936	26,056
165명 명이상	695	30,717	1,871	33,283	97	22,086	1,773	23,956
가정								
16~20명	495	44,139	1,369	46,003				

〈표 V-2-7〉 어린이집 기타운영비

구분	법인	민간	단위: 원	
			가정	가정
비용	12,000	32,100	41,700	

라. 교재교구비

교재교구비는 실내·외 환경 구성에 필요한 교재교구비로 산정하였다. 실내 환경에서는 보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교구, 소모품, 비품을 포함하였다. 교재교구비 기준은 2013년도 보건복지부 수탁과제로 추진한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서문희 외, 2013b) 결과 1안을 적용하였다.

〈표 V-2-8〉 연령별 영유아 1인당 교재교구비

구분	0세	1세	2세	3세	단위: 원/월	
					4·5세	
실내환경						
교재교구	36,117.9	32,781.8	18,179.2	23,332.3	18,047.2	
소모품	2,063.0	4,188.8	5,631.3	6,545.7	7,731.5	
비품	15,947.5	7,229.3	7,755.8	10,725.3	8,904.3	
소계	54,128.4	44,199.9	31,566.3	40,603.3	34,683.0	
실외환경	3,683.4	3,743.4	4,196.8	7,444.7	6,151.3	
계	57,811.8	47,943.3	35,763.1	48,048.0	40,834.3	

자료: 서문희·양미선·유영준 외(2013b).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 연구는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선행연구(서문희 외, 2013a) 및 평가인증 지표, 영아보육프로그램,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어린이집 교재교구 범위 및 연령기준, 반 규모 등을 설정하고 학계 및 현장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발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산출기준」을 어린이집 47개소 대상 조사에서 어린이집 47개소를 대상으로 연령 및 흥미영역별 교재교구 보유 현황을 조사하여 한 곳에도 없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책상, 의자 등 사용빈도가 높아 고장이 잦은 교구는 고가를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하였다(서문희 외, 2013b).

마. 급간식비

아동연령별 급간식비는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결과(서문희 외, 2013a)에 기초하였다. 선행연구 급식단가 산출 과정은 표준조리표 작성, 메뉴별 표준분량단가 산출, 1일 식단가 산출, 월 식단가 산출, 표준식단가 산출, 표준 급식비 산출로 구성된다. 먼저 메뉴의 표준 재료 분량이 반영된 조리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식재료의 시장단가 조사 및 각 식재료의 단위가격을 산출하고, 각 식재료의 조리시 폐기율이 고려된 출고계수를 반영하여 구매 시 조정중량을 산출하고, 단위가격과 조정중량을 활용하여 식단을 구성하는 각각의 메뉴별 표준분량단가를 산출하였다. 1일 식단을 구성하는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의 각 메뉴 표준분량 단가를 합하여 1일 식단가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 식단에 월 23일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³²⁾

이러한 단가는 2013년 재무회계 급간식비 지출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다른 점은 두 가지이다. 우선 연령별 차이이다. 본 분석은 연령별로 급간식비가 차이나지만 재무회계 분석 결과는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다. 만0세아와 만5세아는 필요로 하는 칼로리와 양이 다른데 급간식비 지출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은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게 한다. 아동 1인당 기준 단가에 맞추었다는 인상이 강하다. 둘째로는 규모인데, 23일로 환산한 본 연구 금액은 영아는 민간어린이집 평균 아동 1인당 지출액보다 다소 낮고 유아는 민간은 물론 국공립 어린이

32) 이 연구에서는 일인단기에 월 25일을 적용하여 월 급간식비로 제시하였음. 식단은 일반 식단은 A와 B형 두 가지와 플러스 식단의 3종을 산정하였고, 소매단가와 도매단가를 산정하였음.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도매가격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의 단가 산출을 새롭게 제시한 것임.

집 급간식비 월 평균 지출액보다 많다.

〈표 V-2-9〉 영유아 1인당 1일 급간식비

구분	초기 이유식	중기 이유식	후기 이유식	단위: 원	
				만 1·2세	만 3·5세
일반 식단	158	262	322	1,762	2,115
플러스 식단	-	-	-	2,510	3,316

자료: 서문희·양미선 외(2013b).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급간식비 단가는 기준 연령이 현재 연령 기준이다. 따라서 일반식단으로 하되 연령별 차등을 둔다. 보육아동은 보육연령을 적용하는데, 보육연령은 현재 기준 연령보다 많게는 23개월까지가 많다. 그러므로 0세아도 후기 이유식과 1세아 단가를 혼합하여 적용하고, 2세아도 2세아의 단가와 3세아의 단가를 혼합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표 V-2-10〉 영유아 1인당 월 급간식비

구분	0세	1세	2세	단위: 원	
				3세 이상 유아	월 단가
	23,600	40,500	44,600	48,600	

주: 1개월 23일 운영 기준으로 산출.

바. 시설비

1) 어린이집 건축비

어린이집 건축비는 어린이집 회계 보고 자료 중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활용하거나 아동 1인당 면적 4.29m²을 기준으로 건축비 m²당 지원 단가를 적용하고 내구연한을 30년으로 가정하여³³⁾ 산정한 연구가 다수이다. 본 분석에서는 시설 유형별로 실제 건축이나 어린이집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3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 5로 정한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에 의하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 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의 내용연수는 30~50년이므로 30년을 적용하였다.

가) 국공립 어린이집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건축비는 실제 국공립어린이집 건축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상호(2013)가 분석한 16개 국공립어린이집 건축비 분석 사례에서 정원 1인당 공사비는 최소 10,377,000원에서 최대 30,979,000원에 이르며, 평균값은 17,226,000원으로 나타났다. 1m²당 공사비는 평균 2,112천원으로 산출되었다.

이 결과를 기준으로 최소값을 적용하면 아동 1인당 월 28,300원이고 평균값을 적용하면 월 47,900원이다. 이상호(2013)가 분석한 국공립어린이집 건축 사례가 대부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원하는 공립어린이집 신축 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사례이다. 이 경우에 중앙과 지방 정부가 마련한 재정 이외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원금을 추가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원이 없는 경우보다 다소 많은 비용이 소요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다면 본 보고서에서는 최소 가격을 건축비로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³⁴⁾

나) 민간·가정 어린이집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 시설비는 어린이집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에서 신규 어린이집은 건축 시 아동 1인당 평균 900만원, 매입은 평균 1,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평균 1,000만원으로 추정하였다. 이 비용의 대지와 건물 비용의 비중은 신축 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40%와 60%으로 추정하였다. 즉, 비용의 60%인 아동 1인당 600만원을 건축비로 추정하고 이 비용을 건축 연한 30년에 월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면 월 16,700원이 된다.³⁵⁾

2) 놀이터

놀이터³⁶⁾ 설치비는 놀이기구 3종 이상에 바닥 공사 등 비용을 포함하면 50평

34) 아동 1인당 총 면적 4.29m²을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건축 시 지원 단가인 1,201,300원 /m²을 적용하고 내구연한을 30년으로 가정하면 산출되는 아동 1인당 월 비용은 14,315원이고, 아동 1인당 면적 기준은 4.29m²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어린이집의 건축 단가는 일반 공공청사의 표준건축비 단가인 1m²당 1,670,000원을 적용하면 아동 1인당 월 비용은 19,900원임.

35) 부지 비용에 대한 초기 투자는 기회 비용의 인정이 허용되지 않는 현 제도 하에서는 보육비용 산정에 반영하기 어려움.

36)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에 의하면 어린이집 중 옥외놀이터가 설치되어

규모에 최소 4,000만원 최대 5,000만원을 적용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내구연한 10년을 반영하여 아동 1인 면적의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하였다.³⁷⁾

놀이터 설비비로 4,000만원을 적용하면 보육비용은 1인당 월 3,300원이고 5,000만원을 적용하면 월 4,200원이다.

3) 시설장비비

시설장비비는 재무회계 보고자료 중 자산취득비를 활용하였다. 2013년 기준, 아동 1인당 월평균 자산취득비를 산출하면, 전체가 평균 5,324원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이 평균 8,500원, 민간이 4,700원 가정이 5,000원 수준이다.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공립어린이집은 규모에 따른 일관성이 약하다.

여기에는 5만원 이상 품목이 모두 포함된다. 교재교구비 등에는 보육실에 설치된 5만원 이상 품목도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20%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는 국공립과 법인 8,600원, 민간 4,700원, 가정 5,100원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규모별 편차는 일관성 부족으로 기초자료로 반영하기 어렵다.

4) 시설유지관리비

시설유지비는 건물 내·외부와 기본 설비가 포함된 것으로 재무회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2013년 연구 결과(서문희 외, 2013a)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어린이집 규모를 20인, 50인 및 그 이상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물내부, 건물외부, 전기 소화설비, 급수 위생설비, 난방 급탕 설비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다. 산출방법은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어린이집 사례의 도면을 분석하여 실내재료마감표와 동일하게 각 실별로 천장, 바닥, 벽 부위별 및 외부마감 면적을 분리하여 산정하고, 산정된 각 실의 부위별 면적과 외부마감 면적 값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초기공사비를 계산한 후에 각 마감자재별 수선율

37) 있다는 비율이 민간개인어린이집은 37.9%임. 규모별로는 21~39인이 18.2%, 40~79인이 55.8%, 80명 이상 어린이집이 81.0%임.

37) 100인 이하 기준 비용은 김현숙·서병선(2008) 연구 결과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아동 1인당 1안 3,100원, 2안 4,200원임.

과 수선주기, 교체주기 등을 주택법 시행규칙의 장기수선계획을 반영하여 연간 내외부 마감별 연간 및 아동 1인당 시설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다. 산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전기소화, 급수위생, 난방급탕 등의 설비유지관리비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20인 시설은 2,189원, 50인 시설은 4,148원 그 이상 규모는 3,746원으로 산출하였다.

이 비용은 2013년 재무회계로 산출된 시설장비유지비 평균인 2,000원대 수준보다 가격이 높다.

5) 시설비 종합

위에서 설명한 건축비, 놀이터 설치비, 시설장비비, 시설유지관리비를 합하면 시설비는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은 45,000원 수준이 되고, 가정은 24,000원, 민간어린이집은 28,500원 수준이 된다.

4개 항목 중 시설유형별로 시설장비유지비는 동일하고 이외 3개 비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표 V-2-11〉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시설비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단위: 원
건축비	28,300	28,300	28,300	28,300	28,300	28,300	28,300	
놀이터 설치비	-	4,200	4,200	4,200	4,200	4,200	4,200	
시설장비비	8,600	8,600	8,600	8,600	8,600	8,600	8,600	
시설유지관리비	2,189	4,148	3,746	3,746	3,746	3,746	3,746	
계	39,089	45,248	44,846	44,846	44,846	44,846	44,846	

〈표 V-2-12〉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 시설비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단위: 원
건축비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놀이터 설치비	-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시설장비비	5,100	4,700	4,700	4,700	4,700	4,700	4,700	
시설유지관리비	2,189	4,148	3,746	3,746	3,746	3,746	3,746	
계	23,989	28,848	28,446	28,446	28,446	28,446	28,446	

3.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가. 연령별 아동 1인당 총 보육비용

항목별로 산정한 단가를 합산하여 연령별 아동 1인당 들어가는 총 보육비용을 산정하였다. 사회보장분담금, 금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외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공립과 법인, 가정, 민간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였다.

〈표 V-3-1〉 보육비용 구성 항목

항	목	내역
인건비	기본급	- 국공립·법인, 민간, 가정 차등 적용
	시간외 수당	- 국공립·법인, 민간, 가정 차등 적용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동일 적용
	사회보험부담비용	- 동일 적용
사업 운영비	급간식비	- 동일 적용
	교재교구비	- 동일 적용
관리 운영비	여비	- 국공립·법인, 민간, 가정 차등 적용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 국공립·법인, 민간, 가정 차등 적용
	연료비	- 국공립·법인, 민간, 가정 차등 적용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비	- 국공립·법인, 민간, 가정 차등 적용
	직책급	- 국공립·법인, 민간, 가정 차등 적용
	회의비	- 국공립·법인, 민간, 가정 차등 적용
시설비	시설비(건물비 포함)	- 국공립·법인, 민간, 가정 차등 적용
	시설장비비	- 국공립·법인, 민간, 가정 차등 적용
	시설장비 유지비	- 동일 적용

각 항목별로 산정한 비용은 합산하여 아동 1인당 총보육 비용을 산정하면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77인을 기준으로 보면 0세아가 100만원, 4세 이상은 38만원 수준이다(표 V-3-2 참조).³⁸⁾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총 보육비용은 50인을 기준으로 보면 0세아가 87만원선이고 4세 이상은 33만원 수준이다(표 V-3-3 참조).³⁹⁾

38)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연령별 항목별 비용은 <부표 V-3-1>~<부표 V-3-5> 참조

39)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연령별 항목별 비용은 <부표 V-3-5>~<부표 V-3-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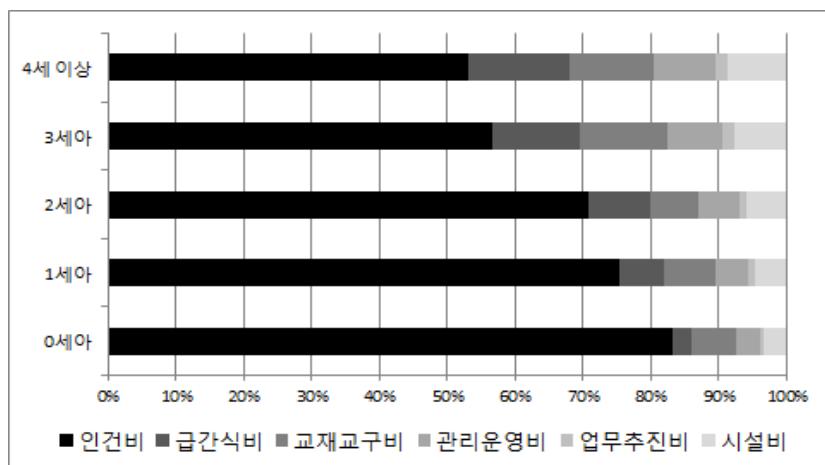
〈표 V-3-2〉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연령별 아동 1인당 총 보육비용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이상
0세아		1,039,300	1,002,600	1,006,800	994,000	986,600	987,800
1세아		734,600	697,900	700,900	689,300	681,900	682,000
2세아		592,500	555,800	558,900	547,200	539,700	541,100
3세아		441,100	427,900	419,200	414,600	404,800	403,800
4세 이상아		392,000	380,000	371,200	365,500	355,700	355,800

〈표 V-3-3〉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 연령별 아동 1인당 총 보육비용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이상
0세아	839,900	876,800	847,700	848,600	840,600	836,400	835,700
1세아	590,200	618,700	589,500	591,600	583,600	579,400	577,500
2세아	472,600	497,000	467,800	469,900	462,000	457,700	457,000
3세아		371,700	368,400	357,600	355,400	348,900	347,000
4세 이상아		329,400	324,900	314,000	313,000	306,500	304,700

다음 50인과 77인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연령별 구성 항목별 비용과 비중을 알아보고자 하였다(그림 V-3-1, 표 V-3-4, 표 V-3-5 참조).



[그림 V-3-1] 50인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보육비용 항목별 비중

〈표 V-3-4〉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비용 및 항목 구성

구분	보육비					보육비 구성 비율					단위: 원, %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 이상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 이상	
50인											
인건비	730,700	465,600	351,929	210,400	175,300	83.3	75.3	70.8	56.6	53.2	
급간식비	23,600	40,500	44,600	48,600	48,600	2.7	6.5	9.0	13.1	14.8	
교재교구비	57,800	47,900	35,800	48,000	40,800	6.6	7.7	7.2	12.9	12.4	
관리운영비	29,931	29,931	29,931	29,931	29,931	3.4	4.8	6.0	8.1	9.1	
업무추진비	5,910	5,910	5,910	5,910	5,910	0.7	1.0	1.2	1.6	1.8	
시설비	28,848	28,848	28,848	28,848	28,848	3.3	4.7	5.8	7.8	8.8	
소계	876,789	618,689	497,018	371,689	329,389	100.0	100.0	100.0	100.0	100.0	
77인											
인건비	706,500	441,300	327,629	212,000	175,700	83.3	74.9	70.0	57.6	54.1	
급간식비	23,600	40,500	44,600	48,600	48,600	2.8	6.9	9.5	13.2	15.0	
교재교구비	57,800	47,900	35,800	48,000	40,800	6.8	8.1	7.7	13.0	12.6	
관리운영비	26,952	26,952	26,952	26,952	26,952	3.2	4.6	5.8	7.3	8.3	
업무추진비	4,377	4,377	4,377	4,377	4,377	0.5	0.7	0.9	1.2	1.3	
시설비	28,446	28,446	28,446	28,446	28,446	3.4	4.8	6.1	7.7	8.8	
소계	847,675	589,475	467,804	368,375	324,875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V-3-5〉 77인 민간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비용 및 항목 구성

구분	보육비					보육비 구성 비율					단위: 원, %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 이상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 이상	
50인											
인건비	862,300	550,600	416,529	248,900	207,000	83.0	75.0	70.3	56.4	52.8	
급간식비	23,600	40,500	44,600	48,600	48,600	2.3	5.5	7.5	11.0	12.4	
교재교구비	57,800	47,900	35,800	48,000	40,800	5.6	6.5	6.0	10.9	10.4	
관리운영비	42,294	42,294	42,294	42,294	42,294	4.1	5.8	7.1	9.6	10.8	
업무추진비	8,070	8,070	8,070	8,070	8,070	0.8	1.1	1.4	1.8	2.1	
시설비	45,248	45,248	45,248	45,248	45,248	4.4	6.2	7.6	10.3	11.5	
소계	1,039,312	734,612	592,541	441,112	392,012	100.0	100.0	100.0	100.0	100.0	
77인											
인건비	833,800	522,100	388,029	243,900	203,200	83.2	74.8	69.8	57.0	53.5	
급간식비	23,600	40,500	44,600	48,600	48,600	2.4	5.8	8.0	11.4	12.8	
교재교구비	57,800	47,900	35,800	48,000	40,800	5.8	6.9	6.4	11.2	10.7	
관리운영비	36,647	36,647	36,647	36,647	36,647	3.7	5.3	6.6	8.6	9.6	
업무추진비	5,900	5,900	5,900	5,900	5,900	0.6	0.8	1.1	1.4	1.6	
시설비	44,846	44,846	44,846	44,846	44,846	4.5	6.4	8.1	10.5	11.8	
소계	1,002,593	697,893	555,822	427,893	379,993	100.0	100.0	100.0	100.0	100.0	

여기서 알 수 있는 공통 사항은 아동 연령이 많아지면서 인건비의 비중은 줄어들고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 인건비 이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난다는 점이다. 연령별로는 0세아, 1, 2세아, 3세 이상에서 비율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공립·법인과 민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기관 규모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액수의 차이라기보다는 교사대 아동 비율이 증가하면서 인건비 비중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건비 외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나. 아동 1인당 부모 보육료

위에서 산출한 총 보육비용은 지원방식과 무관하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가산하여 산정된 비용이다. 다음은 지원을 제외하고 부모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이를 붙인 보육료를 산정하였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와 기능보강비는 정부가 지원하고,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는 정부가 지원하며, 또한 영아반 교사 수당과 누리반 교사 수당은 통장으로 지급되므로 이를 제외하였고, 또한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도 월 평균 4만원을 적용하여 제외하였다. 기능보강비를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에 차등을 두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비 전부를 삭제하고, 법인어린이집은 시설비 중 건축비를 반영하였다.

인건비 미지원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아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또한 영아반 교사 수당과 누리반 교사 수당은 통장으로 지급되므로 이를 제외하였고, 또한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도 월 4만원을 제외하였다.

〈표 V-3-6〉 보육비용과 부모 보육료 차이 발생 요인

구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제외 필요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비, 시설장비비 - 교사, 원장 인건비 지원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 누리과정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비비 - 교사, 원장 인건비 지원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 누리과정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기본보육료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 누리과정 운영비

이러한 운영비 형태로의 지원을 제외하고 산정된 부모 부담 보육료는 시설유형별로 각각 <표 V-3-7>, <표 V-3-8>, <표 V-3-9>와 같다.

총 보육·비용이 많은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부담 보육비는 인건비 지원여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현재 인건비 지원시설과의 인건비 수준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민간과 가정에는 최소한의 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교사 인건비 수준을 개선할 경우에는 보다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

〈표 V-3-7〉 국공립어린이집 부모 보육료

구분	단위: 원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이상
0세아	332,900	359,200	336,300	345,400	345,800	340,300
1세아	270,200	296,500	273,600	283,900	283,200	278,800
2세아	228,900	255,200	232,300	241,400	241,900	237,500
3세아	265,500	242,600	251,700	252,200	247,800	251,100
4세 이상아	231,900	209,000	219,300	218,600	214,300	217,600

〈표 V-3-8〉 법인어린이집 부모 보육료

구분	단위: 원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이상
0세아	365,400	391,700	368,800	377,900	378,300	372,800
1세아	302,700	329,000	306,100	316,400	315,700	311,300
2세아	261,400	287,700	264,800	273,900	274,400	270,000
3세아	298,000	275,100	284,200	284,700	280,300	283,600
4세 이상아	264,400	241,500	251,800	251,100	246,800	25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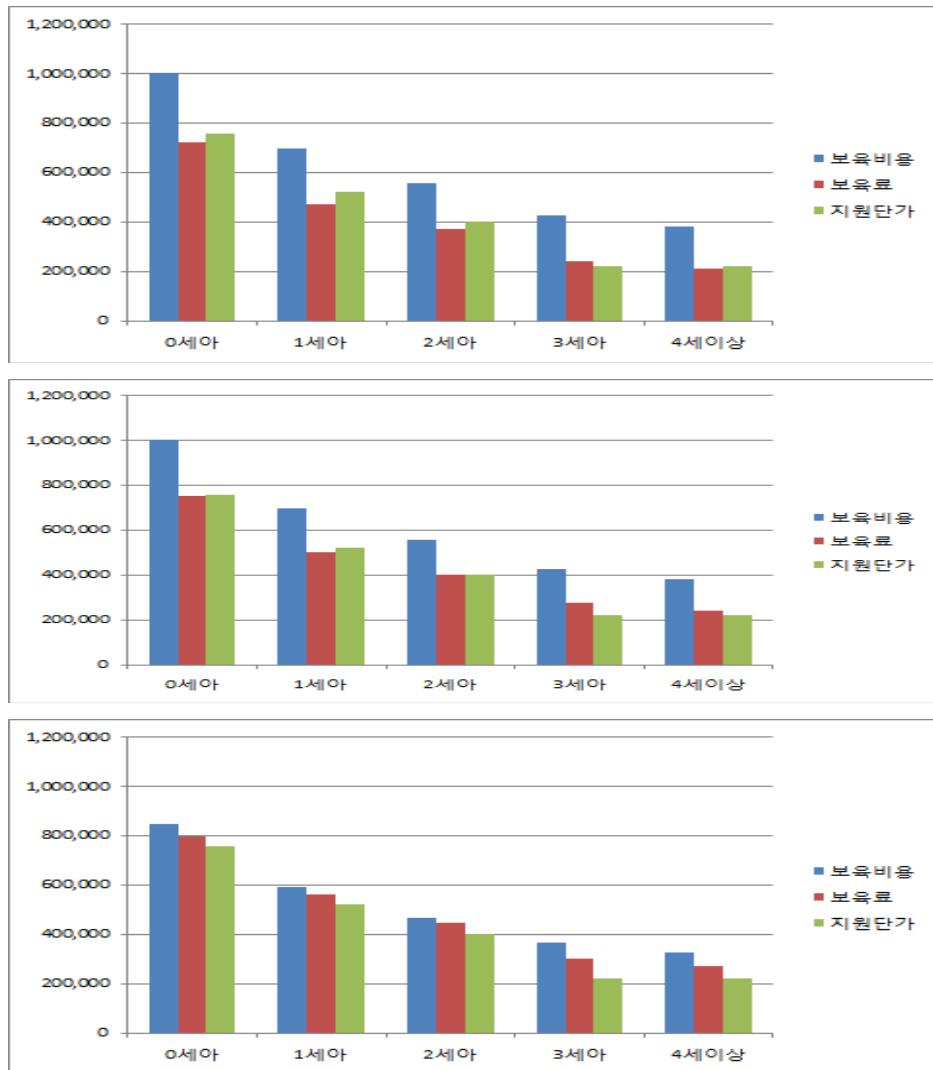
〈표 V-3-9〉 연령별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 부모 보육료

구분	20인 (가정)	단위: 원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이상	지원단가
0세아	428,900	465,700	436,600	437,500	429,600	425,300	424,600
1세아	386,200	414,600	385,400	387,500	379,600	375,300	373,400
2세아	336,200	360,500	331,300	333,400	325,500	321,200	320,500
3세아		311,600	303,300	292,500	290,400	283,800	281,900
4세 이상아	274,300	269,800	258,900	258,000	251,400	249,600	220,000

현재 정부 지원단가와 비교하여 보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은 영아의 산정된 보육료가 지원단가보다 낮다. 그러나 유아는 국공립 만4세 이상 아동 보육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단가가 낮다. 한편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는 지원단가보다 모두 높게 산정되었다.

<표 V-3-10>은 산출된 보육비용, 보육료 및 지원단가를 비교한 것이다. 영아 보육료와 지원단가에는 기본보육료가 포함되었다.



주: 영아는 기본보육료 포함

[그림 V-3-1] 77인 기준 국공립, 법인, 민간어린이집 보육비용, 보육료
산출가와 지원단가

〈표 V-3-10〉 77인 기준 보육비용, 보육료 및 지원단가 비교

구분	국공립·법인			민간		지원단가	단위: 원
	보육비용	국공립 보육료	법인 보육료	보육비용	보육료		
0세아	1,002,600	720,200	752,700	1,363,600	720,200	755,000	
1세아	697,900	470,500	503,000	871,900	470,500	521,000	
2세아	555,800	370,200	402,700	670,800	370,200	401,000	
3세아	427,900	242,600	275,100	427,900	242,600	220,000	
4세이상	380,000	209,000	241,500	380,000	209,000	220,000	

주: 영아는 기본보조금을 합한 금액임.

4. 시간단축보육 비용과 수용성

현재 보육비용은 종일제 보육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사실 어린이집은 운영시간 규정만 있고 이용시간 개념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운영시간은 암묵적으로 이용가능 시간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평일 8시간 근로라는 근로기준법도 준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시간이나 아동의 이용시간은 이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부분의 국가가 부모의 근로 및 기타 가정 사정을 반영하여 이용시간을 차등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올해 들어서 정부가 여성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보육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증대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과 아동의 이용시간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는 여러 차례 실시되었고, 정부에서도 여러 번 검토하였으나, 이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보육비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지원하여 산정된 비용은 모두 정규 근로자의 8시간 근로를 전제로 한 비용이다. 그러므로 이를 제대로 개선할 경우에 추가 비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12시간 보육을 8시간을 줄이니까 비용도 $2/3$ 으로 줄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물론 보육의 질을 생각하는 전문가나 정책 관계자에게도 수용 불가한 주장이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제4절에서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8시간+4시간 체제로 개편한다는 가정에서 각각의 보육비용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가. 시간단축보육 비용 산정 기준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8시간+4시간 체제로 이원화하여 7:30~15:30분과 15:30~19:30분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경우에 시간단축형 보육 비용과 더불어 12시간 보육비용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오전 단축형과 오후 반일반 보육 아동 보육비용은 종일제 보육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오전 반일반 보육비용은 교사는 종일제 정규 교사이고 업무추진비와 시설비는 별 영향이 없으므로 100%를 그대로 적용하고 교재교구비와 관리운영비는 10% 정도, 급식비는 15%를 감액하여 적용한 방안이다. 급식비는 오전오후 간식과 점심식사로 구성되는데 오후 간식 단가는 급식비의 15% 내외로 파악된다. 교재교구비의 경우는 종류와 수량이 줄지는 않으나 마모되는 속도가 다소 늦추어질 수 있다. 또한 종일제 보육에 적용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인건비 지원시설은 종일제 보육비용과 비교하여 연령별로 영아는 20인 시설 기준으로 연령별로 48,700원, 36,900원, 30,600원이 감소하고 유아는 평균적으로 15,000원 내외가 줄어든다. 감소액은 영아는 정부 지원 부모 보육료의 10~12% 이상이지만, 유아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단가의 7% 정도에 불과하다(표 V-4-1 참조).

〈표 V-4-1〉 단축보육시 감축 가능 보육비용: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준

구분	단위: 원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이상
0세	48,700	46,900	46,200	46,400	46,000	46,000	45,900
1세	36,900	35,100	34,400	34,600	34,200	34,200	34,100
2세	30,600	28,800	28,100	28,300	27,900	27,900	27,800
3세		16,300	15,600	15,800	15,400	15,400	15,300
4세 이상		15,600	14,900	15,100	14,700	14,700	14,600

다음으로 12시간을 보육하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추가되어야 한다. 수당 형태로 보전할 경우에 교사의 수당 수준을 하루에 1시간으로 책정하면 인건비의 1/8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한다. 이 금액은 교사대 아동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사대 아동 비율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1.5시간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에 그 금액은 0세아 11만원 수준, 1세아 66,800 원, 2세아 47,700원, 3세아 22,300원, 4세 이상이 16,700원이다.

보육 아동 중 8시간과 12시간 이용 아동의 비율이 5:5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재정중립은 불가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보다 많아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V-4-2〉 1.5시간 수당 지급시 수당 증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준

구분	단위: 원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이상
0세	111,300	111,300	111,300	111,300	111,300	111,300	111,300
1세	66,800	66,800	66,800	66,800	66,800	66,800	66,800
2세	47,700	47,700	47,700	47,700	47,700	47,700	47,700
3세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22,300
4세 이상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나. 시간단축형보육에 대한 수용 가능성

본 보고서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8시간+4시간 체제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8시간+4시간 체제로 이원화하여 7:30~15:30분과 15:30~19:30분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경우에 이에 대한 전반적 찬반과 시간단축형 보육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V-4-3〉은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8시간+4시간 체제로 이원화하여 7:30~15:30분과 15:30~19:30분으로 구분한다는 방안 자체에 대한 부모 의견이다.

〈표 V-4-3〉 이용시간 8+4 체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구분	보육 아동 부모					양육수당 아동 부모					계	(수)
	절대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잘 모름	절대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잘 모름		
보육아동												
전체	13.3	33.5	37.8	2.8	12.5	4.8	26.5	49.3	3.8	15.5	100.0	(600)
0세	19.0	32.0	34.0	2.0	13.0	3.0	34.0	50.0	1.0	12.0	100.0	(100)
1세	11.0	33.0	40.0	2.0	14.0	11.0	21.0	53.0	3.0	12.0	100.0	(100)
2세	14.0	32.0	40.0	2.0	12.0	5.0	22.0	52.0	3.0	18.0	100.0	(100)
3세	11.0	37.0	37.0	6.0	9.0	4.0	32.0	43.0	5.0	16.0	100.0	(100)
4세	15.0	33.0	36.0	3.0	13.0	4.0	26.0	44.0	6.0	20.0	100.0	(100)
5세	10.0	34.0	40.0	2.0	14.0	2.0	24.0	54.0	5.0	15.0	100.0	(100)

주: 보육아동은 1월 1일 기준 보육연령이고, 양육수당 수혜아동은 00월 기준 생활연령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이용시간에 대한 부모 의견조사」 결과임.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는 40.6%가 찬성하였고,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은 51.2%가 찬성하였다. 아동 연령별 차이는 일관성이 낮고 집단간의 차이도 의미를 부여할 수준이 아니었다.

다음은 제도 도입시 두 가지 시간유형의 서비스 중 하나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 질문은 인센티브 언급 없이 한 질문과 인센티브를 3만원 또는 5만원 지불했을 때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으로 세분화하였다. 조사결과, 보육아동은 이러한 서비스 이용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최소 28.7%~38.8%이었고, 양육수당 아동은 39.2%~52.0%이었다. 최소는 3만원 지급시 응답 비율이고 최대는 5만원 인센티브 지급시 응답 비율이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아동 연령별 차이는 일관성이 없고 모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가 정책 수용성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미취업모도 최대 5만원 인센티브 지급시로 52%~54% 수준이었다. 양육수당 수혜자의 경우에는 휴직 중인 부모들의 수용성이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별 차이도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4-4〉 이용시간 8+4 체제 도입시 8시간 이용 의사 있다는 비율

구분	보육아동				양육수당 수혜 아동				단위: %(명)
	일반적	5만원 지급시	3만원 지급시	(수)	일반적	5만원 지급시	3만원 지급시	(수)	
전체	32.3	38.8	28.7	(600)	43.8	52.0	39.2	(600)	
아동연령									
0세	30.0	42.0	30.0	(100)	44.0	61.0	50.0	(100)	
1세	32.0	41.0	30.0	(100)	48.0	48.0	35.0	(100)	
2세	33.0	44.0	34.0	(100)	52.0	67.0	50.0	(100)	
3세	35.0	37.0	25.0	(100)	34.0	38.0	30.0	(100)	
4세	29.0	31.0	24.0	(100)	39.0	49.0	37.0	(100)	
5세	35.0	38.0	29.0	(100)	46.0	49.0	33.0	(100)	
모취업여부									
취업	22.6	29.1	21.4	(327)	36.5	43.8	28.5	(137)	
휴직 중	40.6	40.6	31.2	(32)	56.7	58.3	45.0	(60)	
미취업	44.8	52.3	38.5	(239)	44.4	53.9	41.9	(399)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1.8	29.4	17.6	(17)	42.2	48.9	42.2	(45)	
150~249만원	35.6	50.6	35.7	(87)	42.4	54.4	38.4	(125)	
250~349만원	37.7	44.7	36.5	(159)	44.4	51.2	37.0	(162)	
350~499만원	31.7	37.4	23.6	(123)	40.4	50.0	37.5	(104)	
500만원 이상	28.8	30.8	23.7	(198)	48.0	54.0	42.7	(150)	

주: 보육아동은 1월 1일 기준 보육연령이고, 양육수당 수혜아동은 월 기준 생활연령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이용시간에 대한 부모 의견조사」 결과임.

<표 V-4-5>는 두 가지 시간유형의 서비스 중 하나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경우에 어떠한 유형의 서비스를 선택할 것인지를 알아본 결과이다. 이를 보면 보육아동의 78%, 양육수당 수혜 아동의 74%가 07:30~15:30 이용시간을 선택하였고 15:30~19:30 시간대를 선택한 비율은 보육아동 21%, 양육수당 아동 23% 수준이었다. 즉, 인센티브를 주면 좀 달라지기는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육아동 25% 정도가, 양육수당 수혜 아동의 32% 정도가 07:30~15:30 이용시간을 이용할 생각이 있고 보육아동 7% 정도, 양육수당 수혜 아동의 10.2% 정도가 15:30~17:30 시간대를 선택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아동 연령별 차이는 일관성이 없고 모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휴직 중인 부모들이 15:30~19:30 시간대에 대한 수용성이 다소 높았다. 소득 수준별 차이도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4-5> 이용시간 8+4 체제 이용시 이용시간대 선호

구분	보육아동				양육수당 수혜 아동				단위: %(명)
	07:30~ 15:30	15:30~ 19:30	잘 모름	계(수)	07:30~ 15:30	15:30~ 19:30	잘 모름	계 (수)	
전체	78.1	21.0	0.9	100.0(233)	74.4	23.1	2.6	100.0(312)	
아동연령									
0세	78.6	21.4	-	100.0(42)	77.0	16.4	6.6	100.0(61)	
1세	70.7	29.3	-	100.0(41)	68.8	31.3	-	100.0(48)	
2세	72.7	25.0	2.3	100.0(44)	74.6	23.9	1.5	100.0(67)	
3세	86.5	13.5	-	100.0(37)	73.7	23.7	2.6	100.0(38)	
4세	77.4	22.6	-	100.0(31)	77.6	20.4	2.0	100.0(49)	
5세	84.2	13.2	2.6	100.0(38)	73.5	24.5	2.0	100.0(49)	
모취업여부									
취업	75.8	22.1	2.1	100.0(95)	71.7	26.7	1.7	100.0(60)	
휴직 중	69.2	30.8	-	100.0(13)	62.9	31.4	5.7	100.0(35)	
미취업	80.8	19.2	-	100.0(125)	77.2	20.5	2.3	100.0(215)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80.0	20.0	-	100.0(5)	68.2	31.8	-	100.0(22)	
150~249만원	79.5	20.5	-	100.0(44)	79.4	19.1	1.5	100.0(68)	
250~349만원	78.9	21.1	-	100.0(71)	69.9	24.1	6.0	100.0(83)	
350~499만원	76.1	21.7	2.2	100.0(46)	78.8	17.3	3.8	100.0(52)	
500만원 이상	78.7	19.7	1.6	100.0(61)	72.8	27.2	-	100.0(81)	

주: 보육아동은 1월 1일 기준 보육연령이고, 양육수당 수혜아동은 월 기준 생활연령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이용시간에 대한 부모 의견조사」 결과임.

한편으로 이러한 두 가지 시간유형의 서비스 중 하나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보육아동은 모취업 등으로 63.8%이고 시간대가 부적절하다는 비율이 30%이었다. 양육수당 수혜아동 역시 모취업 등과 시간대 부적절이 각각 34% 수준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23%에 달하였다(표 V-4-6 참조).

응답자 특성별로는 영아가 모취업을 이유로 든 비율이 높고, 취업모 부모들이 역시 모취업을 이유로 든 비율이 월등하게 높으며, 소득수준별 차이는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4-6〉 인센티브 5만원 지급 시 8시간 미이용 이유

구분	보육아동					양육수당 수혜 아동					단위: %(명)
	모취업 등	시간대 부적절	인센티브 적어서	잘 모름	계(수)	모취업 등	시간대 부적절	인센티브 적어서	잘 모름	계(수)	
전체	63.8	29.7	3.5	2.9	100.0(340)	33.9	34.3	9.2	22.6	100.0(239)	
아동연령											
0세	80.4	17.6	2.0	-	100.0(51)	54.3	20.0	8.6	17.1	100.0(35)	
1세	59.3	29.6	1.9	9.3	100.0(54)	42.2	31.1	13.3	13.3	100.0(45)	
2세	67.9	28.3	1.9	1.9	100.0(53)	34.6	34.6	19.2	11.5	100.0(26)	
3세	57.6	37.3	5.1	-	100.0(59)	18.0	46.0	8.0	28.0	100.0(50)	
4세	49.3	40.3	6.0	4.5	100.0(67)	32.6	30.2	4.7	32.6	100.0(43)	
5세	73.2	21.4	3.6	1.8	100.0(56)	27.5	40.0	5.0	27.5	100.0(40)	
모취업여부											
취업	83.5	14.7	0.9	0.9	100.0(218)	62.9	21.4	7.1	8.6	100.0(70)	
휴직 중	44.4	38.9	11.1	5.6	100.0(18)	54.5	31.8	-	13.6	100.0(22)	
미취업	25.2	60.2	7.8	6.8	100.0(103)	17.1	40.4	11.6	30.8	100.0(146)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55.6	22.2	11.1	11.1	100.0(9)	33.3	6.7	13.3	46.7	100.0(15)	
150~249만원	43.2	48.6	5.4	2.7	100.0(37)	40.9	38.6	9.1	11.4	100.0(44)	
250~349만원	58.0	37.0	1.2	3.7	100.0(81)	25.0	35.0	13.3	26.7	100.0(60)	
350~499만원	62.7	30.7	4.0	2.7	100.0(75)	36.0	34.0	8.0	22.0	100.0(50)	
500만원 이상	75.8	18.8	3.1	2.3	100.0(128)	40.3	35.5	4.8	19.4	100.0(62)	

주: 보육아동은 1월 1일 기준 보육연령이고, 양육수당 수혜아동은 월 기준 생활연령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이용시간에 대한 부모 의견조사」 결과임.

VI. 향후 정책과제

1. 정책제언

최근 수년간 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는 여러 차례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 하는 방식으로 시설유형별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시설유형별 차이는 정부의 지원 방식과 현장 자료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어린이집 보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차이인 설치비와 시설유지비의 차이를 조사·분석하고, 연간 어린이집 보육비용 지출 자료를 수집하여 재무회계규칙 상 세출 항목을 어린이집 유형, 규모별로 분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보육비용 산출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보육비용 산정 방법

보육비용 산정 방법과 관련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보육’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외에 기준은 없다.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국가가 적정한 보육서비스 수준을 결정해 주기보다는 현재 현장에서 제공되는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표준보육으로 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현실에 기초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책이 현실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곤란하지만 앞으로의 지향성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이 바람직하다. 서비스의 수준은 표준보육비용에 바로 반영 되기 때문이다.

또한 표준보육비용은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 현재

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육비용 산정시 인건비, 급간식비 재료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비의 5개 항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왔고 업무추진비가 연구에 따라서 포함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 관리운영비에는 여비, 수용비와 수수료, 연료비가 포함되고 시설비에는 건축비 중심으로 산정되었다. 현재 재무회계 지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세출 항목의 일부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그 동안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연구 항목에 필요한 품목 선정도 연구자의 자의성이 강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각 항목 선정과 더불어서 항목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사회복지서비스업 평균임금이나 2, 3년제 대학 졸업자 여성 평균임금 수준, 또는 이보다는 높은 수준인 교육 서비스업이나 보건업의 평균임금 중 어느 수준에 맞출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급간식비의 경우에는 유기농식단에 대한 고려, 월 적용 일수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 모든 어린이집이 토요일에도 운영하라는 법적 기준을 유지할 것인가 실제 토요보육 아동이 거의 없는 실지에 맞출 것인지도 합의를 요한다. 관리운영비,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적절한 수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기본 시설 모형을 가정하여 적정한 수준의 비용 책정을 필요로 한다. 특히 업무추진비 세부항목인 직책급, 회의비 등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지침이 필요하다. 시설 건축비는 어린이집 대부분이 민간개인 및 가정 어린이집인 상황에서 실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용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각 지방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대규모의 최고 수준으로 건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표준보육비용 산정과 관련한 조사 시기, 기구 등 세부적 사항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보육비용의 지역 차이를 반영하여 세분화한다.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지역적 차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차이는 보육비용 산정시에 물가의 지역 차이와 지원의 지역 차이 두 가지가 고려 대상이다.

물가의 지역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전문업체를 통하여 물건을 배달받는 형태로 구매하기

때문에 전국 물가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듣다. 그러나 지역 물가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는 지역 차이는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른 하나의 지역 차이 반영은 운영비 지원의 차이이다. 각 지방정부가 운영비 형태로 지원하는 재정의 규모는 국가 전체로는 국고 지원사업 예산의 약 12% 정도로 산출되고 있으나 지역 차이가 심하다(서문희·이혜민, 2013). 그러므로 이러한 지방정부 지원금을 보육비용 산정시에는 물론, 보육료 산정 시에도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비용 관련 정책에 따른 보육비용 차이를 반영한다.

어린이집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의 관점은 보육비용 산정 시에도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식재료비 등 물건 구매 시에 규모의 경제는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교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 다른 관점은 산정된 단가를 일정한 규모를 하나 선택하여 정부가 일률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97인 시설을 기준으로 정부가 표준보육비용을 삼았고, 2014년에는 50인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단가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보다는 정교하게 규모별로 지원단가를 달리 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규모별로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면 규모별로 3단계 정도라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비용을 산정한다.

보육비용은 종일제로 산출되는데, 보육시간을 12시간과 8시간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보육비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보육비용 산출은 보육교사 등 근로자의 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12시간이 곧 이용시간과 동일시되는 불합리를 개선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는 8시간 이상 보육시 단기방안으로 교사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시간선택제 근로인력이나 전일제 근로인력 배치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추가되는 재정 규모는 적지 않다.

나. 시설유형 차이 고려

본 연구에서는 단가 기준 설정은 부분적으로 당위성보다는 현실에 근거하여 시설 유형의 차이를 반영하였고 개인 투자 비용에 대한 기회에 대해서는 보수적 입장을 적용하였다. 앞으로 '표준' 개념을 적용할 경우에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차이의 반영 가능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근본적 검토를 요한다.

첫째, 시설유형별 보육비용의 차이를 보육비용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를 요한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표준보육비용은 일정 조건을 전제로 산정된 비용이다. 또한 현 보고서는 현재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적 수준 차이를 가정으로 반영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단기적으로 비용의 상승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에 바로 반영될 수 없다는 구조적 특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바른 관점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동이 어느 유형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던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또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린이집에 투자되는 비용이 보육서비스의 질로 바로 연계된다고 확신할 수 없는 공급의 구조와 정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정하여 제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개인 투자 시설의 건물비 등 기회 비용을 보육비용 산정시 반영하지 않는 현 체계의 합리성 검토 및 대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다. 시설 설치유형도 다르고,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과 같이 동일하게 개인 설치 어린이집이라고 하여도 투자하는 자본의 정도와 자본의 형태가 다양하다. 또한 운영시 정원이 100% 모두 채워지는 것도 아니다.

보육비용 산정 시에 개인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 보장을 반영하는 연구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인이 투자한 어린이집의 실존과 어린이집은 설립주체와 무관하게 모두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법적 위치간의 괴리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보육비용의 활용

그동안 정부 지원으로 산정한 보육비용은 지방정부가 보육료 상한선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되었고 어린이집 단체가 주체가 되어 산정한 보육비용은 보육료 상한선이나 보육지원단가 중액 요청 자료로 사용되었다. 산정된 보육비용의 사용 측면에서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비용, 보육료, 보육지원단가 등 비용 관련 용어의 개념 차이 인식을 확산시킨다.

보육비용과 보육료 및 정부의 지원단가는 구분되어야 한다. 보육비용은 그비용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부담하는가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1인을 보육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다. 이 비용을 산정하는 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전제가 된다. 이러한 비용은 아동별로 부모보조금 형태와 시설 단위의 시설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

현재 보육료는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설별로 지원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보육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나 근무환경개선비는 표준보육비용 산정에는 인건비 요인으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부모보조금과 별도로 지원하므로 보육료 산정 시에는 제외되어야 한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금도 제외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에서 아동 1인 보육에 소요되는 보육비용은 동일하지만 시설보조금이 다르므로 보육료 상한선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유형별로 보육료 상한액이 다른 이유가 보육비용은 동일한데 지원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규범적으로 보면 아동이 어느 시설은 이용하던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에서 아동 1인 보육에 소요되는 보육비용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설로 직접 주는 보조금이 다르므로 보육료 상한선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의 지원단가는 말 그대로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단가는 국공립어린이집 부모 보육료를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무상보육이므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유아 보육비용,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 간에는 격차가 있다. 보육료 상한선은 보육비용을 따라 가지 못하고, 정부 지원 단

가는 보육료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일단 괴리는 줄여가야 하겠으나 국가 재정상태나 복지수준 또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보육비용 관련 개념상의 인식이 확산되어야 보육비용 산정 시에 시설 보조금이나 재무회계를 거치지 않고 교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당이 누락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둘째, 시설유형별 보육료 상한액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정부 지원단가와 비교하여 보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은 영아는 산정된 보육료가 지원단가보다 낮고 유아는 국공립 만4세 이상 아동 보육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단가가 낮다. 한편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원단가보다 모두 높게 산정되었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 지방정부가 보육료 상한액을 고시하고 이 금액은 지원단가보다는 다소 높게 책정되기는 한다.

라. 세부 회계 자료의 생산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으나 현상적 접근으로 보육비용을 산정할 때는 재무회계로 보고한 자료가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무회계 세출 계정과목이 보육비용이 들어가는 구조가 잘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 어린이집 지출이 사용처별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재무회계 세출 계정과목을 개선하거나 세목을 둘 필요가 있다. 표준보육비용과 재무회계규칙 계정과목 간의 관련성이 증대되고 연계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지출이 사용처별로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재무회계 세출 계정과목을 개선하거나 세목을 둘 필요가 있고, 또한 어린이집에서 계정과목에 맞추어 재무회계를 작성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인건비는 보육 관련 당국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항목이므로 세분화하여 실제 지출이 잘 나타나도록 보고 체계를 개선한다. 인건비 세출 계정과목 (목)을 기준으로 보면 일용잡급⁴⁰⁾, 교직원 기타 후생경비⁴¹⁾ 내역이 불분명하다. 어린이집 운영비(관)의 인건비(항) 중 기본급(목)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원장에 대한 기본급, 보육교사에 대한 기본급, 출사부 기본급, 운전기사 등 기타 인력 기본급을 구분한다. 또한 재무회계 세출예산과목 개정과 더불어 일용잡급에 대한 기준과

40)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임.

41)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비·급량비·연구연수비, 보육교직원 상용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수당 항목의 대상, 기준액을 설정하도록 한다. 수당도 제 성격별로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관리운영비(항)의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목)은 사회복지시설 세출예산과 목과 같이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도서구입비, 공고료·등기료·수수료 등을 지출하는 수용비·수수료(목)과 협회비, 화재보험료 등 기타 보험료 등을 지출하는 제세공과금(목), 우편료·전신전화료세,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등의 공공요금(목)으로 나눈다. 또한 같은 (항)의 차량비(목)은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과 기존에는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목)에서 지출되었던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를 차량비(목)에서 구분하여 지출하도록 한다.

한편 현재 기타운영비(목)에서 지출하던 건물임대료, 건물 용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은 재산조성비(관)의 시설비(항)의 각 (목)으로 지출하도록 한다. 건물비(목)을 두어 어린이집이 임대건물일 경우 건물임대료, 건물 용자금의 이자를 지출하게 한다. 또한 기존의 자산취득비(목)에서 일종의 자산인 차량 구입비나 할부금을 지출하게 한다. 신규로 적립금(관)을 두어서 어린이집 개·보수 등의 목적의 환경개선적립금을 적립하게 한다.

2. 맺는말

최근에 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는 여러 차례 추진되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3년부터 5년 연속 과제로 보육비용 산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연구는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관점에서 보육비용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교재교구비, 시설관리비, 인건비, 급간식비로 나눠서 검토하고, 항목을 구성하는 요소를 세분하여 항목별 비용을 추정하는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 하는 방식으로 시설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였다. 2013년도 기초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설치 주체와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육비용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별 요소를 고려하여 보육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설유형 특성을 반영한 보육비용을 추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선행 연구를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보육비용의 의미, 구성 항목 및

표준보육비용 산출 과정과 방법을 검토하고, 산출방법 차이에 의한 보육비용 산출을 비교 검토하였다. 어린이집 보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차이인 설치비와 시설유지비의 차이를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2013년 연간 어린이집 보육비용 지출 자료를 수집하여 재무회계규칙 상 세출 항목별을 어린이집 유형,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보육비용 구성 항목별로 시설규모 및 아동연령별 보육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연령별, 어린이집 규모별로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앞으로의 보육비용 산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전제로 연구자 개인의 결정과 선호 수준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표준보육비용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표준보육비용은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고, 각 항목별 서비스 수준도 규명되어야 하며, 조사 시기, 기구 등 세부적 사항도 명시화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상호(201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도시건축연구소.
-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현숙·신은수 외(2008). 연령별 적정 학급 규모를 통한 유아의무교육대비 표준 교육비 산정 연구. 교육인적자원부·승실대학교.
- 김혜금(2010).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표준보육료 산정.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박기백·김현숙 외(2005). 표준교육, 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조세연구원.
- 법인세법(2014). 범제처.
- 변용찬·임유경(2002). 표준보육단가 평가와 단가 산출. 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 201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 삼성복지재단(2000). 서울특별시 보육시설의 표준보육단가 산출 및 재정지원제도에 관한 제언.
- 서문희·김은설·박수연 외(2008).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방안 연구 기획재정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유영준·이영미·유옥수·장승구·이세원·이혜민(2013b). 표준보육비용 산출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이영미·박형진·김희정(2013a).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비용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송명희 외(2012). 서울시 가정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안: 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서울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한국여성노동연구소.
- 이미화·서문희·임양미·엄지원(2012). 표준보육료 산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임양미(2010). 경기도 민간·가정시설 보육료 산정 연구- 만 3~5세아를 중심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지방재정법(2014). 법 제처.

한국종합경제연구원(2013). 민간어린이집 표준보육료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4). 2013. 3~2014. 2. 어린이집 세입세출 회계자료.

Abstract

Estimation of the Childcare Cost Considering Agents of Foundation

Moonhee Suh Misun Yang Dongha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practical child-care costs in the light of agents of foundation(Public daycare center, Social welfare corporations, private one, home one and so on). For conducting this research, we reviewed advanced research about components of child-care cost, used lots of daycare centers' financial accounting data from Korea 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Servic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1,360 daycare centers and hold advisory conference.

Based on the results, public daycare centers are usually more frequently funded by government for the expense of renovation and extension than social welfare organization daycare centers are. In addition, private daycare centers and home daycare centers have characteristics that most daycare center delegators are private investor and amount of one private investment per a child is at least 800 million won to 1,700 million won which half the cost is the installation loan. Using short term debt is common, and long term debt is using 37% of surveyed daycare centers and increasingly common. Especially, private daycare center's earings have the highest percentage of total revenue than other type agents of Foundation and child recruitments are directly connected to management of daycare center.

In analysis of itemized cost, it is showed mainly that the cost of equipment which comprised of 4 items; building costs, play ground equipment cost, cost of facilities maintenance costs vary according to the agent types. Social welfare corporation daycare center's is 45,000 won, private daycare center's is 28,500 won and home daycare center's is 24,000 won. In

addition, we estimate the child-care cost considering service time which categorized of two types; the whole day service and a shortened form. If personnel expenses for 12 hours service provider which work extra 1.5 hours preserve the paid type of allowance, at least there will be additional compensation at 3/16 currently personnel expenses.

We suggest that estimating child-care cost according to agent type of foundation must focus that private investor will be compensated for opportunity costs of building cost.

부 록

부록 1. 부표

부록 2. 조사표

부록 1. 부표

〈부록 표 III-1-1〉 조사 대상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시설인가 및 건축연도

구분	시설인가 연도						건축연도						단위: %(개소) 계(수)
	1990 이전	1990~ 1994	1994~ 1999	2000~ 2004	2005~ 2009	2010 이후	1990 이전	1990~ 1994	1994~ 1999	2000~ 2004	2005~ 2009	2010 이후	
전체	18.8	19.6	19.6	6.9	17.8	17.3	16.1	12.9	18.3	11.1	23.5	18.1	100.0(404)
지역규모													
대도시	25.4	20.2	23.7	7.5	11.0	12.3	20.6	15.4	18.9	11.8	18.0	15.4	100.0(125)
중소도시	10.5	15.4	14.7	7.0	26.6	25.9	10.5	9.8	16.1	11.2	29.4	23.1	100.0(189)
농어촌	9.1	33.3	12.1	3.0	27.3	15.2	9.1	9.1	24.2	6.1	36.4	15.2	100.0(90)
$\chi^2(dF)$			45.5(10)***							21.6(10)*			
정원													
76인 이하	1.6	16.0	12.0	4.8	32.8	32.8	11.2	16.0	11.2	8.0	31.2	22.4	100.0(139)
77-99인	23.7	17.5	21.9	9.6	14.9	12.3	21.1	10.5	22.8	14.9	15.8	14.9	100.0(134)
100-125인	29.5	22.3	23.2	6.3	8.9	9.8	17.9	8.0	20.5	10.7	25.0	17.9	100.0(53)
126인 이상	26.4	26.4	24.5	7.5	7.5	7.5	13.2	20.8	20.8	11.3	18.9	15.1	100.0(78)
$\chi^2(dF)$			89.7(15)***							26.7(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부록 표 III-2-1〉 조사 대상 법인어린이집 건축연도

구분	1990이전	1990~1994	1994~1999	2000~2004	2005~2009	2010이후	단위: %(개소) 계(수)
	9.7	24.8	42.1	11.6	10.6	1.2	
전체	9.7	24.8	42.1	11.6	10.6	1.2	100.0(404)
지역규모							
대도시	9.6	22.4	41.6	12.8	11.2	2.4	100.0(125)
중소도시	10.6	23.3	45.5	9.5	10.6	0.5	100.0(189)
농어촌	7.8	31.1	35.6	14.4	10.0	1.1	100.0(90)
$\chi^2(dF)$			-				
정원							
76인 이하	8.6	18.0	22.3	23.0	25.2	2.9	100.0(139)
77-99인	7.5	26.1	53.7	9.0	3.7	-	100.0(134)
100-125인	9.4	26.4	56.6	3.8	1.9	1.9	100.0(53)
126인 이상	15.4	33.3	47.4	1.3	2.6	-	100.0(78)
$\chi^2(dF)$			103.3(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재정운영 조사」 결과임.

*** $p < .001$

〈부록 표 III-3-1〉 조사 대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년도

구분	단위: %(개소)				
	2000년 이전	2000~2004년	2005~2009년	2010년 이후	계(수)
전체	18.0	21.4	34.1	26.5	100.0(551)
정원					
20인 이하	8.2	18.3	41.6	31.9	100.0(279)
43~54인	29.5	27.3	25.0	18.2	100.0(44)
68~85인	42.3	19.2	19.2	19.2	100.0(26)
86~113인	24.6	23.2	26.1	26.1	100.0(69)
120~159인	20.8	31.2	31.2	16.9	100.0(77)
160인 이상	33.9	17.9	25.0	23.2	100.0(56)
지역규모					
서울	34.4	18.8	34.4	12.5	100.0(64)
수도권	22.3	15.7	38.8	23.1	100.0(121)
광역시	16.5	25.6	24.8	33.1	100.0(121)
시도	13.9	24.2	36.4	25.5	100.0(165)
읍면	8.8	20.0	36.3	35.0	100.0(8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임.

〈부록 표 V-3-1〉 국공립·법인어린이집 0세 1인당 비용

구분	단위: 원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인건비		862,300	833,800	838,600	829,000	822,500	825,300
급간식비		23,600	23,600	23,600	23,600	23,600	23,600
교재교구비		57,800	57,800	57,800	57,800	57,800	57,800
관리운영비		42,294	36,647	37,544	34,230	34,160	33,283
업무추진비		8,070	5,900	4,449	4,518	3,659	3,020
시설비		45,248	44,846	44,846	44,846	44,846	44,846
소계		1,039,312	1,002,593	1,006,839	993,994	986,565	987,849

〈부록 표 V-3-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1세 1인당 비용

구분	단위: 원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인건비		550,600	522,100	525,700	517,300	510,800	512,500
급간식비		40,500	40,500	40,500	40,500	40,500	40,500
교재교구비		47,900	47,900	47,900	47,900	47,900	47,900
관리운영비		42,294	36,647	37,544	34,230	34,160	33,283
회의비		8,070	5,900	4,449	4,518	3,659	3,020
시설비		45,248	44,846	44,846	44,846	44,846	44,846
소계		734,612	697,893	700,939	689,294	681,865	682,049

〈부록 표 V-3-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2세 1인당 비용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단위: 원
인건비		416,529	388,029	391,629	383,229	376,629	379,529	
급간식비		44,600	44,600	44,600	44,600	44,600	44,600	
교재교구비		35,800	35,800	35,800	35,800	35,800	35,800	
관리운영비		42,294	36,647	37,544	34,230	34,160	33,283	
업무추진비		8,070	5,900	4,449	4,518	3,659	3,020	
시설비		45,248	44,846	44,846	44,846	44,846	44,846	
소계		592,541	555,822	558,868	547,223	539,694	541,078	

〈부록 표 V-3-4〉 국공립·법인어린이집 3세 1인당 비용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단위: 원
인건비		248,900	243,900	235,800	234,400	225,500	226,000	
급간식비		48,600	48,600	48,600	48,600	48,600	48,600	
교재교구비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관리운영비		42,294	36,647	37,544	34,230	34,160	33,283	
업무추진비		8,070	5,900	4,449	4,518	3,659	3,020	
시설비		45,248	44,846	44,846	44,846	44,846	44,846	
소계		441,112	427,893	419,239	414,594	404,765	403,749	

〈부록 표 V-3-5〉 국공립·법인어린이집 4,5세 1인당 비용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단위: 원
인건비		207,000	203,200	195,000	192,500	183,600	185,300	
급간식비		48,600	48,600	48,600	48,600	48,600	48,600	
교재교구비		40,800	40,800	40,800	40,800	40,800	40,800	
관리운영비		42,294	36,647	37,544	34,230	34,160	33,283	
업무추진비		8,070	5,900	4,449	4,518	3,659	3,020	
시설비		45,248	44,846	44,846	44,846	44,846	44,846	
소계		392,012	379,993	371,239	365,494	355,665	355,849	

〈부록 표 V-3-6〉 가정·민간어린이집 0세 1인당 비용

구분	20인(가정)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단위: 원
인건비	676,500	730,700	706,500	708,700	702,600	697,100	698,700	
급간식비	23,600	23,600	23,600	23,600	23,600	23,600	23,600	
교재교구비	57,800	57,800	57,800	57,800	57,800	57,800	57,800	
관리운영비	46,000	29,931	26,952	25,539	24,563	26,056	23,956	
업무추진비	12,000	5,910	4,377	4,499	3,635	3,370	3,180	
시설비	23,989	28,848	28,446	28,446	28,446	28,446	28,446	
소계	839,889	876,789	847,675	848,584	840,644	836,372	835,682	

〈부록 표 V-3-7〉 가정·민간어린이집 1세 1인당 비용

구분	20인(가정)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단위: 원
인건비	419,800	465,600	441,300	444,700	438,600	433,100	433,500	
급간식비	40,500	40,500	40,500	40,500	40,500	40,500	40,500	
교재교구비	47,900	47,900	47,900	47,900	47,900	47,900	47,900	
관리운영비	46,003	29,931	26,952	25,539	24,563	26,056	23,956	
업무추진비	12,000	5,910	4,377	4,499	3,635	3,370	3,180	
시설비	23,989	28,848	28,446	28,446	28,446	28,446	28,446	
소계	590,192	618,689	589,475	591,584	583,644	579,372	577,482	

〈부록 표 V-3-8〉 가정·민간어린이집 2세 1인당 비용

구분	20인(가정)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단위: 원
인건비	310,229	351,929	327,629	331,029	324,929	319,429	321,029	
급간식비	44,600	44,600	44,600	44,600	44,600	44,600	44,600	
교재교구비	35,800	35,800	35,800	35,800	35,800	35,800	35,800	
관리운영비	46,003	29,931	26,952	25,539	24,563	26,056	23,956	
업무추진비	12,000	5,910	4,377	4,499	3,635	3,370	3,180	
시설비	23,989	28,848	28,446	28,446	28,446	28,446	28,446	
소계	472,621	497,018	467,804	469,913	461,973	457,701	457,011	

〈부록 표 V-3-9〉 민간어린이집 3세 1인당 비용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단위: 원
인건비		210,400	212,000	202,500	202,200	194,400	194,800	
급간식비		48,600	48,600	48,600	48,600	48,600	48,600	
교재교구비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관리운영비		29,931	26,952	25,539	24,563	26,056	23,956	
업무추진비		5,910	4,377	4,499	3,635	3,370	3,180	
시설비		28,848	28,446	28,446	28,446	28,446	28,446	
소계		371,689	368,375	357,584	355,444	348,872	346,982	

〈부록 표 V-3-10〉 민간어린이집 4,5세 1인당 비용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단위: 원
인건비		175,300	175,700	166,100	167,000	159,200	159,700	
급간식비		48,600	48,600	48,600	48,600	48,600	48,600	
교재교구비		40,800	40,800	40,800	40,800	40,800	40,800	
관리운영비		29,931	26,952	25,539	24,563	26,056	23,956	
업무추진비		5,910	4,377	4,499	3,635	3,370	3,180	
시설비		28,848	28,446	28,446	28,446	28,446	28,446	
소계		329,389	324,875	313,984	313,044	306,472	304,682	

부록 2. 조사표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민간개인·가정어린이집 재정운영에 관한 조사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비용 산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민간개인과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게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어린이집 명					전화번호				
어린이집 코드									
시도번호					지역구분	① 서울		② 수도권(인천, 경기)	
						③ 시도의 동		④ 시도의 읍면	
유형	① 민간개인어린이집				② 가정어린이집				
정원	_____명				현원	_____명			

* 표 참고하여 '시도번호' 칸에 적어주세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어린이집의 설치 연도는 언제 입니까? _____년

2. 귀 어린이집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건평	평	대지	평
----	---	----	---

3. 귀 어린이집 건물의 매입·임대 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부지 매입 후 어린이집 신축(☞ 4번으로) ② 일반 건물 매입 후 어린이집으로 개보수(☞ 4번으로)
 ③ 어린이집 건물 매입 후 개보수(☞ 4번으로) ④ 일반 건물 임대하여 어린이집으로 개보수(☞ 5번으로)
 ⑤ 어린이집 건물 임대하여 개보수(☞ 5번으로)

4. 어린이집을 신축 및 매입한 경우(3번 질문에 ①, ②, ③번 응답)에만 응답합니다.

4-1. (어린이집 신축 및 매입한 경우) 어린이집 설치 시 비용은 어느 정도 부담하였습니까? 각 항목별로 적어 주십시오.

구분	부지	건축비	건물 구입비	개보수비	총 비용
신축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개보수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4-2. (어린이집 신축 및 매입한 경우) 귀 어린이집 설치 시 부지 또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권이나 타인으로부터 융자를 받았습니까? 최초 융자 규모는 어느 정도 이었습니까?

- ① 받음 (얼마: 만원) ② 안 받음

4-3. 현재 융자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또한 이자율은 몇 %입니까?

융자금:	만원	이율:	연 %	(☞ 6번으로)
------	----	-----	-----	----------

4-4. (어린이집 매입한 경우) 어린이집 매입 시 권리금을 부담하였습니까? 권리금을 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부담함(얼마: 만원) ② 부담하지 않음

5.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2번 질문에 ④, ⑤번 응답)에만 질문합니다.

5-1.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 임대 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전세 ② 전·월세 ③ 월세

5-2.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 어린이집을 최초 설치 시 비용은 어느 정도 부담하였습니까?

각 항목별로 적어 주십시오.

권리금	보증금	개보수비	총계
만원	만원	만원	만원

5-3. 전월세로 임대한 경우 귀 어린이집은 현재 보증금과 월세를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현재 보증금:	만원	현재 월세:	만원
---------	----	--------	----

6. 현재 귀 어린이집 건물(일반 건물일 경우에 어린이집 사용 부분 만)의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또한 현재 귀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공시지가는 평당 얼마입니까?

매매가:	만원	소재지역	공시지가	평당	만원
------	----	------	------	----	----

7. 귀 어린이집은 2013년에 한해동안 단기 차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총 차입금은 얼마이고, 이를 재무회계 상에서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또한 단기 차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단기차입 여부 및 차입금액	① 있음 (얼마: 총 만원) ② 없음
2) 회계처리 방법 (있는 대로 모두 ✓ 표시)	<input type="checkbox"/> ① 차입 처리 <input type="checkbox"/> ② 원장급여 반납 <input type="checkbox"/> ③ 전입금 처리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3) 이유(있는 대로 모두 ✓ 표시)	<input type="checkbox"/> ① 개보수비 <input type="checkbox"/> ② 퇴직금 <input type="checkbox"/> ③ 급여 <input type="checkbox"/> ④ 식자재 <input type="checkbox"/> ⑤ 공공요금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8. 귀 어린이집은 최근 3년간(2011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 개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개보수 비용은 얼마이고,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또한 그 비용을 어린이집 회계에서 세출로 반영 하였습니까?

1) 개보수 여부 및 소요 비용	① 있음 (얼마: 만원) ② 없음
2) 개보수비 조달 방법 (있는 대로 모두 ✓ 표시)	<input type="checkbox"/> ① 운영자 및 친인척 사비 <input type="checkbox"/> ② 적립금 사용 <input type="checkbox"/> ③ 금융권 대출 <input type="checkbox"/> ④ 개인으로부터 차입
3) 개보수비 어린이집 회계에 세출로 반영 여부	① 어린이집 회계에 세출로 모두 반영 ② 어린이집 회계에 일부 세출로 반영 ③ 어린이집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운영자가 알아서 처리

9. 귀하는 최근 3년간(2011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어린이집 회계에는 반영하지 않고 원장이 개인적으로 장기 차입(2년 이상 상환하는 경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를 어디에서 차입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장기차입 여부 및 차입금액	① 있음 (얼마: 총 만원) ② 없음
2) 차입 대상 (※ 있는 대로 모두 ✓ 표시)	<input type="checkbox"/> ① 운영자 및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② 제3자 개인 <input type="checkbox"/> ③ 금융권 대출
3) 이유 (※ 있는 대로 모두 적어주세요)	

10. 어린이집 재무회계 관리운영비(항)의 기타운영비(목) 지출을 총 보육료 수입의 15% 이내로 권장합니다.
귀 어린이집 세출 중 기타 운영비 항목은 전체 지출의 총 몇 %를 차지합니까?

2014년 4월 결산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2014년 4월 기준 전체 지출의 총 ()%

10-1. (기타운영비(목) 지출이 있는 경우) 기타운영비 사용처가 어디인지 전체를 100%로 하였을 때 그 비율을 적어주십시오.						
구분	융자금 이자	임대료	개보수·차량구입 위한 적립금	차량할부금	기타	계
비율	%	%	%	%	%	100%

11.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임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을 설치한 원장(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은 어느 정도의 급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 원

12. 귀 어린이집은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합니까?

① 동일(☞ 13번으로) ② 다름(☞ 12-1번으로)

12-1. (② 원장과 대표자가 다른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 | | | | |
|---------|-----------|---------|-----------|
| ① 행정사무원 | ② 통학차량 운행 | ③ 보육교사 | ④ 취사부 |
| ⑤ 영양사 | ⑥ 간호사 | ⑦ 기타() | ⑧ 참여하지 않음 |

12-2. (② 원장과 대표자가 다른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가 보육관련 자격을 취득하였습니까?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있는대로 모두 **✓ 표** 해 주세요.

- ① 보육교사 3급 ② 보육교사 2급 ③ 보육교사 1급 ④ 원장
 ⑤ 영양사 ⑥ 간호사 ⑦ 기타() ⑧ 없음

13. 귀 어린이집에 운영자(대표자와 원장 포함) 가족이나 친인척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한다면 어떤 역할로 참여합니까? 참여 형태와 참여 인원수를 각각 기입해 주세요.(중복 응답 가능)

- ① 보육교사(명) ② 차량기사(명) ③ 죄사부(명)
 ④ 사무원(명) ⑤ 기타(명)

14. 귀 어린이집은 퇴직적립금을 어떤 형태로 적립합니까?

- ① 퇴직연금 보험 ② 어린이집 명의 별도 통장 적립
 ③ 기타() ④ 적립하지 않음

15. 귀 어린이집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보조금이나 회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비용 및 보조금 반환, 시정 및 휴지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는 대로 모두 **✓ 표** 해 주세요.

- ①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 ② 시정 명령 ③ 어린이집 휴지

15-1. 보조금이나 회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I. 원장 일반 사항

1. 귀하의 연령은 만 몇 세입니까? 만 _____ 세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자 ② 남자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2, 3년제)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졸업

4. 귀하의 어린이집 총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2014년 4월을 기준 개월 단위로 환산하여 적어주십시오.)

총 어린이집 교사 경력	총 _____ 개월
총 어린이집 원장 경력	총 _____ 개월
현재 어린이집 원장 경력	총 _____ 개월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정운영에 관한 조사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비용 산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게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문의처: 이동하 연구원(02-398-7760, dongha04@kicce.re.kr)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서문희 선임연구위원(02-398-7711, suhmh@kicce.re.kr)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어린이집 명				전화번호					
어린이집 코드									
시도번호				지역구분		① 서울		② 수도권(인천, 경기)	
유형	① 일반 ② 장애아 전담 ③ 장애아통합 ④ 기타()			③ 시도의 동		④ 시도의 읍		⑤ 시도의 면	
정원	_____명			현원		_____명			

* 표 참고하여 '시도번호' 칸에 적어주세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 비용에 관한 질문

1. 귀 어린이집의 시설인가 연도는 언제입니까? _____년

2. 귀 어린이집 건물의 건축연도는 언제입니까? _____년

3. 귀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는 어떠합니까?

- ① 법인단체 위탁 ② 개인 위탁 ③ 직영

4. 귀 어린이집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건평 :	()평	대지 :	()평
------	------	------	------

5. 귀 어린이집의 정원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설치 시 정원과 현재 정원을 적어 주십시오.

설치 시 정원 :	()명	현재 정원 :	()명
-----------	------	---------	------

6. 귀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은 농어촌 특례 적용 지역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7. 귀 어린이집의 교사는 초과근무를 합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가끔 있음(문항 7-1로) ③ 자주 있음(문항 7-1로)

7-1. 초과근무가 있다면, 귀 어린이집은 초과근무 교사에게 수당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 ① 일정 금액을 일괄 동일하게 지급
 ② 어린이집이 정한 시간당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
 ③ 호봉 반영하여 차등하여 지급
 ④ 호봉과 근로기준법 반영하여 평일 금액의 1.5배로 계상하여 차등 지급
 ⑤ 수당 지급하지 않음 ⑥ 기타()

8. 귀 어린이집에는 청소와 사무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있다면 고용형태는 어떠하며, 주당 몇 시간 정도씩 일을 합니까? (※ 9월 기준)

구분	1) 여부	2) 고용형태	3) 주당 일하는 시간
1) 청소 인력	① 있음(문항 2로) ② 없음	① 종일제 ② 시간제 ③ 외부위탁 ④ 기타()	주당 ()시간
2) 사무업무 인력	① 있음(문항 2로) ② 없음	① 종일제 ② 시간제 ③ 외부위탁 ④ 기타()	주당 ()시간

9. 귀 어린이집의 전체 누리과정 반 수와 근로형태별 보조교사 및 운영도우미 수를 적어 주십시오.

(※ 누리과정 운영지원금으로 채용한 누리과정 보조교사와 운영도우미만 해당합니다. 9월말 기준)

1) 누리과정반 수	2) 누리과정 보조교사 수			3) 운영도우미
	종일제	시간제	총계	
개반	명	명	명	명

10. 귀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운영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2014년 상반기(3월~9월)에 지원받은 전체 운영지원금을 100%라고 하고 각 항목별 비율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인건비	교재교구비	기자재 구입비	기타	총계
비율	%	%	%	%	100.0%

11. 귀 어린이집은 2010부터 2014년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시설 개보수, 증축, 장비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입니까? 또한 가장 마지막으로 지원받은 해는 언제이고, 얼마를 지원 받았으며, 이 때 자부담은 얼마인지 적어 주세요.(※ 어린이집이 시설개보수비를 직접 지원받거나 시군구가 지원금으로 직접 공사하는 경우 모두 포함)

구분	지원 여부	횟수	가장 최근 받은 지원		
			연도	지원금	자부담
1) 개보수비	① 지원 ② 미지원	회	년	만원	만원
2) 증개축비	① 지원 ② 미지원	회	년	만원	만원
3) 장비비	① 지원 ② 미지원	회	년	만원	만원

- 12 귀 어린이집은 100% 자부담으로 시설 개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3년 기준)

① 있음(☞ 문항 12-1로) ② 없음

- 12-1. 시설 개보수한 경우, 공사비는 연 평균 어느 정도 부담하였습니까?

연 평균 ()천 ()백만원 정도 들었음

13. 귀 어린이집은 퇴직적립금 이외에 개보수 등의 용도를 위한 적립금이 있습니까?

① 있음(☞ 문항 13-1-1로) ② 없음

- 13-1. 퇴직적립금 외에 개보수 등을 위한 적립금이 있는 경우, 어떤 형태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있는 대로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저축성 보험 ② 재무회계 상 이월금 ③ 기타()

- 13-2. 적립금 규모는 총 어느 정도 됩니까?(2014년 9월말 기준)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③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④ 3,000만원 이상

14. 귀 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합니까? 운영한다면 운영하는 차량은 몇 대이고, 평일 하루 평균 운행거리와 월 평균 연료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운영여부	2) 차량수	3) 평일 하루 평균 운행거리	4) 월 평균 연료비
① 운행(☞ 문항 2로) ② 운행하지 않음	대	km	천원

15. 어린이집 재무회계 관리운영비(항)의 기타운영비(목) 지출을 총 보육료 수입의 15% 이내로 권장합니다.

귀 어린이집의 세출 중 기타운영비 항목은 전체 지출의 총 몇 %를 차지합니까?

2014년 상반기 지출 기준(3월~9월까지)으로 응답해 주세요.

201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지출의 총 ()%

- 15-1. (기타운영비(목) 지출이 있는 경우) 기타운영비 사용처가 어디인지 전체를 100%로 하였을 때 그 비율을 적어주십시오.

구분	적립금	차량할부금	기타	계
비율	%	%	%	100%

16. 아동의 귀가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3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으로 구분하여 가정 여건상 장시간 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에게만 12시간 보육을 지원하고 그 이외의 아동은 3시 30분에 귀가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16-1.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찬성 ④ 매우 찬성

16-2. 만약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면, 귀 어린이집 재원아 중 어느 정도가 3시 30분 정도에 귀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전체 원아 중 ()%

II. 원장 일반 사항

※ 민간개인·가정어린이집 재정운영조사표와 동일하므로 생략함.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재정운영에 관한 조사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비용 산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특수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법인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게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어린이집 명			
어린이집 코드			
시도번호		전화번호	
유형	① 일반 ② 장애아 전담	지역구분	③ 서울 ④ 수도권(인천, 경기) ⑤ 시도의 동 ⑥ 시도의 읍 ⑦ 시도의 면
정원	_____명	현원	_____명

* 표 참고하여 '시도번호' 칸에 적어주세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I.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어린이집의 시설인가 연도는 언제 입니까? _____년
2. 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은?
 ① 어린이집 설치 고유 목적 법인 ② 일반 사회복지법인
3. 귀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모두 몇 개소입니까? _____개소
4. 귀 어린이집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건평	평	대지	평
----	---	----	---

5. 어린이집 신축 시 정부의 설치비 지원 평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_____평
6. 어린이집 신축 시 설립자 자산은 어느 정도이었습니까? _____억 _____천만원
7. 귀 어린이집 설치 시 부지 또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권이나 타인으로부터 융자를 받았습니까? 최초 융자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현재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① 받음 (최초 융자금: 만원), (현재 융자금: 만원) ② 안 받음
8. 현재 귀 어린이집 건물의 재산평가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물:	만원	대지:	만원
-----	----	-----	----

9. 귀 어린이집의 정원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설치 시와 현재 정원을 적어 주십시오.
 (※ 정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동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설치 시 정원 ()명	현재 정원 ()명
--------------	------------

10. 귀 어린이집의 소재 지역은 농어촌 특례 적용 지역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귀 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합니까? 운영한다면 운영 차량은 몇 대이고, 평일 하루 평균 운행거리와 월 평균 연료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운행여부	2) 차량수	3) 평일 하루 평균 운행거리	4) 월 평균 연료비
(1) 운행(☞문항 2)로) (2) 운행하지 않음	대	km	천원

12. 귀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출퇴근 시 차량 제공 또는 숙소 등을 제공합니까? 해당 하는 경우 빈 칸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1) 해당 여부	2) 지원 시		
		(1) 대상 교사 수	(2) 월 비용 추정	
1) 별도 교사 수당	① 지급(☞문항 2)로) ② 미지급	명		천원
2) 출퇴근 지원	① 지원(☞문항 2)로) ② 미지원	명		천원
3) 숙소 제공	① 지원(☞문항 2)로) ② 미지원	명		천원

13. 귀 어린이집은 2010부터 2014년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시설 개보수, 증축, 장비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입니까? 또한 가장 마지막으로 지원받은 해는 언제이고, 얼마를 지원 받았으며, 이때 자부담은 얼마인지 적어 주십시오.(※ 어린이집이 시설개보수비를 직접 지원받거나 시군구가 지원금으로 직접 공사하는 경우 모두 포함)

구분	1) 지원 여부	2) 횟수	3) 가장 최근에 받은 지원		
			(1) 연도	(2) 지원금	(3) 자부담
1) 개보수비	① 지원(☞문항 2)로) ② 미지원	회	년	만원	만원
2) 증개축	① 지원(☞문항 2)로) ② 미증축	회	년	만원	만원
3) 장비비	① 지원(☞문항 2)로) ② 미장비	회	년	만원	만원

14. 귀 어린이집은 2013년에 한 해 동안 단기 차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총 차입금은 얼마입니까?

- ① 있음 (얼마: 총 만원)(☞ 문항 14-1, 14-2로) ② 없음(☞ 문항 15로)

14-1. 단기 차입한 경우, 재무회계 상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 ① 재무회계 처리(☞ 문항 14-1-1로) ② 재무회계 비 상계 처리

14-1-1. 단기 차입금을 재무회계 처리하는 경우, 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해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차입 처리 | <input type="checkbox"/> ② 기부금 처리 |
| <input type="checkbox"/> ③ 전입금 처리 |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

14-2. 단기 차입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는 대로 모두 표해 주십시오.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개보수비 | <input type="checkbox"/> ② 퇴직금 | <input type="checkbox"/> ③ 급여 |
| <input type="checkbox"/> ④ 식자재 | <input type="checkbox"/> ⑤ 공공요금 |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

15. 귀 어린이집은 최근 3년간(201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상의 어려움으로 원장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다면, 그 금액을 각 연도별로 적어 주십시오.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만원	만원	만원

16. 어린이집 재무회계 관리운영비(항)의 기타운영비(목) 지출을 총 보육료 수입의 15% 이내로 권장합니다.

귀 어린이집 세출 중 기타 운영비 항목은 전체 지출의 총 몇 %를 차지합니까?

2014년 상반기 지출 기준(3월~9월)으로 응답해 주세요.

201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지출의 총 ()%

16-1. (기타운영비(목) 지출이 있는 경우) 기타운영비 사용처가 어디인지 전체를 100%로 하였을 때 그 비율을 적어주십시오.

구분	융자금 이자	개보수·차량구입 위한 적립금	차량할부금	기타	계
비율	%	%	%	%	100%

17. 귀 어린이집은 원장과 대표자가 동일합니까?

- ① 동일 ② 다름

18. 귀 어린이집은 퇴직적립금을 어떤 형태로 적립합니까?

- | | |
|-----------|--------------------|
| ① 퇴직연금 보험 | ② 어린이집 명의 별도 통장 적립 |
| ③ 기타() | ④ 적립하지 않음 |

II. 원장 일반 사항

* 민간개인·가정어린이집 재정운영조사표와 동일하므로 생략함.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보고 2014-31

어린이집 설립 주체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 연구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을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6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08-0 93330

